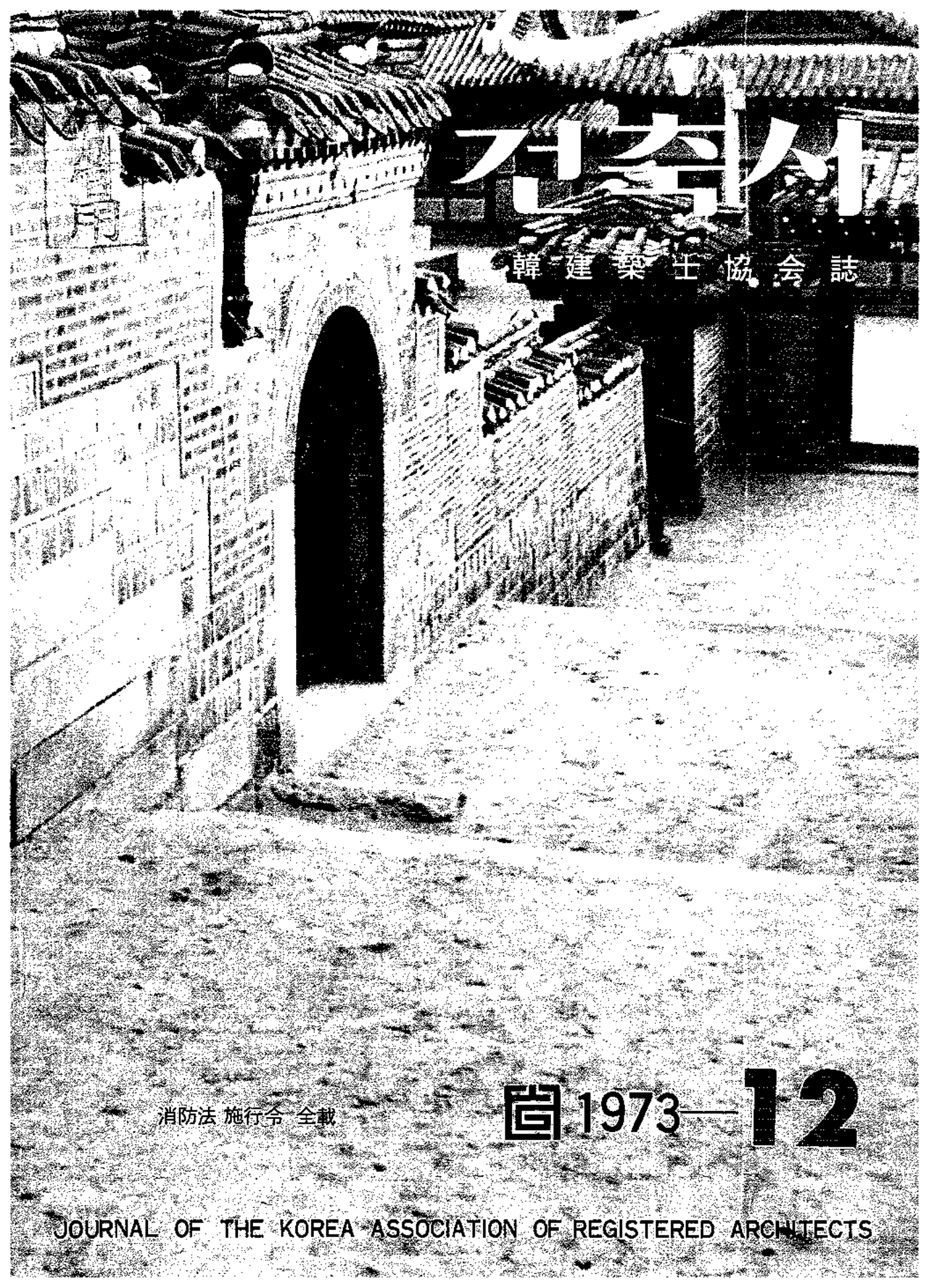




건축사

韓建築士協會誌

消防法 施行令 全載

固 197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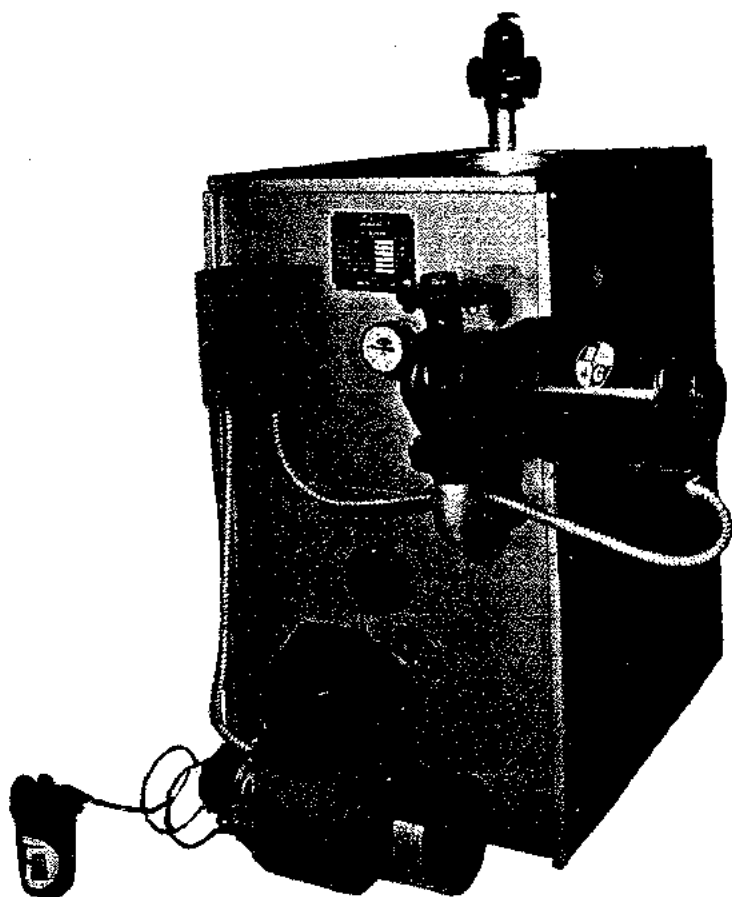
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OF REGISTERED ARCHITECTS

Cast Iron Boilers

놀라운 성능 · 연료비절감 · 영구적인 수명

※ 난방 / 급탕 겸용 ※

Utica **유티카** **신**
자동 보일러 **제품**



유티카 商事

서울 · 中区 忠武路 4 街 126 의 1 號
進洋商街 라 102 號

TEL. 26-2026, 28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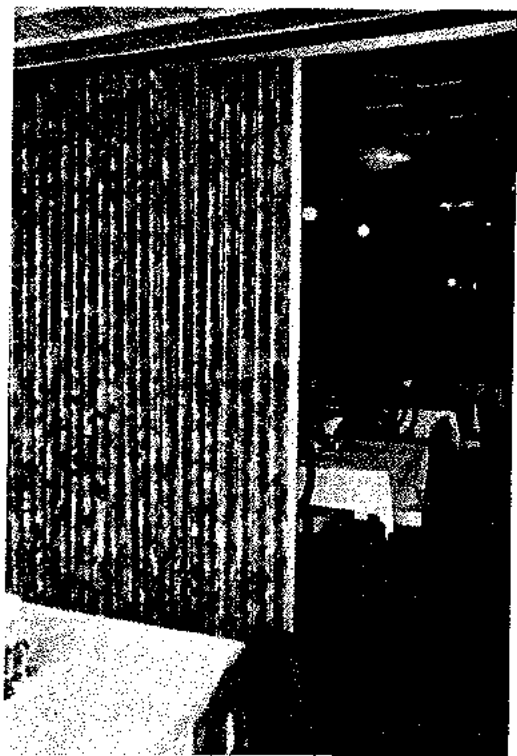
DONGWON ACCORDION

HARMONY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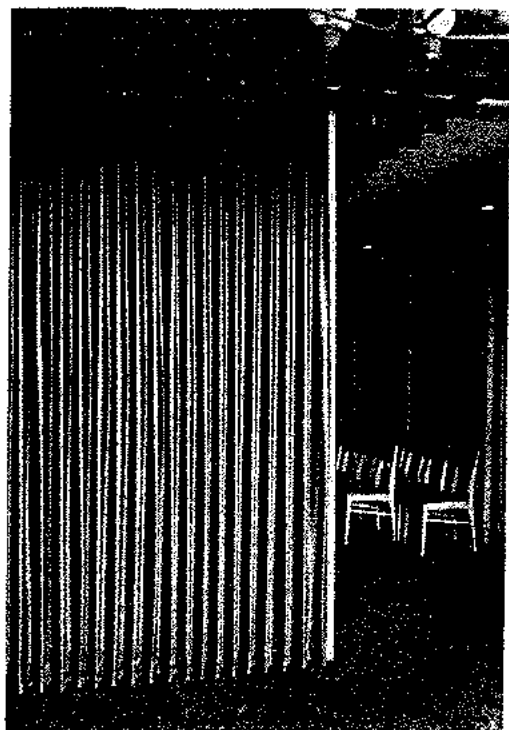
實用新案特許 第8091號
意匠特許 第9924號
商標登錄第26010號

2 in 1의 壁

- 하나를 둘로 쓰는 現代의 벽
- 大와 小를 兼하는 移動하는 칸막이
- 스므-스하게 開閉되는 優雅한 벽
- 故障이 없고 永久的인 堅固한 製品



동원 아코디온 하-모니 도아



便利하고 合理的인!

一實用新案 特許 第 9497 號 一

東光 DW 型 水管式 보일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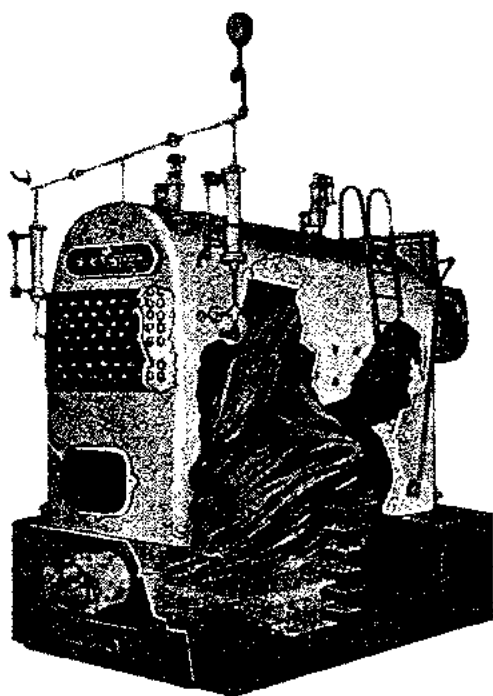
低壓 暖房用으로는 더욱 效率이
좋고 燃料가 廉저히 절약됨.

用途

政府廳舍、빌딩、호텔、病院、食品工場、
化學工場、製藥工場、纖維工場、沐浴湯、
機械工場、洗濯所 等 其他。

〈受賞種別〉

- 第一回全國優秀建設資材展示會에서 서울 特別市長 優秀賞
- 第二回全國優秀建設資材展示會에서 大韓建築士協會長 優秀賞
- 1967年度優良工產品生産獎勵會에서 優秀賞
- 第七回全國商品會에서 內務部長官의 優秀賞
- 第八回發明品展示會에서 國會議長의 最優秀賞
- 第九回發明品展示會에서 大法院長의 最優秀賞
- 上記展示會에서 商工部特許局長의 優秀賞
- 科學의 날 優秀한 機械 工產品의 發明으로 科學技術 振興한 功勞로 韓國 科學技術總聯合會長으로 부터 表彰狀 및 科學技術賞 受賞
- 原動機 技術賞審査委員會의 審査에서 特殊水管式보일러部門의 技術 開發과 振興에 寄與한 功勞로 國立工業研究所長 으로 부터 技術開發賞을 받음



主 要 納 入 處

大韓住宅公社
시온제과 Co.
自由선 타
産業銀行
大田皮革 Co.
서글여자學院
韓一染色 Co.
世宗호텔
中央産業 Co.
釜山鐵道廳

三岡産業 Co.
仁川園藝組合
國防部建設本部
春川聖心大學
美八軍洗濯所
大韓體育會
大韓重石 Co.
宇盛化學 Co.
東洋紡織 Co.
首都醫附屬病院

大韓染織 Co.
同和藥品 Co.
柳韓洋行 Co.
韓國유리 Co.
韓國나일론 Co.
大韓골드 Co.
清溪商街아파트
大韓造船公社
올림포스호텔
웅당산호텔

호수호텔
韓獨商社 Co.
聖바오르病院
大興섬유 Co.
聖心綜合病院
大韓生命保險
公務院訓練院
林業試驗場
南大門警察署
大韓産業

京畿農産 Co.
廣日빌딩
韓國洋灰
麗水觀光호텔
第一病院
自動車保險
새한빌딩
江原道庁
韓獨産業
韓國산토리

東光보일러製作所

東光工營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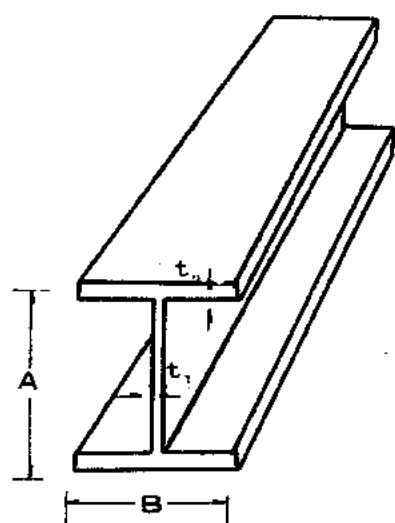
代表理事 朴 鍾 泰

本社：서울特別市龍山區文培洞14의 1

電話 (42) 1673 (42) 9775-6
(용산구청 앞)

工場：서울特別市龍山區文培洞12番地

H型鋼 (H-BEAM) 營業案内



★生産規格

A	B	t ₁	t ₂
150	100	3.2	4.5
200	100	3.2	4.5
200	150	3.2	6.0
200	175	3.2	6.0
250	150	3.2	4.5
250	150	4.5	9.0
300	150	4.5	6.0
300	150	4.5	9.0
300	200	6.0	9.0
350	200	4.5	9.0
350	200	6.0	9.0
400	200	4.5	9.0
400	200	6.0	9.0
450	200	4.5	6.0
450	300	6.0	9.0

※ 其他 各種 規格은 注文에 應함.

★ 製品의 用途

1. 工場建物
2. 各種倉庫
3. 造船施設
4. 港灣施設
5. 住宅
6. 鑛山
7. 橋梁
8. 高速道路
9. 鐵道事業
10. 商街店舖
11. 體育館
12. 企業農
13. 機械設備
14. 앵글및찬널
15. 鋼管對替品

★ 型鋼材建築의 有利性

1. 坪當 建築費가 他資材에 比하여 싸다.
2. 建物이 堅固하며 耐久性이 높다.
3. 施工이 容易하며 工事期間이 짧다.
4. 斷面性能이 優秀하여 强度가 높다.



日新製鋼(株)

總販：日新鋼管販(株) ㉔ 2635

㉔ 2163

昌和鐵鋼(株) ㉔ 2416

㉔ 6267

本社：서울特別市中區忠武路 2街64의 5 28 2040

工場：仁川市 北區 佳佐洞 180의 28

3 0370 3 2951 3 8711-3

建築士

'73

12

通卷第61号

U. D. C. 69/72(054-2) : 0612(519)

1973년 12월 31일 발행

協会運営方針.....李 明 煥(代辯人) (2)

協会記事..... (3)

■ 通卷 第61号 紀念

住宅特輯 (9)

姜 顯 述 (亨礼建築)

金 寅 培 (剛熙建築)

宋 寬 植 (黃海建築)

吳 雄 錫 (新潮建築)

柳 承 根 (新建築)

李 春 相 (新洋建築)

池 淳 (一洋建築)

公 日 坤 (公日坤建築)

金 亨 錫 (피아전속)

安 秉 義 (鄉建築)

劉 圭 成 (汎洋建築)

李 永 熙 (熙林建築)

李 好 璫 (三元社建築)

洪 哲 洙 (韓國建築)

■ 資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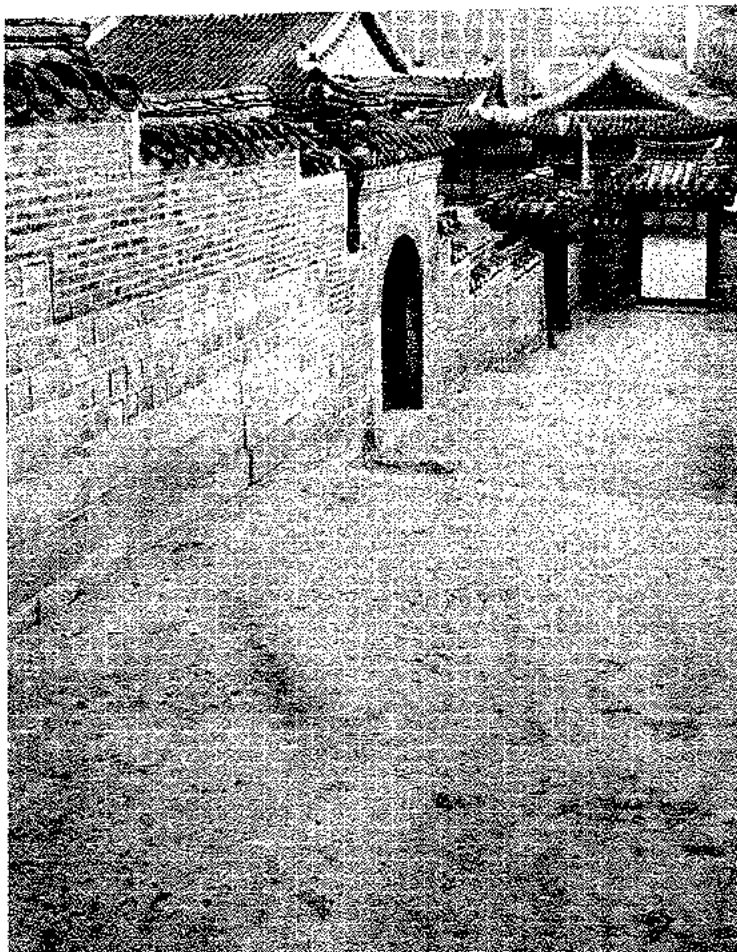
消防法 施行令..... (35)

編纂委員会

委員長	吳 雄 錫
委員	金 寅 培
	安 元 熙
	劉 尹 太
	李 丞 昌
	李 興 鼎
	李 敏 秀
	李 秀 燮

■ 表紙：德壽宮

攝影：元大淵



協會運營方針 ————— 理事会 決議에 따른 —————

우리의 建築士法에 依해 建築士協會가 發足을 한지도 벌써 滿 8年을 넘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建築士들은 其間 무엇을 얼마나 하였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또 무엇을 얼마나 하여 어떻게 되야겠다는 것입니까?

解放 以後 社會는 많은 變化와 發展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많은 建築物들이 우리들의 손을 거쳐 세워졌습니다. 其中에는 一部 참아 눈뜨고 볼 수 없는 不具兒도 많이 나왔으나 社會의 冷待와 自己 不條理 속에서 그 많은 建築物들을 만들어내기에 많은 産苦가 있었던 것은 事實입니다. 子息을 낳아 보기 前에 其功을 헤아릴 수 없다고는 하지만 우리 建築士들의 現位置는 어떠한 것입니까.

李 明 煥 (代辯人)

勿論 우리는 致富를 爲하여 攄한 職業이 아니기에 차라리 産母의 히 열로 滿足을 해야할지는 모르겠으나 보다 健康하여 國家나 社會에 이바지할 수 있는 훌륭한 子息을 爲하여도 營養失調의 産母를 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爲하여는 幅넓은 國家나 社會의 理解와 協助가 있어야 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自身의 健康을 爲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協會運營方針을 理事會의 決議로서 여러 會員들에게 알리는 同時에 積極 協調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다 음〉

1. 建築士自身의 精神의인 維新

- ㄱ. 自身의 不條理를 反省하자.
- ㄴ. 共同意識 振作
- ㄷ. 人和團結하여 建築士의 權益을 찾자.

2. 協會發展을 爲한 巨視的이며 長期的인 計劃樹立

- ㄱ. 必要한 分野에 對한 長期的이며 專門的인 研究委嘱 및 委員會 運營.
- ㄴ. 權益에 關한 具體的인 對策樹立.

3. 建築士에 對한 人力需給對策樹立講究

- ㄱ. 官公署建築職을 免許所持者로 代置建議.
- ㄴ. 工事監理者의 現場常駐對策

4. 協會業務의 體系化 및 效率化

- ㄱ. 業務의 體系化
- ㄴ. 業務의 效率化
- ㄷ. 協會에 對한 信賴感을 갖게 한다.

5. 理事會의 合理的 運營

- ㄱ. 團結
- ㄴ. 協助
- ㄷ. 效率

— 理 事 會 —

여 74년을 향한 유신이념의 구현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함)

제15회 이사회

일시 : 1973. 11. 20. 16:00~21:30시

장소 : 회의실

출석 : 회장 한창진, 이사 김지태, 이규복, 오웅석, 이명환, 이춘상.

1. 보고사항

- 가. 제 8 회 정기총회 개최 결과를 건설부에 보고 (10. 30)
- 나. 제 10회 건축사 자격시험 장소 및 실기 시험 과제를 각시도지부에 통보 (11. 1)
- 다. 제 8 회 정기총회 결과를 각시도지부장에게 통지.
- 라. 제14회 이사회에서 수탁된 윤리위원회의 결정 사항(부산지부 소속 박만식 회원 3개월간 회원자격 정지처분)을 당사자와 부산지부장에게 통보 (11. 6)
- 마. 임원 취임 승인 신청서류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 (11. 8)
- 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중 개정령을 각 시도 지부에 송부 (11. 15)
- 사. 충남지부 제 8 회 정기총회 개최 (11. 16)
- 아. 경남지부 제 8 회 정기총회 개최 (11. 16)
- 자. 공유지분 매지상의 건축허가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유권해석 공문 접수, 각시도지부에 이첩 통지 (11. 16) (공유지분 매지일 때는 전체 공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고 경계가 확실할 때는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 차. 주택건설촉진법 및 시행령에 의한 국민 주택 채권참가 매입개정 고시문을 각 시도지부에 발송 (11. 19)
- 카. 강원지부 제 8 회 정기총회 개최 (11. 19)

2. 토의사항

협회 운영 방침에 관한 건

(신 임원진으로 구성된 첫번째 이사회로서 앞으로 협회 운영 및 이사회 운영 방안에 대하여 전 임원들의 참신한 의견, 방침, 구상 등을 광범하게 전반에 걸쳐 제시하고 발표, 토의를 진지하게 하

제15회 이사회 속회

일시 : 1973. 11. 28 (금) 16:00~19:55시

장소 : 회의실

출석 : 회장 한창진, 이사 김지태, 오웅석, 이규복, 이명환, 이춘상

1. 보고 사항

- 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회장 및 신임이사의 취임 승인 (73. 11. 26일자) 공문접수 (11. 27)
- 나. 각시도지부 제 8 회 정기총회 개최결과 보고

㉠ 11월 16일→충남지부

(새로 선출된 임원진)

지부장 김 종 민
간 사 박 홍 우
" 배 한 구
" 민 영 기
감 사 박 치 성
" 정 찬 역

㉡ 11월 16일→경남지부

(새로 선출된 임원진)

지부장 윤 상 봉
간 사 노 은 섭
" 이 상 채
" 이 태 욱
감 사 김 재 현
" 전 병 기

㉢ 11월 19일→강원지부

(새로 선출된 임원진)

지부장 이 상 철
간 사 황 기 정
" 조 규 식
" 이 국 남
감 사 원 호 창
" 황 재 성

㉣ 11월 22일→전북지부

(새로 선출된 임원진)

지부장 최 석 규
간 사 문 상 식
" 전 광 서

박 옥 규
감 사 강 경 식
김 연 배

㉔ 11월 23일→부산지부

(새로 선출된 임원진)

지부장 김 규 태
간 사 황 재 효
박 충 명
구 준 전
김 진 철
천 일 창
감 사 장 기 수
임 홍 기

㉕ 11월 24일→서울지부

(새로 선출된 임원진)

지부장 김 만 성
간 사 김 대 식
성 일 영
성 하 철
우 달 형
윤 봉 원
윤 용 창
이 주 호
이 호 일
조 철 호
감 사 오 완
송 학 조

㉖ 11월 24일→경북지부

(새로 선출된 임원진)

지부장 이 근 상
간 사 윤 옥
이 성 해
이 종 만
감 사 고 만 권
김 재 우

㉗ 11월 26일→제주 지부

(임원 개선은 11월 30일 이내로

속개 회의에서 선출키로 함)

2. 결의사항

가. 1973년도 새출예산의 목간 유용 승인에 관한
건. (목간 유용 가능액 의 계수를 제
조정 총무이사과 회장이 협의 결정할 것을 위임

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승인할 것
을 결의)

나. 서울지부의 73년도 새출예산 목간 유용 승인
에 관한 건. (목간 유용을 승인하기로 결의)

다. 부산지부 소속 박만식 회원의 윤리위원회 결
정사항에 대한 재심 청구에 관한 건.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윤리위원회에서 재심하
도록 결의)

라. 윤리위원회 결정사항(충남지부 소속 배한구
회원과 서울지부 김만준 회원간의 분쟁)의 수락
여부에 관한 건 (윤리위원회 결정사항을 수락
결의)

마. 이사 담당 부서 결정

(총무이사 김 지 태

총무집 기획담당이사 이 춘 상

지도담당이사 이 규 복

사업담당이사 이 명 환

출판담당이사 오 웅 석

담당부서를 6개월마다 호선하기로 결의)

제 16회 이사회

일시 : 1973. 12. 5. 16:00-19:25

장소 : 협회 회의실

출석 : 회장 한창진, 이사 김지태, 이춘상, 이규복,

이명환, 오웅석

감사 강진삼, 서울지부장 김만성

1. 보고사항

가. 충북지부 총회 결과 보고

(새로 선출된 임원진)

지부장 정 진 억

간 사 오 석 균

강 계 식

김 진 용

감 사 정 순 모

김 이 구

나. 전남지부 총회 결과 보고

(새로 선출된 임원진)

지부장 채 규 당

간 사 최 춘 화

임 계 식

배 윤 진

감 사 김 성 현

" 회 상 채

다. 제주지부 임원선출 결과보고

(지부장 강 기 정

간 사 양 창 완

" 문 창 두

" 고 증 식

감 사 오 재 민

" 김 팽 남)

라. 서울지부 73년도 세출예산 목간유용 승인 공문 시달(제15회 이사회 결의 사항)

마. 부산지부 소속 박 만식 회원의 재심청구 윤리위원장에게 송부(제15회 이사회 결의 사항)

바. 충남지부 소속 배 한구 회원, 서울지부 소속 김만준 회원의 윤리위원회 결정사항을 당사자및 관계지부와 각시도지부에 통보(제15회 이사회 결의 사항)

사. 73년도 11월 12일 세출예산 목간 유용집행 계획(제15회 이사회 결의 사항)

아. 회장 및 임원 법원에 등가 신청

자. 서울지부에서 본회 회의실용 의자 6개 기증.

2. 결의 사항

비품 일부 폐기처분에 관한 건

(담당 이사인 총무 담당이사에게 일임하여 감가상각에 의한 처분을 하여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결의)

3. 토의사항

가. 무등록 설계도서의 행사에 관하여

(지도담당이사가 충분한 대책과 방안을 연구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기로 함)

나. 충남 지부의 신임 임원의 임기(신임 임원중 간사 2인, 감사 1인의 임기를 1년으로 하여 선출하였음)에 대하여

(정관 규정위배이므로 즉각 그 시정을 지시하고

총무담당 이사가 몇개 지방 지부의 운영 실태를 알아보고 모순이 있으면 정관 개정안을 다음 임시총회에 제출키로 함)

다. 각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건.

(각 위원회의 담당 이사가 20일 전으로 인선하여 회장과 협의하도록 함)

라. 이중직 및 명의대여 행위의 방지에 관한 건.

(가. 항과 부합하는 사항이므로 지도담당이사가 충분한 방안을 연구 그 결과를 제시하기로 함)

마. 지방지부 회관전립 문제와 본회 기금운영에 관한 건.

(총무 담당이사가 회관 전립에 따른 소유권, 법적 문제, 운영관리 등을 연구 조사하고 아울러 본회 기금의 성질과 운영방안도 검토해 주시고 차기이사회에서 더 토의를 갖도록 함)

바. 74년도 사업계획 검토

(담당이사별로 사업계획을 연구 검토하여 일단 방안계획을 제시하고 토의하여 더 좋은 계획이 있으면 택하기로 함)

사. 본회 및 서울지부 임원 연석회의 요청에 대하여 (12. 12. 16:00시에 연석회의를 갖기로 함)

4. 기타 사항

가. 외국 건축 관계 기관과의 교류

나. 사무용품(트레싱 페퍼 등)의 면세 구입.

다. 매스콤을 통한 건축사의 권익, 계몽 등을 위한 활동.

(사업담당 이 명환 이사를 대의 홍보활동의 체계를 일원화시키기 위하여 협회 대변인으로 결의함)

에너지 소비 절약 계몽표어

내가 아낀 에너지가
생산공장 움직인다

協會動靜

本協會 新任 理事 担当部署決定

本協會에서는 지난 11월 28일 第15回 理事會를 開催하고 新任 理事陣에 對한 担当 部署를 決定했는데 担当部署 別 理事 名單은 다음과 같다.

다음

總務理事	金枝泰
總務 및 企劃	李春相
担当理事	
指導担当理事	李圭福
事業担当理事	李明煥
出版担当理事	吳雄錫

本協會와 서울시支部 任員 連席 會議

12월 12일 오후 4시 태화관에서

本協會와 서울시支部와의 任員 連席會議를 태화관 별실에서(午後 4時) 開催했다.

이날 토의된 主要內容은

建築士法 第26條(業務의 報酬)와 同法 施行令 第25條(報酬基準의 告示)에 의한 建築士 業務의 報酬基準에 의한 現實問題에 對해서 長時間 진지한 討議가 있었다.



本協會와 서울시支部 任員連席會議 光景

서울 特別市支部

서울特別市支部 第8回 定期總會

11월 24일 建設會館 大講堂에서

本協會 서울特別市 支部 第8回 定期總會가 지난 11월 24일 建設會館 大講堂에서 創立 以來 最大 盛況을 이룬 가운데, 午後 늦게까지 계속된 이날 定總會는 本會 韓昌鎭 會長의 激勵辭와 서울特別市長의 致辭(代讀 第二副市長)에 이어, 執行部에서 내어놓은 '74年度 豫算案 中 車輛 購入 및 維持 管理費만 削減한 3천 7백 10만 7천 7백 86원으로 調整하여 通過시켰으며, 또한 工事監理制度의 改善 策 및 研究 등을 主要 議題로한 事業計劃案을 原案대로 通過시켰다.

또 從來 商業銀行에 設計費 40%를 予置 시켰던 福祉會 基金을 住宅銀行으로 바뀌었고, 予置도 設計費率의 70%를 積立토록 議決했다

會員動靜

서울特別市支部

新入會員

박종진 (형진건축기술공사)

所在地: 永登浦區 화곡동 348-10

TEL. 60-3031(교) 136

登錄番号: 2-305

登錄年月日: 1973. 11. 8

양영호 (청맥건축사무소)

所在地: 鍾路區 仁寺洞 156

TEL. 75-9570

登錄番号: 1-565

登錄年月日: 1973. 11. 8

轉入會員 (忠北支部에서)

임성호 (한진건축기술공사)

東大門區 상봉동 349

轉出會員 (京畿支部로)

김기완 (형진건축기술공사)

(永登浦區 화곡동 340-42)

閉業會員

윤무영 (동흥건축설계사무소)

東大門區 신설동 103-3

TEL. 53 : 0220

事務所移転

허찬희 (우주건축연구소) 1 - 221

移転地 : 관악구 사당동 154-18

TEL. 69-3911(1328)

김정철 (正林建築研究所) 1 - 442

移転地 : 中区 乙支路 2 街 95-1

TEL. 28-0255

公日坤 (公日坤建築研究所) 1 - 326

移転地 : 龜山區 二村洞 302-60

TEL. 42-8883

이성걸 (삼진建築研究所) 1 - 194

移転地 : 麻浦区 동교동 138-48

TEL. 32-2369

이종엽 (세영건축연구소) 1 - 359

移転地 : 西大門區 불광 2 동 104-26

우양근 (반도건축공사) 1-521

移転地 : 中区 乙支路 1 街 74-2

TEL. 24-4069

조성만 (가야종합건축연구소) 1 - 560

移転地 : 鐘路區 계동 147-21

TEL. 72-3548

이용환 (한국건축공단) 1-441

移転地 : 城東區 학동 87-2

TEL. 55-6811(1001)

최창현 (벽도건축연구소) 1-147

移転地 : 城東區 하왕십리 702-1

TEL. 53-8125

한중언 (금성건축연구소) 1-228

移転地 : 中区 乙支路 2 街 163-1

TEL. 28-1346

이병균 (이건축설계사무소) 1-104

移転地 : 관악구 봉천 3 동 36-21

TEL. 68-4536

김학근 (월우건축연구소) 2-294

移転地 : 종로구 서린동 140

TEL. 72-2820

이철재 (한국건축공사) 2-125

移転地 : 城東區 학동 87-2

TEL. 55-6811(1001)

서울特別市 支部 永登浦 分所長에

金 鎭 成氏 選出

서울特別市支部 永登浦分所는 지난 12月15日 同分所 總會를 開催했다.

이날 總會에서는 任期가 끝나고 分所長을 改選했는데 三光建築研究所의 金鎭成氏가 새 分所長으로 選出되었다.

釜山市支部

新入會員

金未亥 (新成建築研究所)

所在地 : 釜山鎭區 釜田洞399와 2

TEL. 3-3444

登録番号 : 1-188

登録年月日 : 1973. 9. 1.

趙俊吉 (朝光建築設計社)

所在地 : 釜山鎭區 釜田洞352와 2

登録番号 : 2-189

登録年月日 : 1973. 10. 6.

金仁圭 (동래건축설계사)

所在地 : 釜山市 수안동477 TEL. 53-3209

登録番号 : 2-190

登録年月日 : 1973. 11. 20.

朴政德 (合同協成建築開發公社)

所在地 : 釜山市 中区 大橋洞 2 街 20

登録番号 : 2-191 TEL. 43-1682

登録年月日 : 1973. 11. 19.

安八敬 (南一建築設計社)

所在地 : 釜山市 中区 南浦洞一街 8

登録番号 : 2-192 TEL. 22-9347

登録年月日 1973. 11. 27

閉業會員

염성조 (대도설계사무소)

釜山市 東區 水晶洞 129

上記 會員 1973年 11月 1日 死亡으로 閉業함

商号変更 및 事務所移転

朴英次

(前) 신동영건축설계사무를

(新) 대도건축설계사로 變更

移転地 : 釜山市 東區 水晶洞 129

TEL. 42-0517

移転年月日 : 1973. 11. 17.

金千得 (耕熙建築設計社)

移転地: 釜山市 中区 光復洞 1 街38의 1

TEL. 22-7246

移転年月日: 1973. 12. 1

京畿支部

京畿道支部 定期總會 盛了

12月 8 日 水原市 東海莊에서

京畿道支部는 지난 12月 8 日 水原市内 東海莊에서 '73年度 定期總會를 開催했다.

이날 定總會에서는 '74年度 予算 및 事業計劃案을 심의 통과시킨 후 現 任員中 金祺培 監事만을 改選, 그 後任으로 高 宗旭氏를 監事로 選出코 그밖에 任員은 全員 留任시켰다.

同 支部 任員陣은 아래와 같다.

支部長 鄭 銀 溶

幹 事 趙 秉 元

〃 趙 命 鎬

〃 李 秉 武

監 事 金 燦 默

〃 高 宗 旭(新任)

江原道支部

會員行政措置(처벌) 사항보고

同支部 속초分所 襄基雄會員(又稜設計事務所(二給)의 建築士法 第28條 단서에 依하여 다음과 같이 江原道知事로 부터 '73年11月 12日字로 登録취소됨

다 음

免許 번호	登録 번호	建築士名	事務所名	所在地	비 고
2-52	강원 제25호	백기웅	우릉설계 사무소	속초시금 109	建築士法 第4條2 項위반

黃琪禎 幹事 會館建立基金으로 五萬圓 寄贈

同支部 黃琪禎 幹事는 江原道 建築士 會館建立 基金條로 五萬圓을 會館 建立基金推進委員會에 寄贈했다

忠南支部

휴 업 회 원

한 등 석 (2 級), (아성건축설계사무소)

大田市 大興洞 493의 2

休業期間: 自 1973. 11. 8

至 1974. 11. 7 (1年間)

全南支部

事務所移転

박점홍 (태화건축설계사무소)

移転地: 光州市 東區남동104의 6

TEL. 2-0155

오무송 (동아건축설계사무소)

移転地: 光州市 東區금남로 2 가11

TEL. 2-3621

商号変更

김인옥 (木浦市대의동 2 가3)

TEL. 2-189

旧. 동아건축설계사무소를

新. 유달설계사무소로

오용갑 (木浦市 대의동 2 가7)

TEL. 2-3001

旧. 근대설계사무소를

新. 종합건축설계사무소로

濟州道支部

新入會員

백형철 (삼진建築研究所) (一級)

所 在 地: 濟州市二街一洞1370

TEL. (濟 州) 3595

登録年月日: 1973年11月16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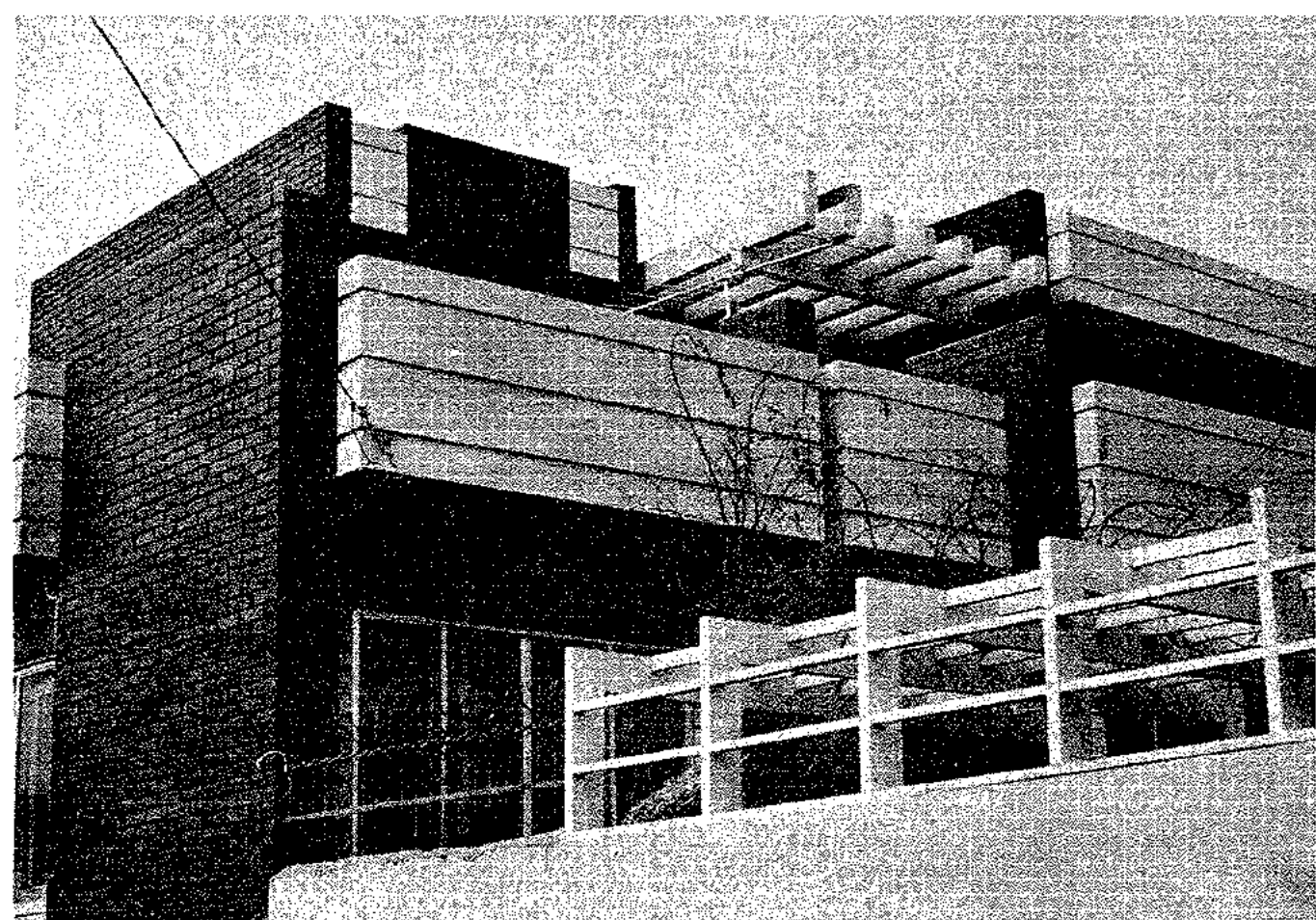
에너지 소비 절약 계몽표어

에너지는 국력이다 아껴써서 애국하자.

通卷 第61号 紀念

住宅 特輯

- 姜 顯 述
- 公 日 坤
- 金 寅 培
- 金 亨 錫
- 宋 寬 植
- 安 秉 義
- 吳 雄 錫
- 劉 圭 成
- 柳 承 根
- 李 永 熙
- 李 春 相
- 李 好 璡
- 池 淳
- 洪 哲 洙



尹氏 住宅

설 계 : 동진건축종합연구소 (대표 姜顯述)

위 치 : 성동구 구의동 231~13

건축면적 : 지층 28.33m²

1층 114.50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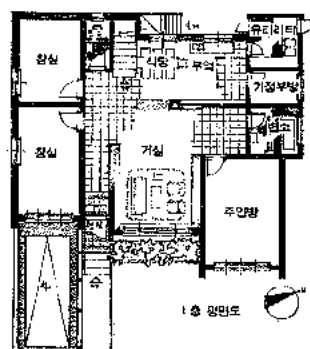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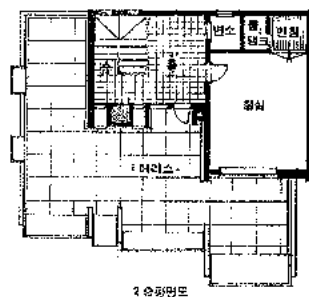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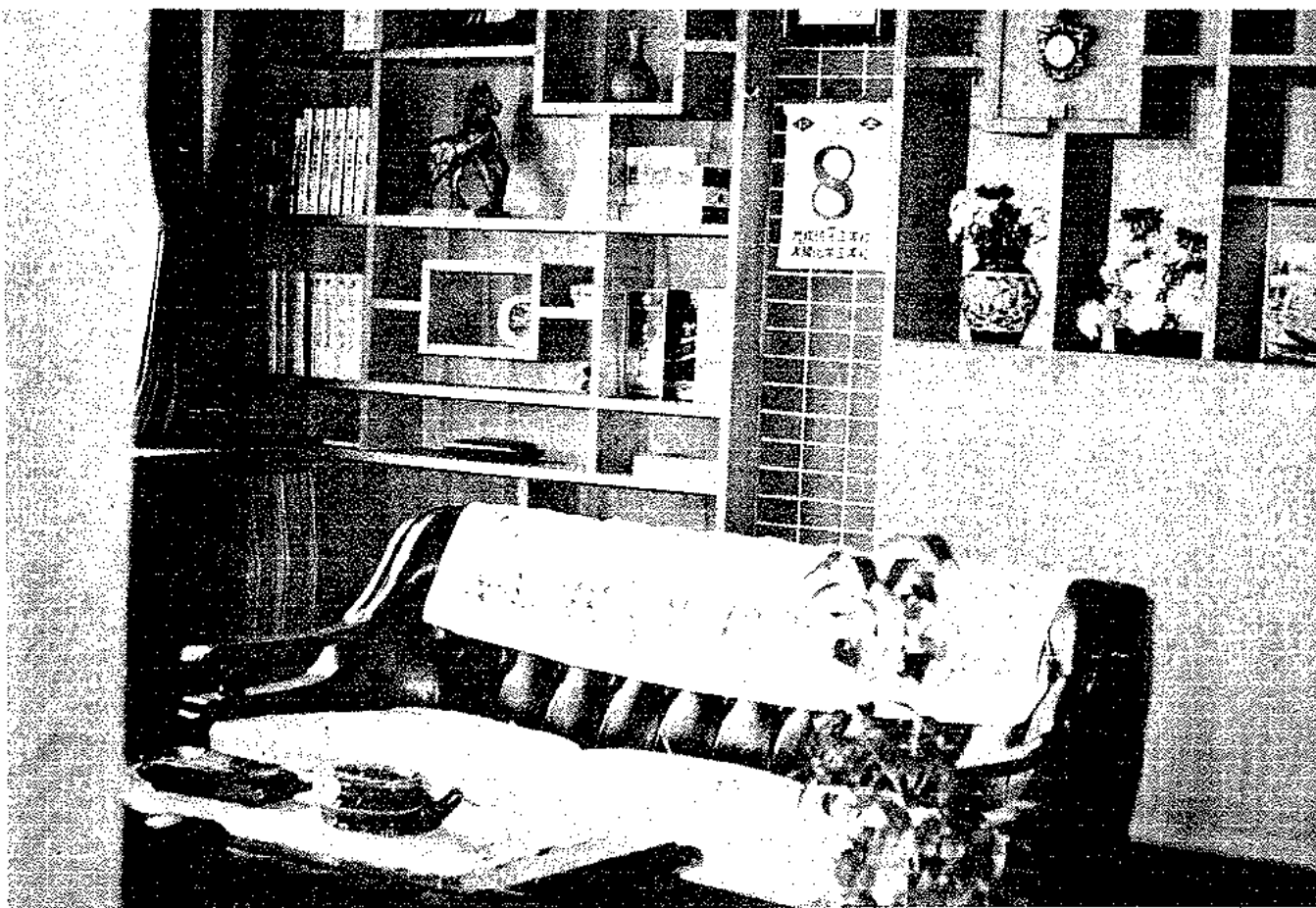
2층 20.65m²

계 - 163.48m²

계획 : 姜顯述, 河彰植

구조 : 벽돌조 평스라브 지붕







張氏 住宅

설계: 公日坤建築研究所 (代表 公日坤)

위치: 서대문구 홍은동

대지면적: 102평

건물면적: 1층 24평

2층 22평

지하 4.5평

블랭크 1.5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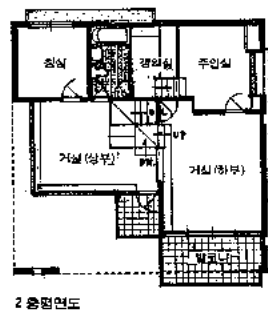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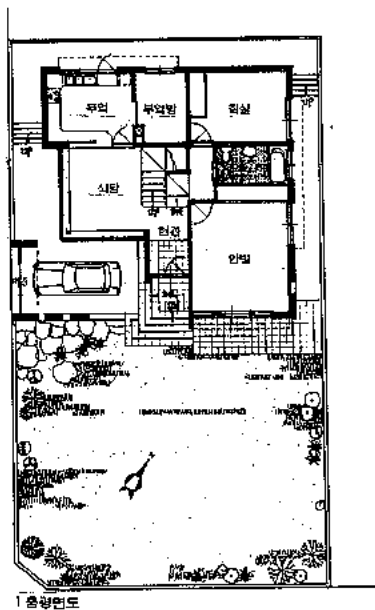
계: 52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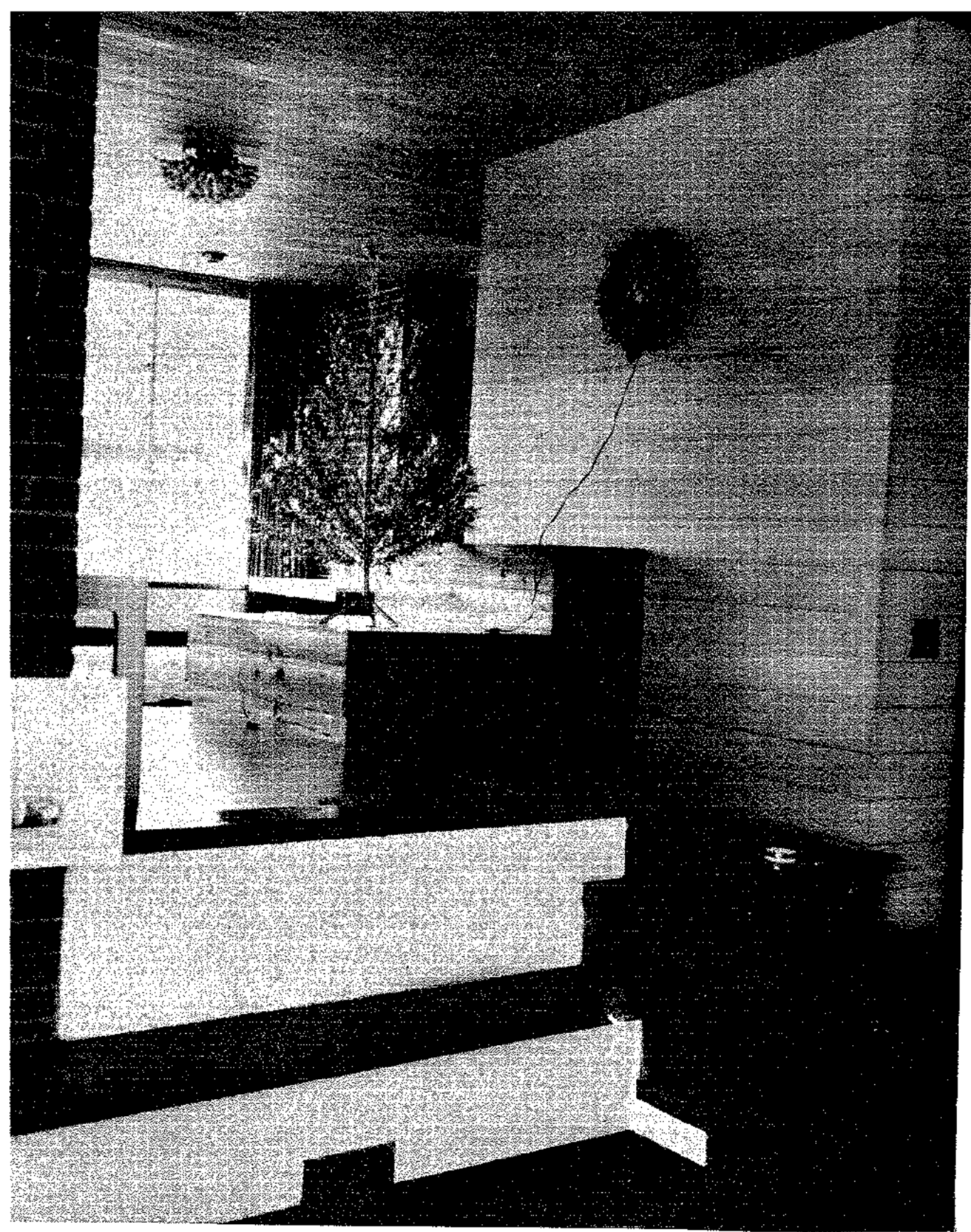
목사비: 평당 14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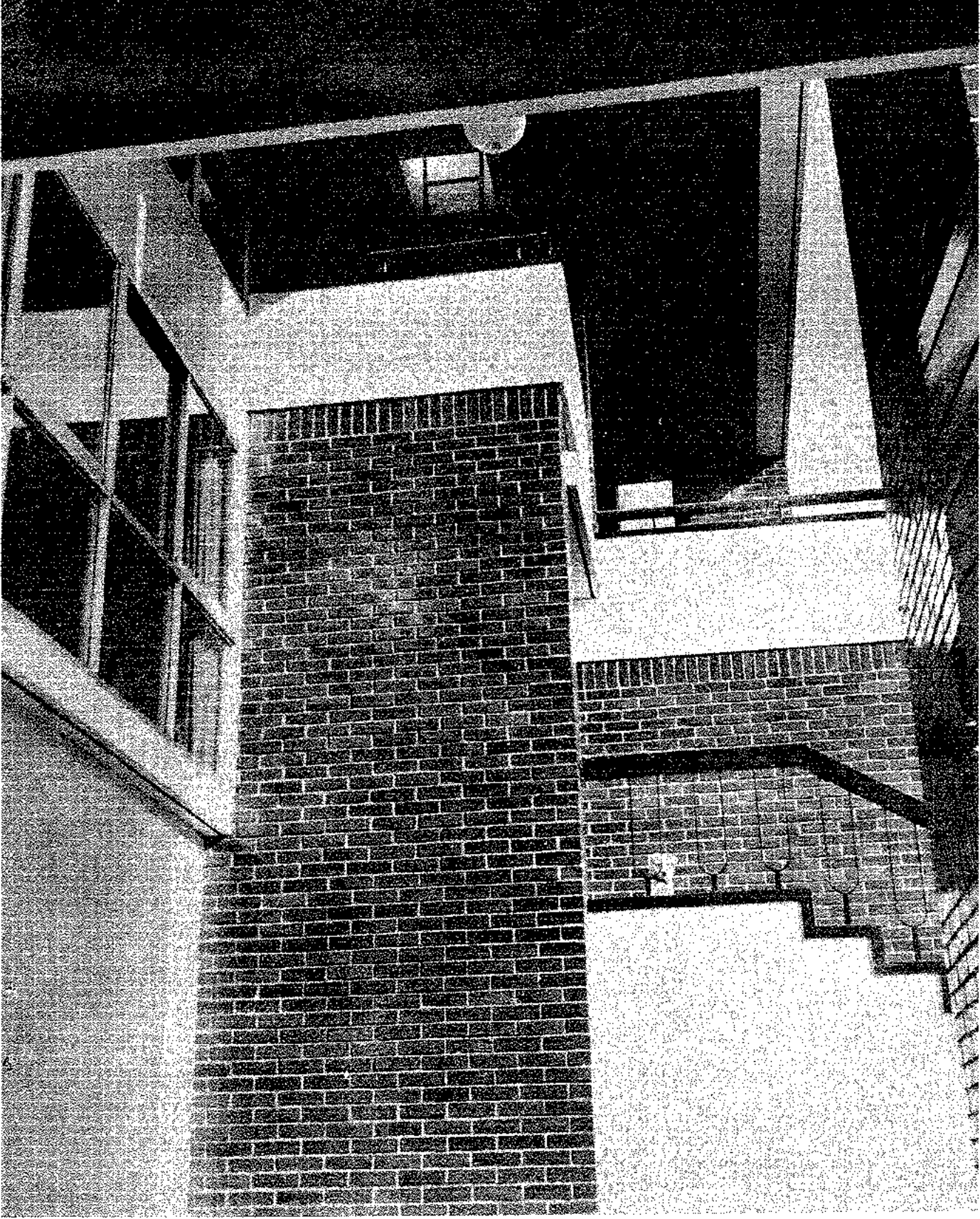
구조: 벽돌쌓기, 스타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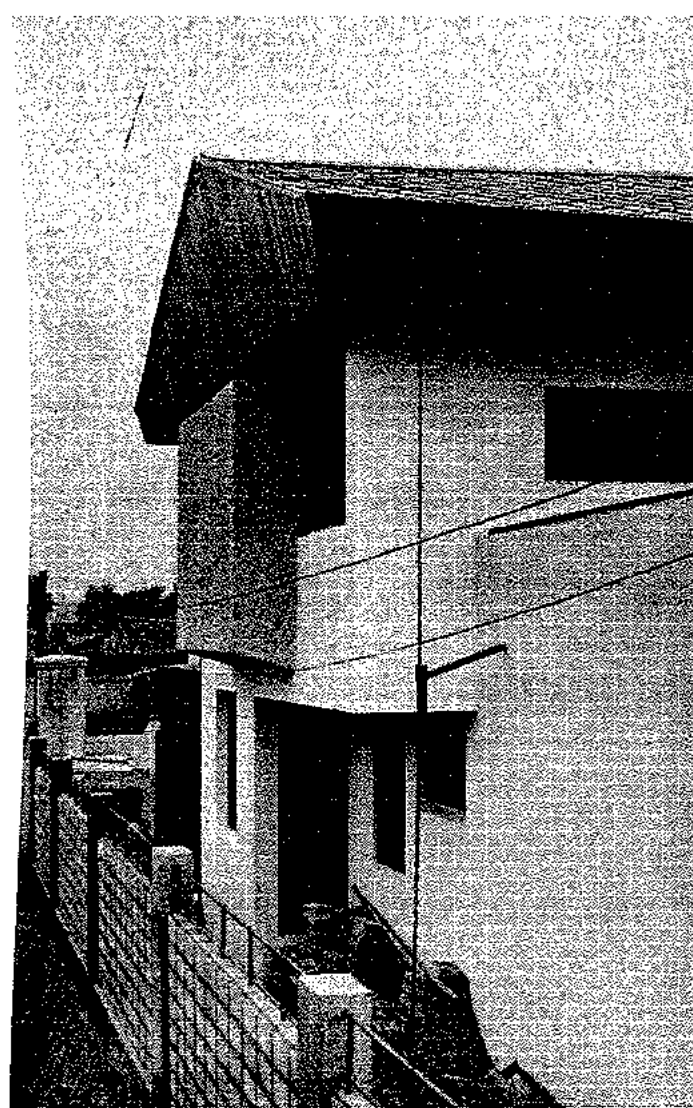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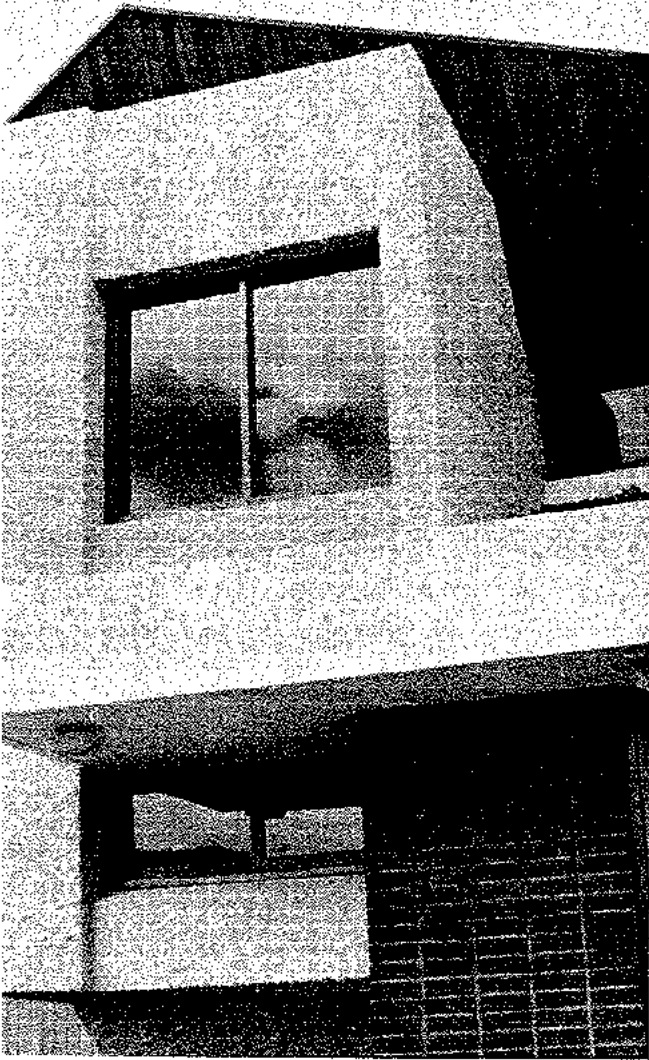
설비: 온수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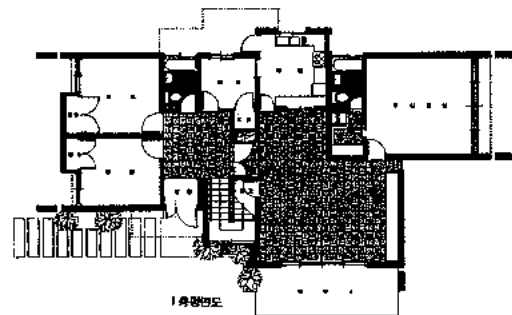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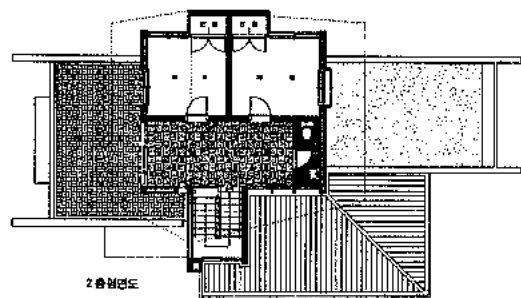






金氏 住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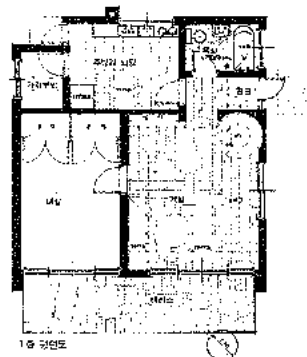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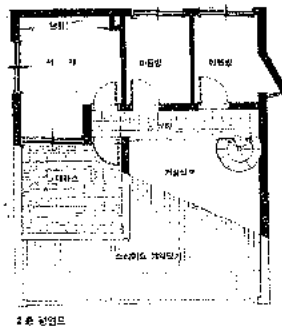
설계 : 剛熙設計事務所 (代表 金寅培)
 위치 : 경북 김천
 구조 : 벽돌 조적조, 콘크리트 슬라브
 건축면적 : 1층 120.6㎡
 2층 60.3㎡
 계 18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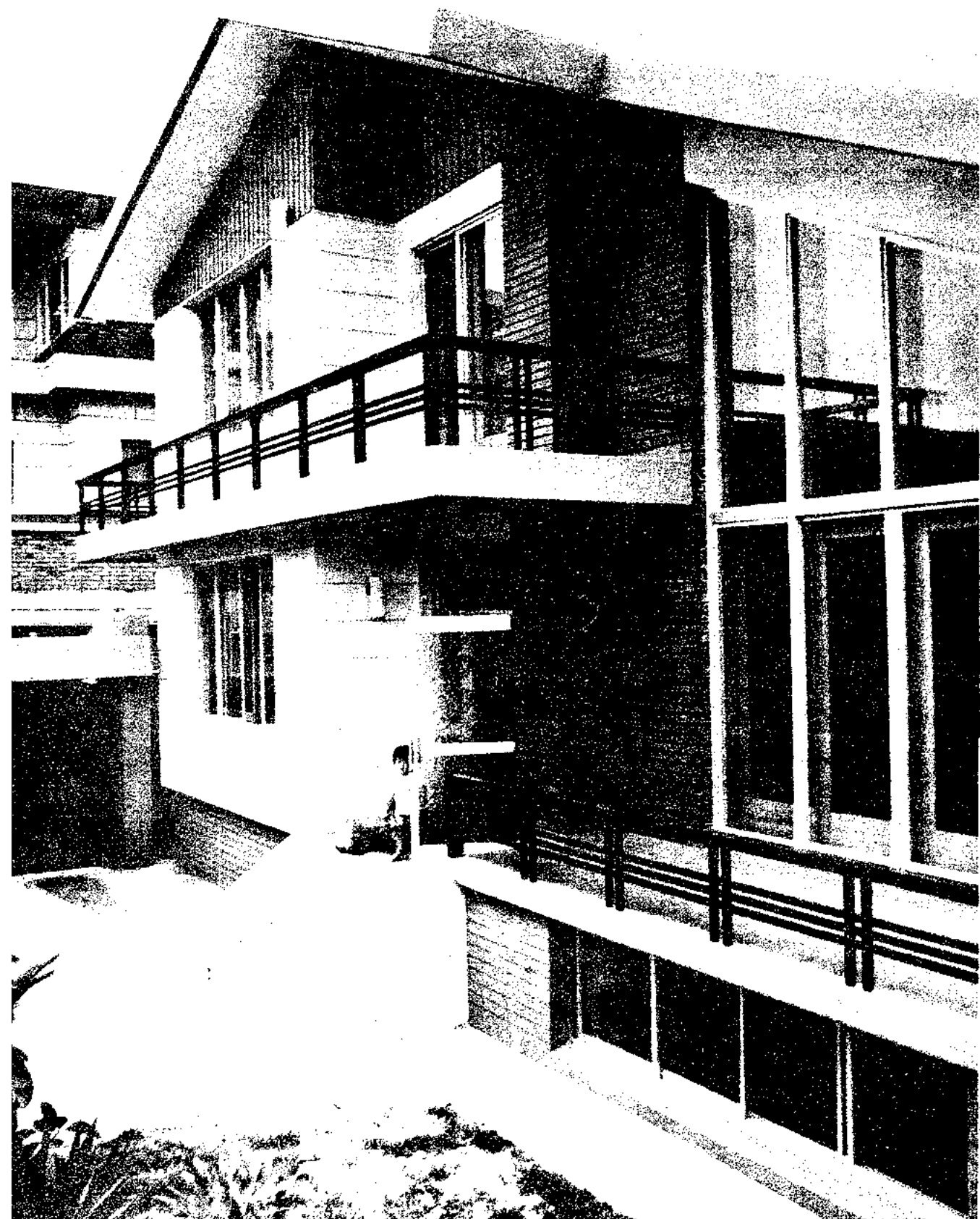




李氏住宅

설 계 : 피아建築 (代表 金 亨 錫)
 위 치 : 영등포구 동춘동
 건축면적 : 1층 23평
 2층 10평
 지하 6평
 계 39평
 구 조 : 연와조, 외부 본타일





梁氏住宅

설계 : 黃海建築社(代表 宋寬植)

위치 : 성북구 장위동

대지면적 : 263m²

건축면적 : 1층 96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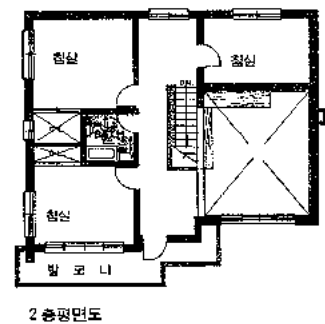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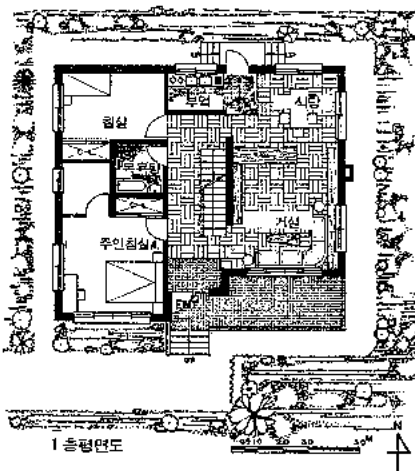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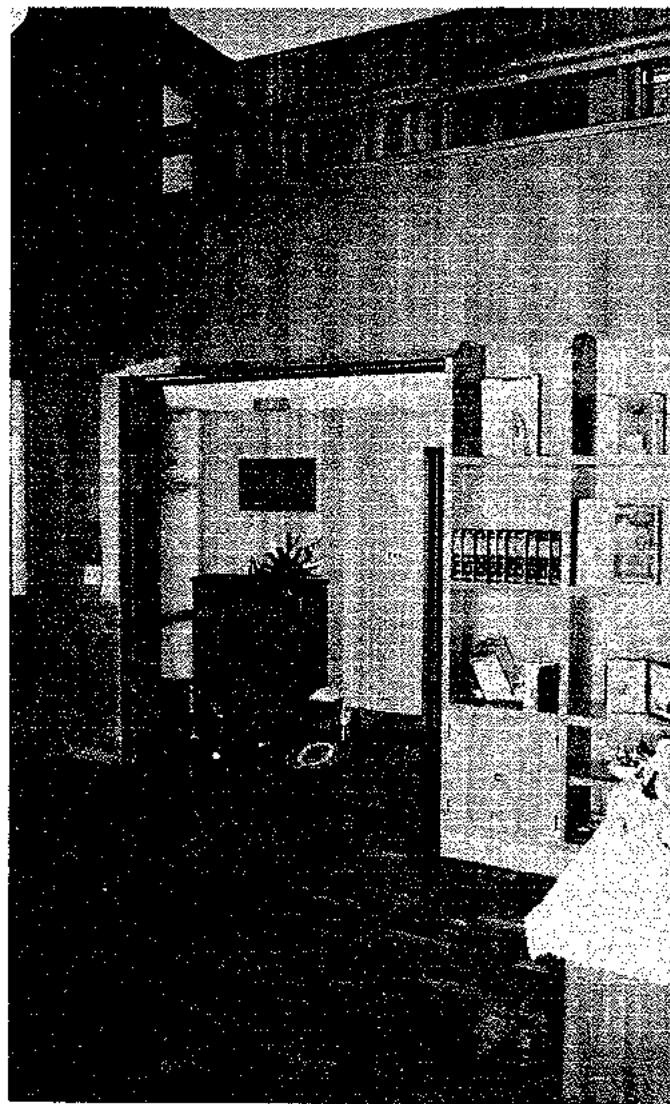
2층 54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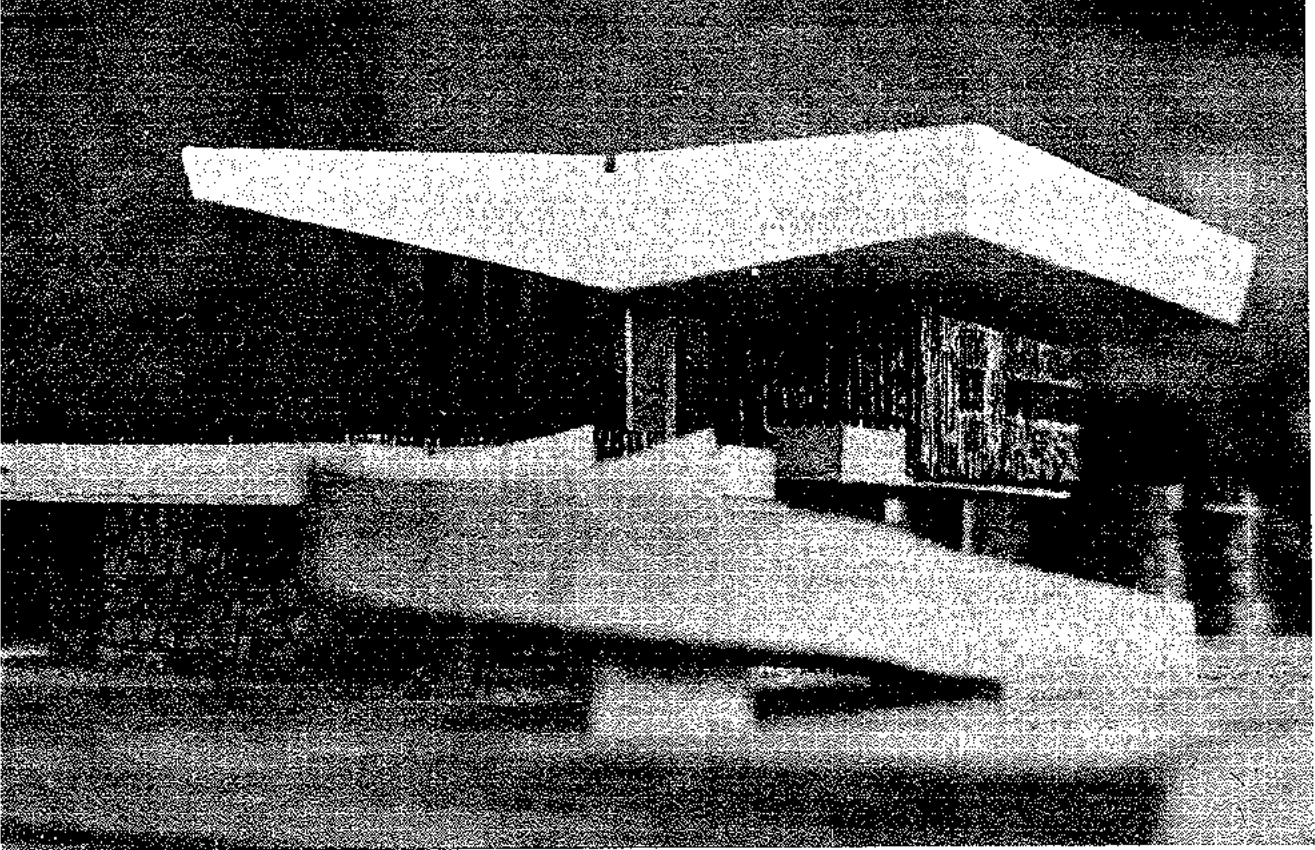
지하 14m²

계 - 164m²

구조 : 조적조

감리 : 송판식





2 층에 이르는 구비진 램프

昭陽의 집

建築의 造形은 때로는 그機能(좁은 뜻의)에 앞설 때가 있다. 特異한 環境속에 놓여질 때이다. 「웃론」의 시드니 오케라 하우스는, 그 가장 좋은 例證이다. 建築이란 環境에 뿌리박고, 그속에서 피어나는 것이겠다. 그리 한곳에서 나는 주어진 環境과 만나는 첫 印象을 소중히 하며, 아끼고 다듬어, 하나의 結晶으로 이끌어간다.

昭陽의 집은, 加平을 지나 京春街道에 자리잡은 자그마한 休憩所다. 이곳에 이르는 길의 왼쪽은 짙어세운듯한 絶壁과 옥어진 숲, 오른쪽은 北漢江이 유유히 흐르는 드라이브코스로, 이 대치에 이르러 한껏 視野가 열린다. 이 漠漠한 大自然속에 建築은 아무리 박혀들쳐봤자, 그저 자그마한 오브제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서로서로 아크로 우치하면 십리밖에서 보이니 자전구레한 디테일이니, 푸르포논이니, 機能보다도, 그저 單純하고 다이내믹한 造形밖에 없다. 높은 산을 등지고, 앞에는 넓은 江流, 그사이에 놓인 하늘에 떠있는 듯한 기와지붕을 얹어놓은 造形이 스카이라인을 매듭짓는다. 그것은 이 산과 물과 하늘에 떠있는 한마리의

날개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한 直線위에 있는 네개의 거둥에서 뻗은 캔틸레버의 자봉에서 끼얹어 매어단, 2층의 휴게실은 온 유리로, 방안이 自然속의 일부며 풍나무와 이끼끼 바위, 풍채미트, 그리고 유리만이 이집을 꾸민다.

다이내믹하고 몇몇한 造形.

그러나 아직 要素도가 남아있다.

× × ×

자그마한 일이지만, 中央官署에까지 올라온다. 한시간 以上の 說明에도 그는 굽히지 않아, 「· · ·님은 政治의 專問家인듯이 저는 建築의 專問家입니다」라는 말로 겨우 終止를 보았으나, 이틀후 반복되고 말았다. 그의 이미지에 따라 청기와의 색워졌다.

무엇을 또 말하리.

햇빛을 뚫은 자식이기여, 昭陽의 집은 더욱 來練이 있고, 情이 잔다.

설 계 : 鄉建築(代表 安秉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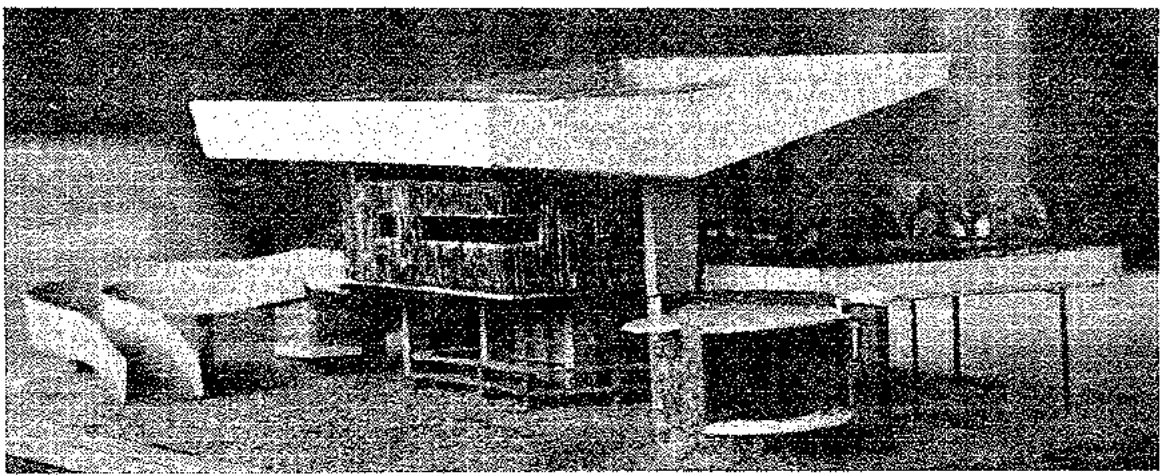
바탕면적 : 160평

실 면 적 : 32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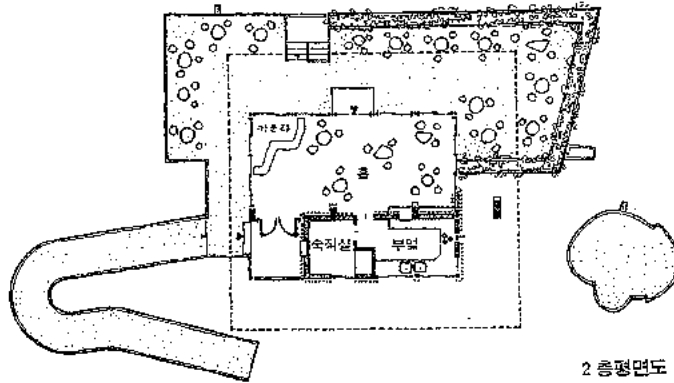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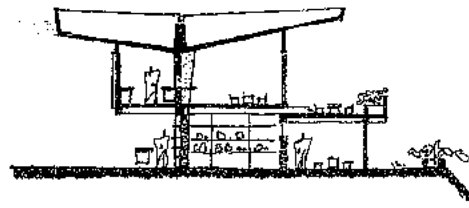
대 지 : 강원도의 강춘선 국도변

주 조 : 철근콘크리트, 자연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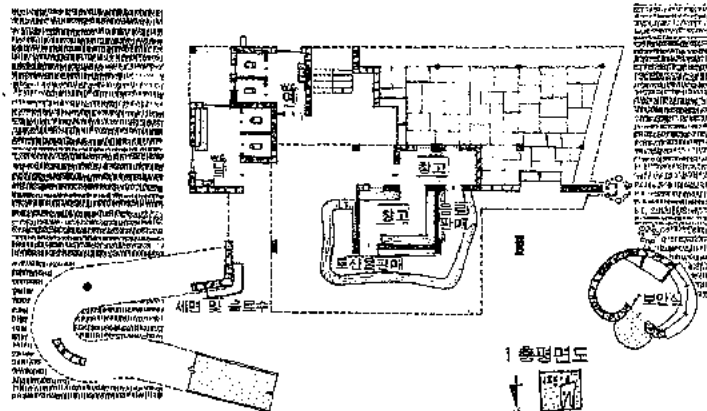
풍나무



단면도



2층평면도



1층평면도



丁氏 住宅

설계: 新潮建築研究所 (代表 吳雄錫)

건축담당: 박재천, 최희경

전기담당: 이경식

위생난방: 한인근

조 경: 이교원

위 치: 종로구 동숭동199외10

대지면적: 200평

건축면적: 1층 52평

2층 36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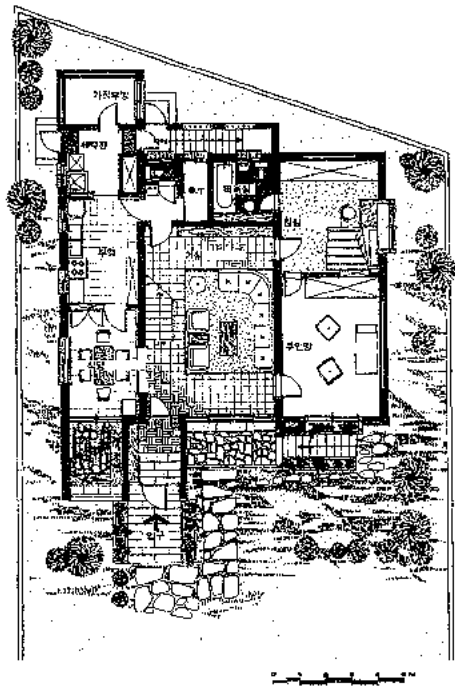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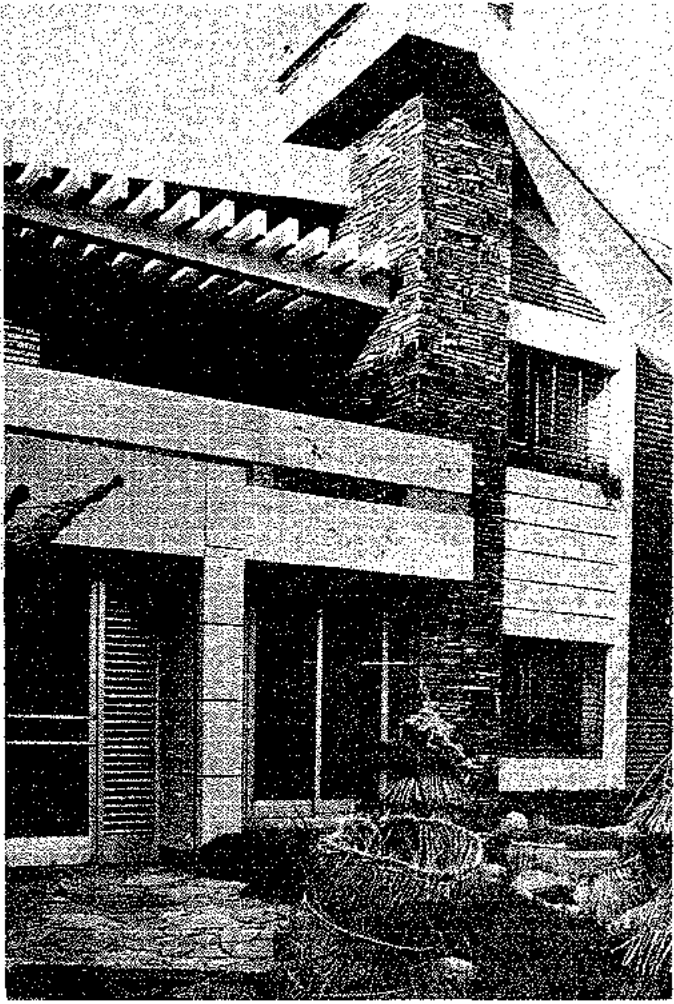
지하 11평

계 · 99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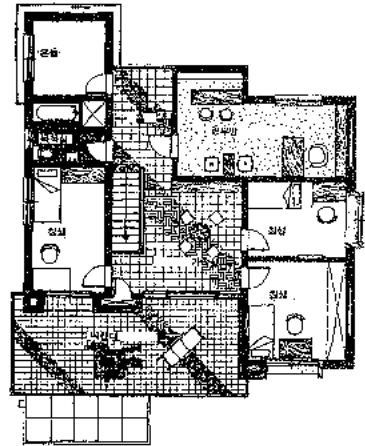
구 조: 벽돌조, 콘크리트 지붕

준 공: 1973. 5.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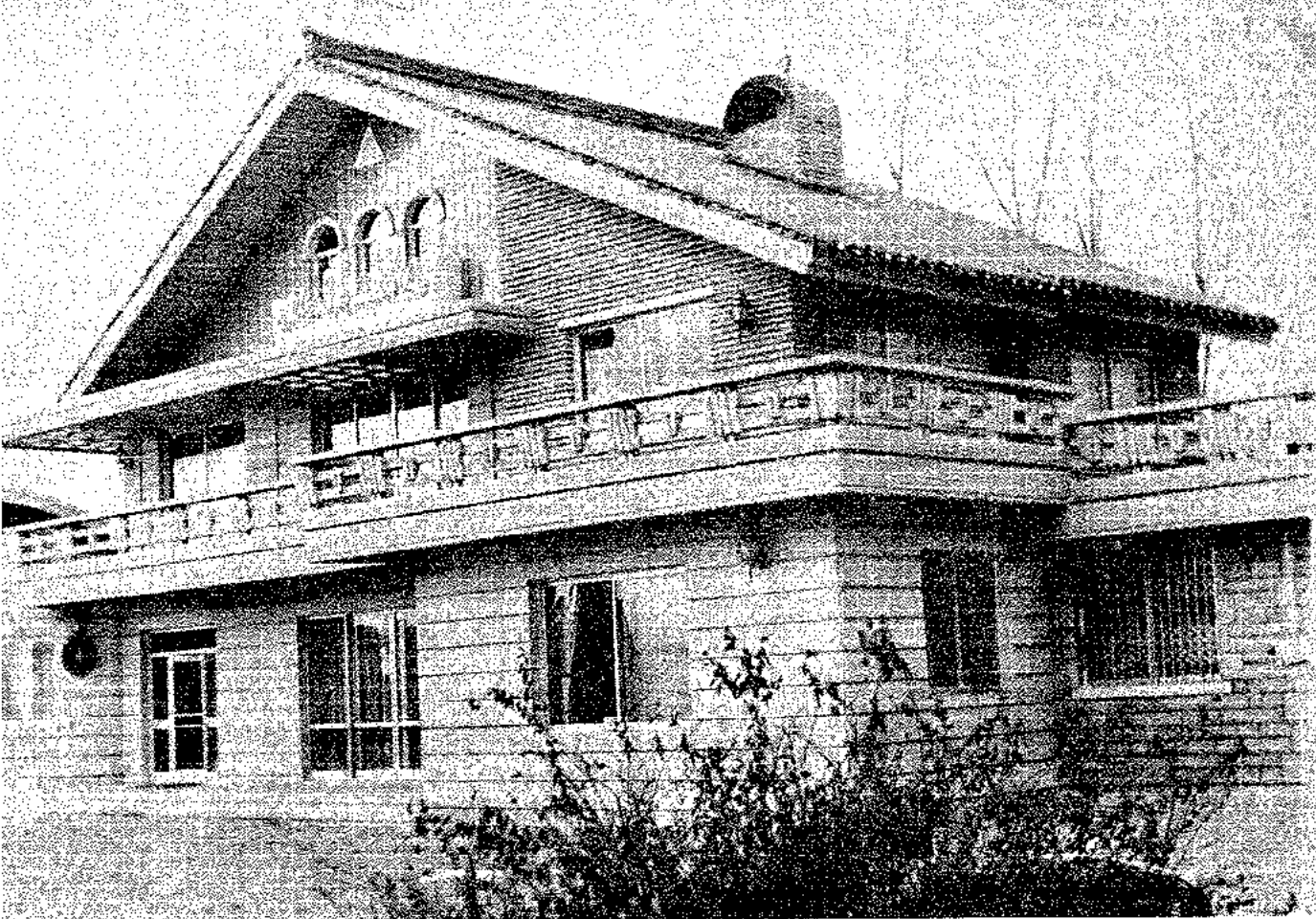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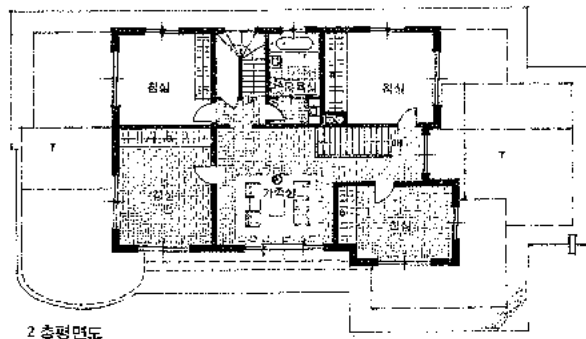
1층평면도



2층평면도



S氏住宅



2층평면도

설 계 : 汎洋建築研究所(劉圭成)

감 리 : " (권영수)

대지면적 : 1,623 M²

건물면적 : 1 층 257.66M²

2 층 137.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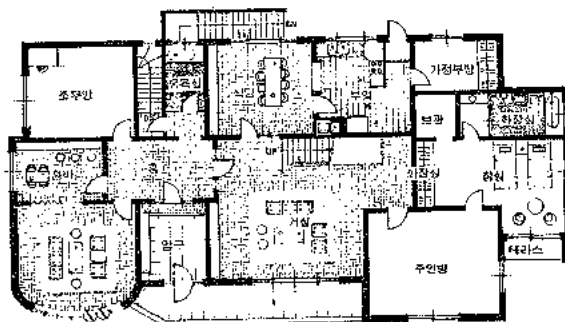
3 층 48.78

지하층 121.59

계 565.99M²

건물위치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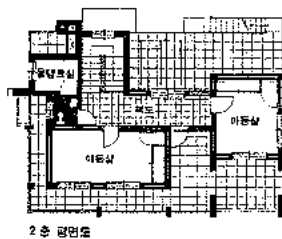
주 소 : 벽돌 및 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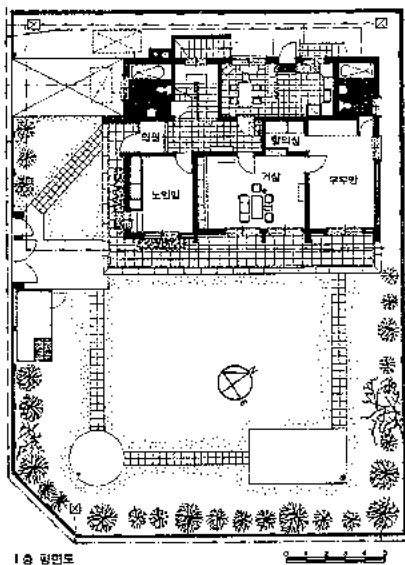
1층평면도



金氏 住宅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설 계 : 新建築 綜合研究所(代表 柳 承 根)

위 치 : 성북구 수유동 171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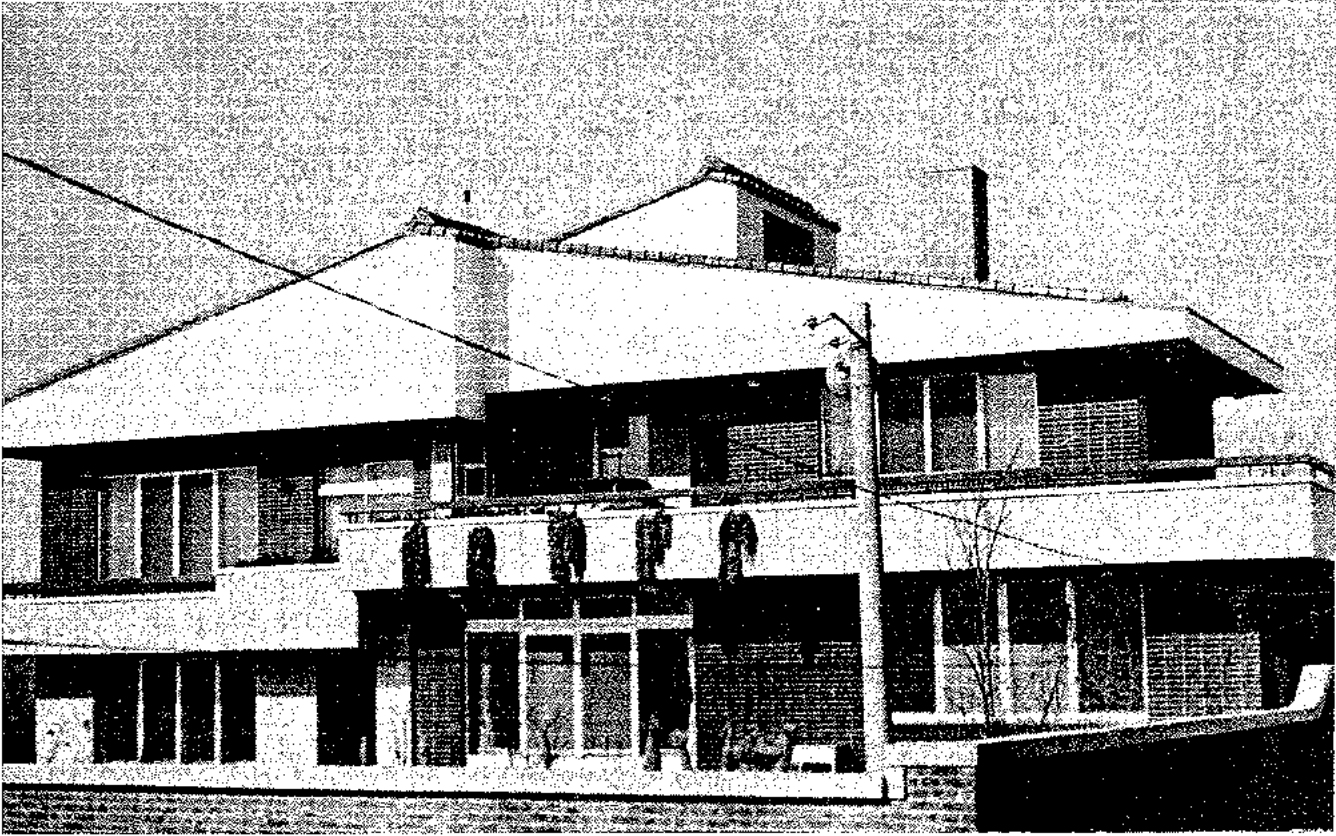
건축면적 : 1층 34평

2층 18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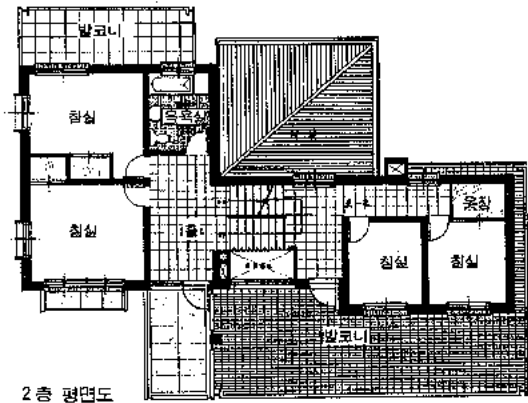
지하 5평

계 = 57평





趙氏 住宅



2층 평면도

설 계 : 照林建築設計事務所 (代表 李 永 熙)

위 치 : 관악구 봉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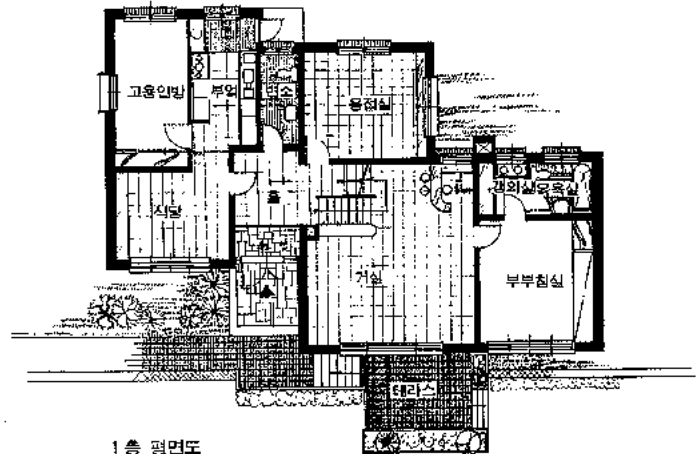
건축면적 : 1층 42평

2층 27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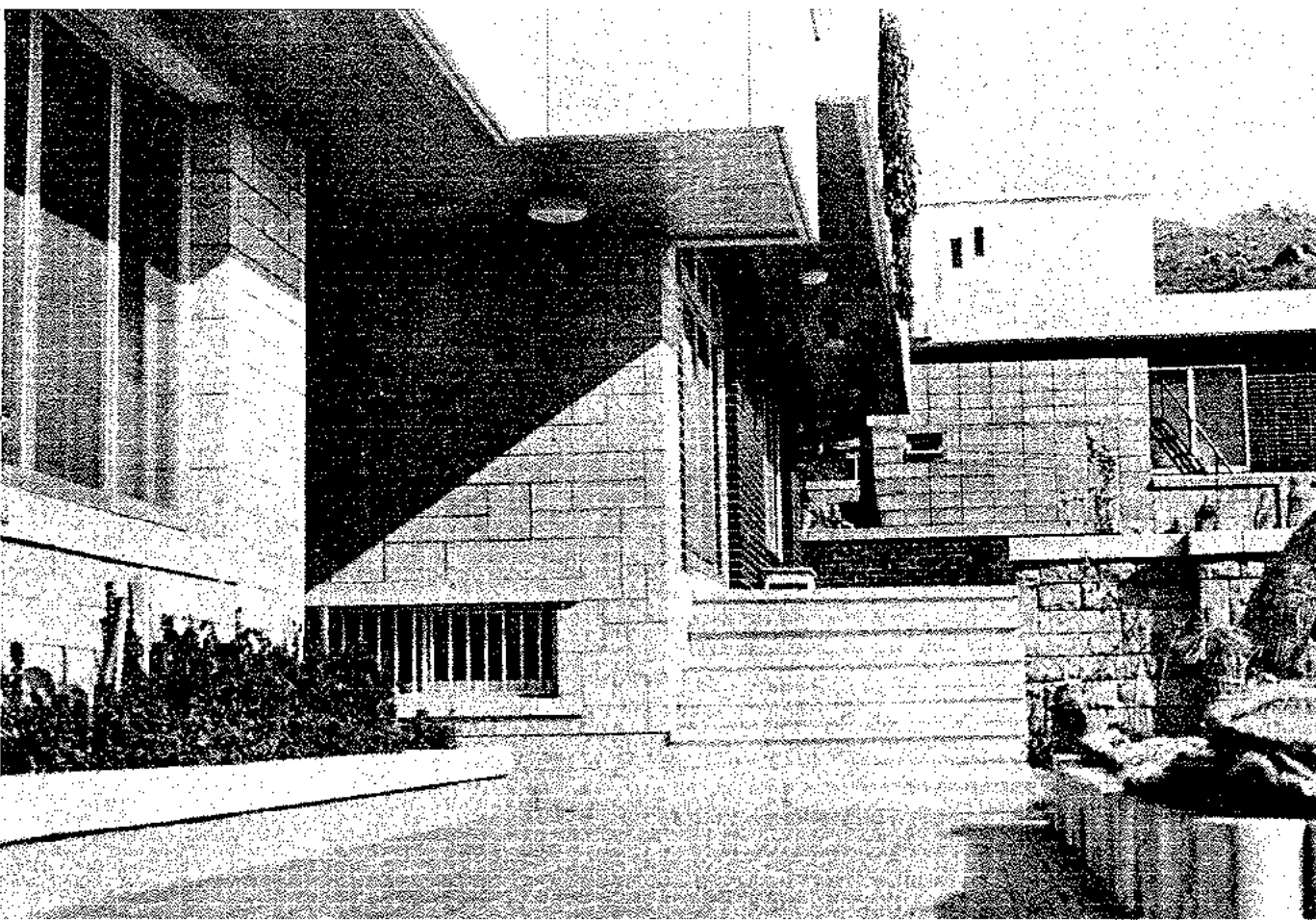
지하 15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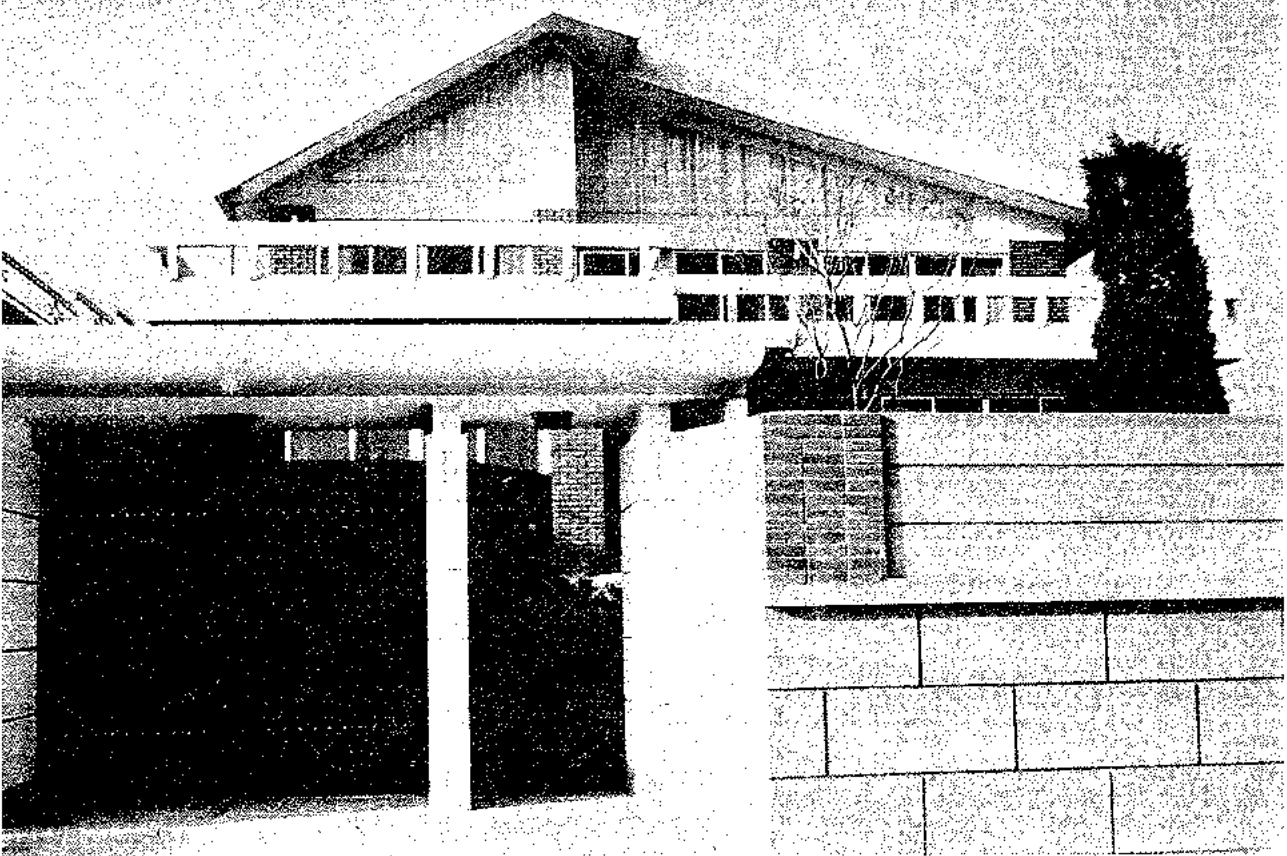
계 - 84평

구 조 : 조적조 슬라브 기와 입히기



1층 평면도





吳氏 住宅

설 계 : 新洋建築事務所 (代表 李 春 相)

위 치 : 서대문구 갈원동

대지면적 : 330m²

건축면적 : 지층 22.4m²

1층 109.42m²

2층 69.54m²

차고 16.50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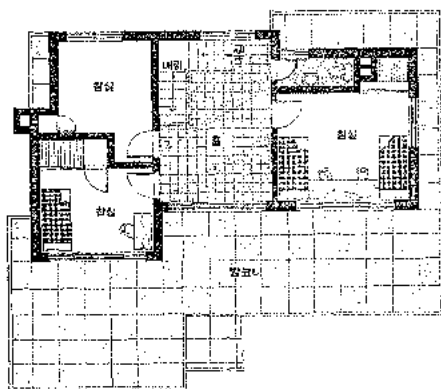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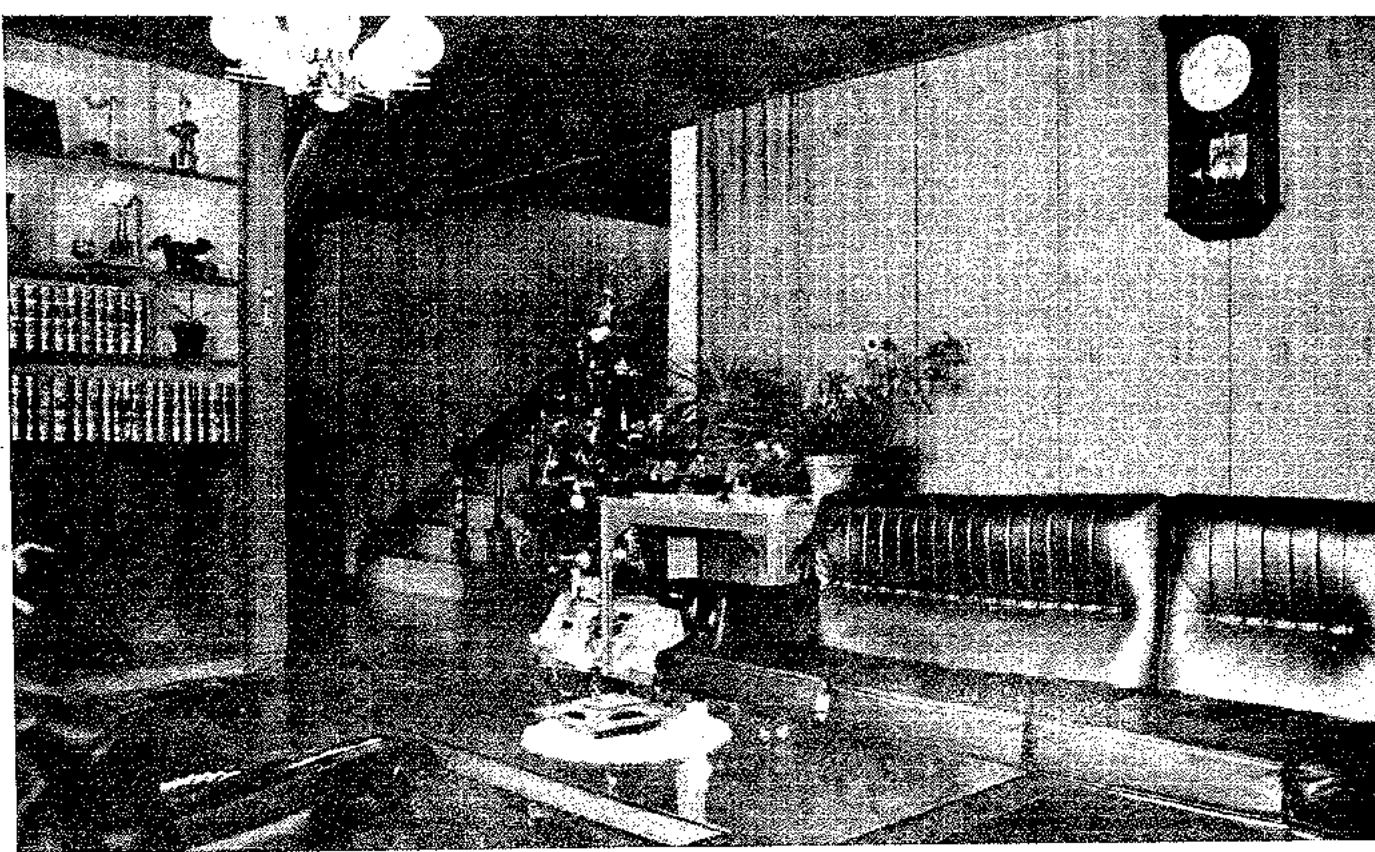
계 - 217.86m²

구 조 : 벽체 → 붉은벽돌쌓기, 일부 돌 붙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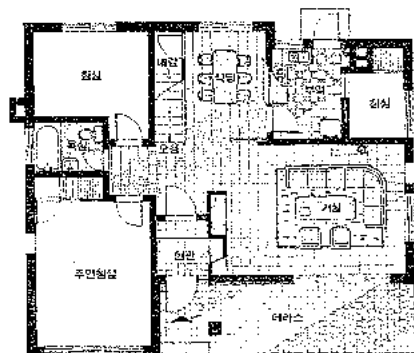
지붕 → 철근콘크리트박공지붕 청기와 잇기

竣 공 : 1973. 8.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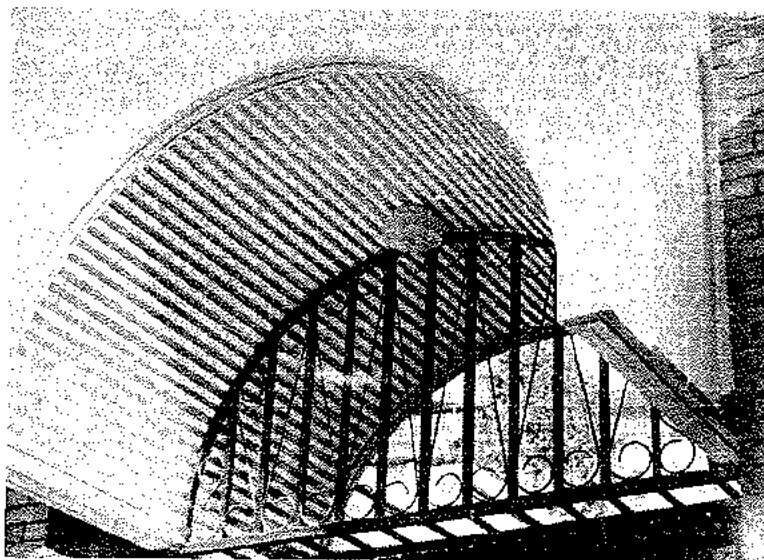


1층 평면도





鄭氏 住宅



설 계 : 三元社建築設計事務所 (代表 李 好 璣)

위 치 : 서울시 석대문구 연희동

대지면적 : 472 m² (143평)

건축면적 : 1층 41.68평

2층 26.53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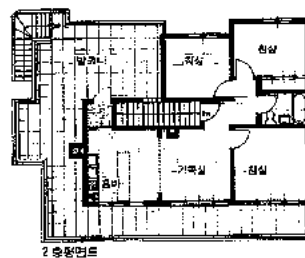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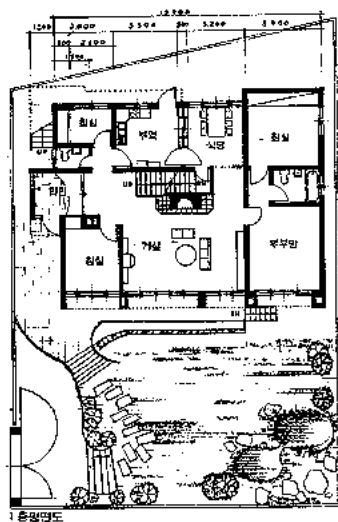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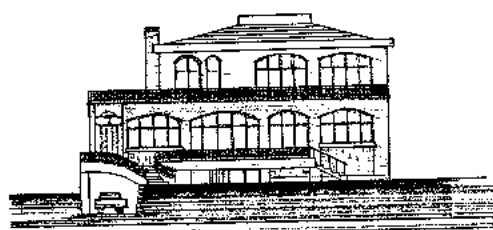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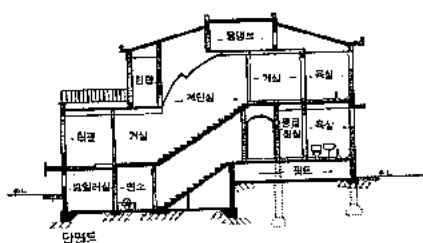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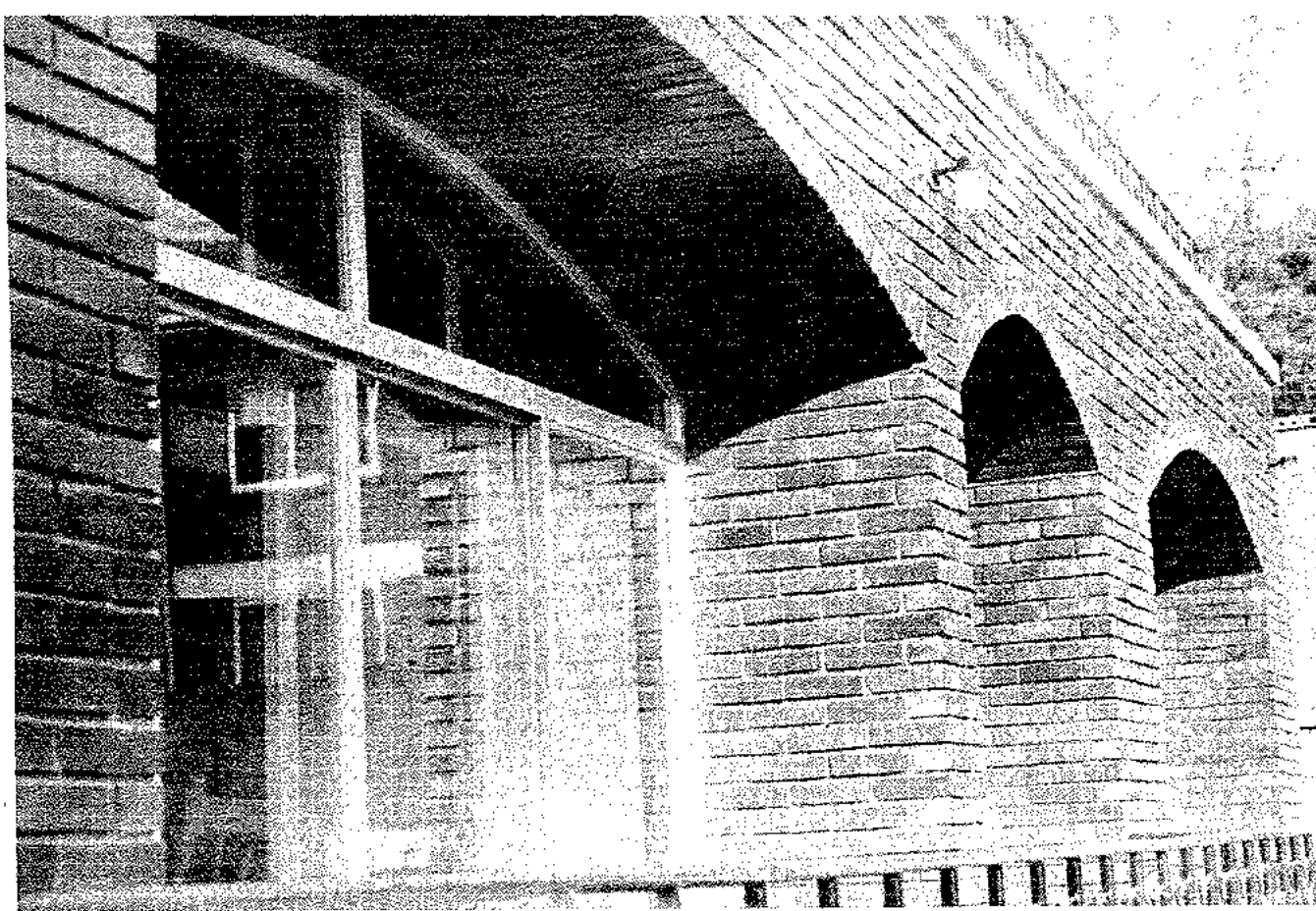
지하 18.36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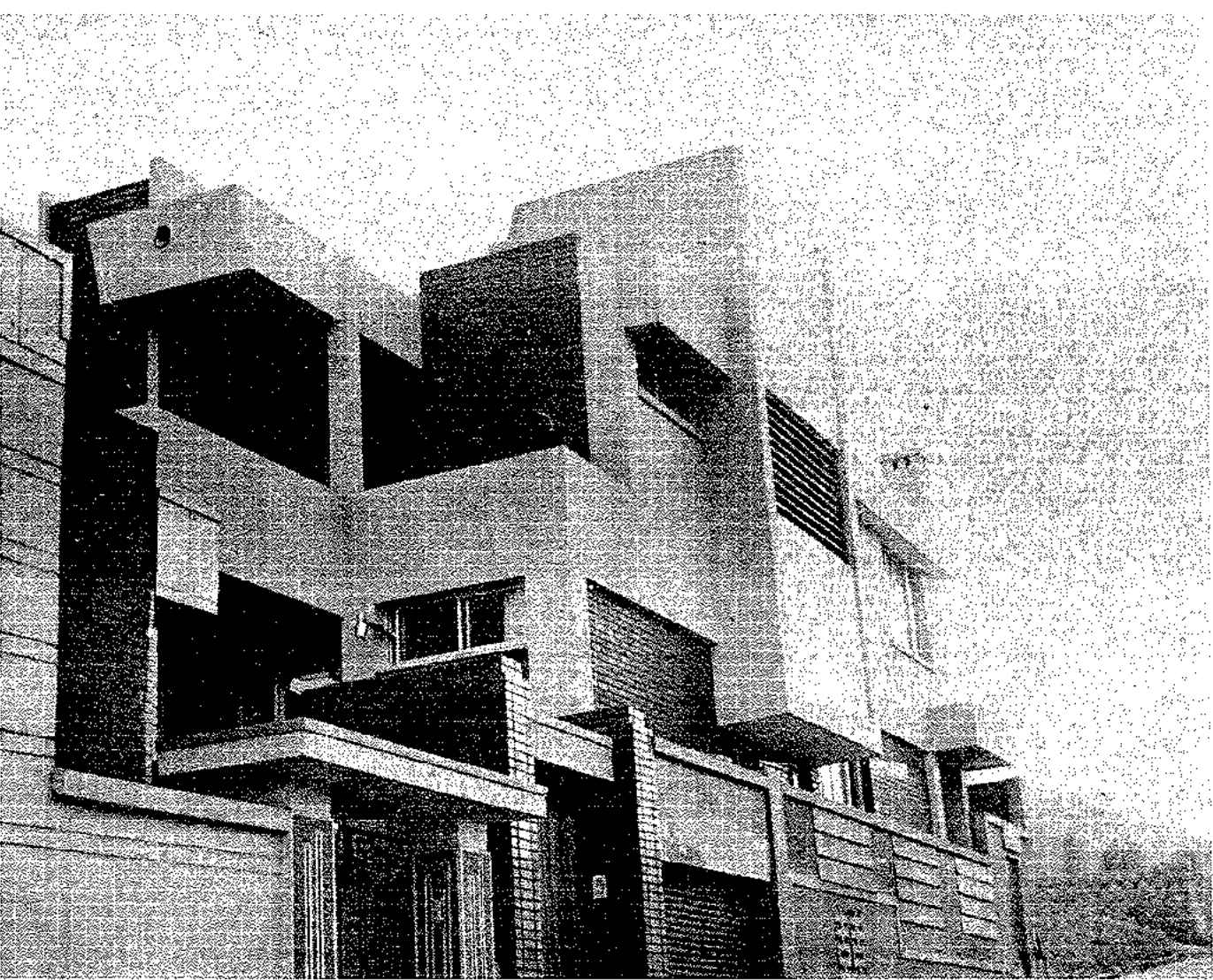
계 = 86.58평

구 조 : 조적조

각 리 : 삼원사 건축설계사무소







李氏 住宅

설계 : 韓國建築文化研究所 (代表 洪哲洙)

위치 : 관악구 상도동

구조 : 벽돌조

배지면적 : 264.48 m^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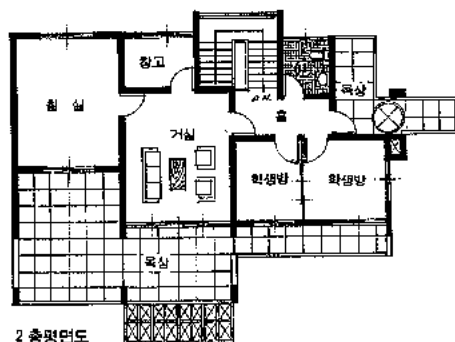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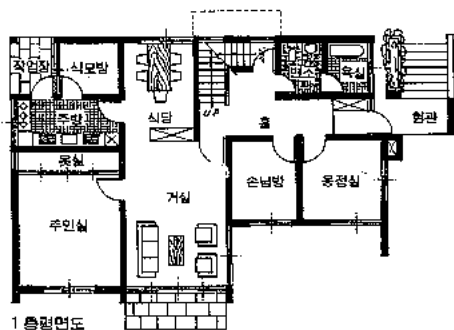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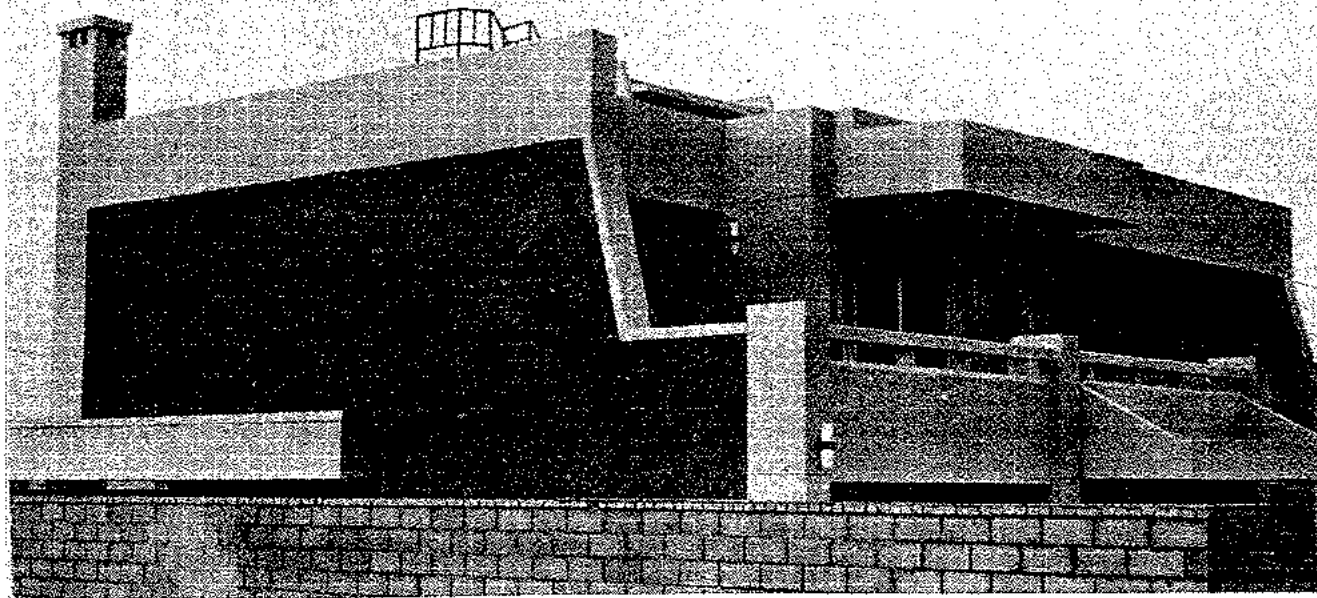
건축면적 : 1층 : 122.2 m^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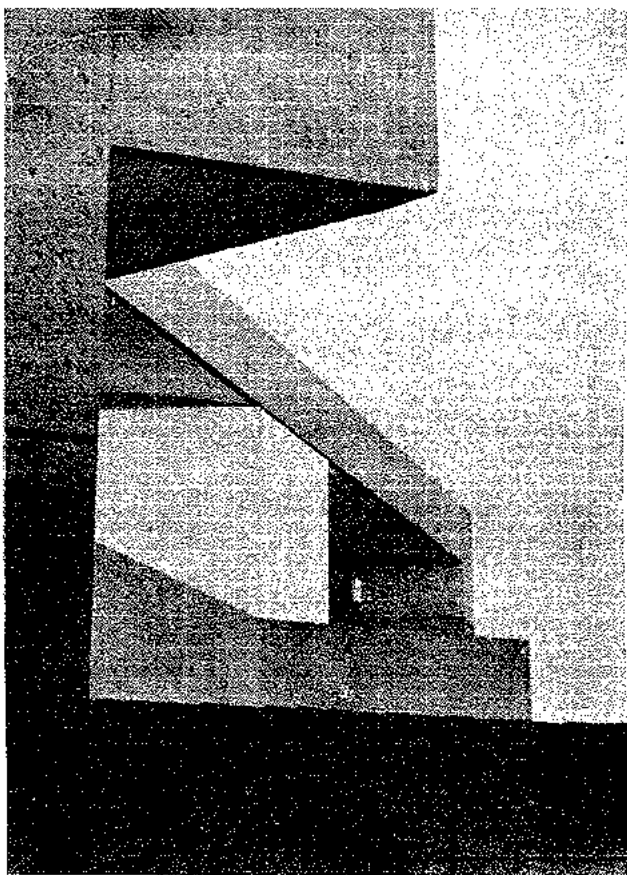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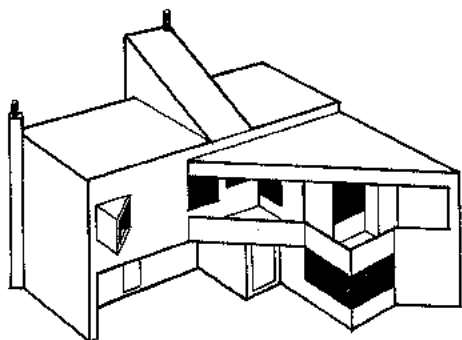
2층 : 82.9 m^2

지층 : 85.04 m^2

옥탑 : 8.0 m^2







朴氏 住宅

설 계 : 一洋建築研究所(代表 池淳)

위 치 : 성북구 성수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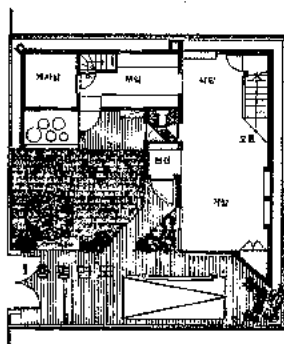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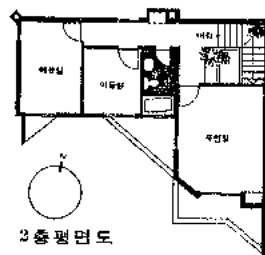
건축면적 : 1층 52.7m²

2층 52.8m²

지하 7.1m²

계 112.6m²

구 조 : 벽돌조



消防法施行令

제1장 화재의 예방

제1조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는 특수장소의 지정)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서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는 “특수장소”라 함은 별표1에 기재하는 특수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제2조 (건축허가등의 대상물의 범위) ①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대상물의 범위는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허가대상물중 다음에 기재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주택·공동주택·여관·하숙 또는 사업장으로서 연면적이 660평방미터 미만의 것.
2. 진료소·조산원으로서 연면적이 200평방미터 미만의 것.
3. 차고로서 연면적이 50평방미터 미만의 것.
4. 창고업 또는 위험물저장 이외의 용도에 공하는 창고.
5. 전각조에 기재하는 2이상의 용도에 용하여지는 복합건물로서 각 용도에 공하여지는 부분의 규모 및 용도가 전각조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것. 다만, 각 용도에 공하여지는 부분의 합계가 660평방미터 이상의 복합건물은 제외한다.

②건축허가청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 또는 확인에 관한 동의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3조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는 별표1에 기재한 특수소방대상물(동표의 (19)항 및 (20)항은 제외한다)중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거나 근무 또는 거주하는 자의 수(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가 50인이상인 소방대상물로 한다.

②수용인원의 산정방법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동일 대지안에 있는 2이상의 특수장소) 동일대지안에 제3조제1항의 특수장소가 2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때에는 제3조의 규정을 적용

함에 있어서 이를 1개의 특수장소로 본다.

제5조 (공동방화관리로 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화관리를 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중 대통령령에 위임된 것은 별표1의 (16)항에 제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지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이상인 소방대상물로 한다.

제6조 (방화관리자의 자격)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는 당해 특수장소의 관리 또는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철도청장이 철도법에 의한 철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대합실에는 철도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는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과정을 수료한 자.
2. 초급대학(전문학교를 포함한다) 이상의 학교에서 소방에 관한 학과 또는 과정을 수료한 자.
3. 소방직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방화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에 관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제7조 (방화관리자의 책무) ①방화관리자는 방화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성실히 행하여야 한다.

②방화관리자는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용수설비 기타의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이하 "소방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점검·정비와 화기의 사용·취급등에 대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방화관리자는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통보 및 피난훈련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소방계획) ①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 검사.
2. 소방용설비등의 점검·정비.
3. 피난통로·피난구·안전구획·방연구획 기타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4. 방화벽·방화대장 기타 방화상의 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

5. 수용인원의 준수.

6. 방화상 필요한 교육.

7. 화재시의 소화활동·통보연락·피난유도와 이에 따른 훈련의 실시.

8. 소방관서와의 업무연락.

9. 기타 관찰소방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방화관리자는 다음 연도에 관한 제1항의 소방계획을 매년 10월31일까지 작성하여 관찰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방서장은 소방계획의 작성 및 그 실시에 관하여 지도한다.

제9조 (특수장소의 방염)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를 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중 대통령령에 위임된 것은 다음에 제기하는 소방대상물로 한다.

1. 나이트클럽.
2. 펜스틀.

②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성능이 있어야 할 물품중 대통령령에 위임된 것은 문발·차광막·전시용접유관(식물접유를 주원료로 한 것에 한한다), 무대에서 사용하는 막, 대도구용 합판 또는 섬유판으로 한다.

③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의 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바나 불꽃을 접하였을 때 용융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고, 기타 물품에 있어서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수치의 범위안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1. 물품의 잔열시간(착열후에 바나를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 철대까지의 경과시간을 말한다)은 10초 이내.
2. 물품의 잔진시간(착열후에 바나를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철대까지의 경과시간을 말한다)은 30초 이내.
3. 물품의 탄화면적(제1호의 잔열시간 또는 제2호의 잔진시간내에서 탄화하는 면적을 말한다)은 50평방센티미터 이내.
4. 탄화길이(제1호의 잔열시간 또는 제2호의 잔진시간내에 탄화하는 길이를 말한다)는 20센티미터이내.
5. 물품의 점염회수(완전히 용융될때까지 될

요인 불꽃을 집하는 회수를 말한다)는 3회 이상 10회 이하.

④제 3항에 규정한 방염성능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⑤법 제11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 성능이 있어야 할 물품 또는 그 재료로서 방염성능이 있는 것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염성능이 있다는 뜻의 방염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가스등의 저장 또는 취급신고)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화재예방 또는 소화가 극히 곤란한 물질은 압축에지렌과 압축무트지렌으로 하며, 동조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이들 물질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압축아세틸렌가스는 10킬로그램이상.
2. 액화석유가스는 100킬로그램이상.
3. 압축에지렌은 100킬로그램이상.
4. 압축무트지렌은 100킬로그램이상.

제11조 (위험물·준위험물 및 특수가연물의 지정) ①법 제2조제 5호의 규정에 의한 발화성 또는 인화성 위험물의 품명은 별표2에 기재한 것으로 한다.

②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들뜸온 위험물에 준하는 가연성이 있는 물품으로서 별표3에 기재한 것(이하 "준위험물"이라 한다)과 화재가 발생하면 그 화재가 빠른 물품으로서 별표4에 기재한 것(이하 "특수가연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장 소방시설등

제1절 소방시설을하여야할소방대상물및소방시설의종류

제12조 (소방대상물의 범위) ①법 제33조제 1항·동 제16조제 1항 및 동 제49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제 1항의 소방시설을 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1. 별표1에 기재한 특수장소.
2. 별표2 내지 별표4에 기재한 수량 이상의 위험물·준위험물·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
3. 별표2에 기재한 위험물의 지정 수량의 5분의 1 이상을 제조·저장·취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
4. 법 제49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경계지

구간의 주택·점포 기타의 건축물이나 시설.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종류와 기준은 이 장에 규정하는 것외에 제6장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 (소방시설의 종류) ①법 제33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은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용수설비 및 기타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로 구분한다.

②소화설비는 물 기타 소화제를 사용하여 소화를 행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소화기 및 다음에 계기하는 간이소화용구 등.

가. 들썩동이.

나. 소화수통.

다. 전조사.

라. 팽창질식 또는 팽창진주암.

2. 옥내 소화전 설비.

3. 스프링크러 설비.

4. 물분무소화 설비.

5. 포말소화 설비.

6. 불연성가스 소화 설비.

7. 증발성액체소화 설비.

8. 분말소화 설비.

9. 옥외소화전 설비.

10. 동력소방펌프 설비.

③경보설비는 화재발생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

2. 전기화재경보기.

3.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화재속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4. 비상경보기구(경종·휴대용확성기·수동식사이렌등) 및 비상경보설비(비상벨·자동식사이렌·방송설비)

④피난설비는 화재가 발생한 때에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것을 말한다.

1. 미끄러대·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피난교 기타 피난기구.

2.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

⑤소화용수설비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지 기타 소화용수를 말한다.

⑥기타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는 배연설비·연결산수설비·연결송수관 설비 또는 비상콘센트설비를 말한다.

제2절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

제1관 통 칙

제14조 (소방대상물의 완전구획부분) 내화구조의 소방대상물로서 개구부가 없는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제15조 (소방대상물의 용도별부분) 별표 1의 (16)항에 계기하는 소방대상물의 부분이 동표의 (1)항 내지 (15)항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용도별로 각각 1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다만, 제30조제2항제2호 또는 동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2관 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제16조 (소화기구에 관한 기준) ①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이하 "소화기구"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1)항 (가)호·(2)항·(17)항·(18)항·(20)항에 계기한 소방대상물 또는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
2. 별표 1의 (1)항(나)호·(3)항 내지 (6)항·(9)항 또는 (12)항 내지 (14)항에 계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50평방미터 이상의 것.
3. 별표 1의 (7)항·(8)항·(10)항·(11)항 또는 (15)항에 계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300평방미터 이상의 것.
4. 별표 1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중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건축물 기타의 시설로서 별표 2에서 정한 지정수량의 5분의 1이상의 위험물이나 별표 3에서 정한 수량이상의 준위험물 또는 별표 4에서 정한 수량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및 시설.
5. 별표 1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중 제1호 내

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건축물의 지층·무창층(건축물의 지상층중 피난상 또는 소화활동상 사용될 개구부의 면적이 그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바닥 면적이 50평방미터이상의 것.

②제1항의 소화기구의 설치·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소화기구는 별표 5에 의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소방대상물의 용도·구조·규모 및 소화기구의 종류와 성능에 따라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증발성액체를 방사하는 소화기는 지층·무창층 기타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화기구는 통행 또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사용할 때에 쉽게 반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에 계기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크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로탈소화설비·불연성가스소화설비·증발성액체소화설비 또는 탈분소화설비를 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화기구의 설치개수를 감소할 수 있다.

제17조 (옥내소화전설비에 관한 기준) ①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1)항에 계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500평방미터이상의 것.
2. 별표 1의 (2)항 내지 (10)항·(12)항 또는 (14)항에 계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700평방미터 이상의 것.
3. 별표 1의 (11)항 또는 (15)항에 계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의 것.
4. 별표 1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중 제1호 내지 제3호에 계기한 것을 제외한 건축물 기타의 시설로서 별표 3에서 정한 수량의 75배 이상의 제1류·제2류·제5류의 준위험물 또는 별표 4에서 정한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및 시설.

5. 별표 1에 계기한 소방대상물(동표의 (13)항 및 (17)항을 제외한다) 중 제 1호 내지 제 4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건축물의 지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동표의 (1)항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100평방미터 이상, 동표의 (2)항 내지 (10)항·(12)항 또는 (14)항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150평방미터 이상, 동표의 (11)항 또는 (15)항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00평방미터 이상의 것.

②제 1항제 1호 내지 제 3호 또는 제 5호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이 그 주요구조부(건축법 제 2조제 7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한 부분(반자틀림·창틀 기타 이에 유사한 부분은 제외한다)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난연합판·난연설유판·난연프라스틱판 기타의 건축재료로서 난연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연면적 또는 바닥면적은 동항에 규정된 해당면적의 3배의 수치를 기준으로 한다.

③제 1항의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옥내소화전은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되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호오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는 2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수원의 수량은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설치개수가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개로 한다)에 26립방미터를 곱하여 얻은 량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옥내소화전설비는 어느층에 있어도 당해 층의 모든 옥내소화전(설치개수가 5를 초과하는 경우는 5개의 옥내소화전으로 한다)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 노즐의 선단의 방수압력이 매 평방센치미터에 대하여 1.7킬로그램 이상이요 방수량이 매분 130리터 이상의 성능이 있어야 한다.

4.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하기가 편리하고 화재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

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옥내소화전을 11층 이상의 소방대상물에 설치할 때에는 따로 비상전원을 부설하여야 한다.

④제 1항 각호에 계기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제 18조 내지 제 22조·제 25조 또는 제 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스프링크라설비·물분무 소화설비·포말소화설비·불연성가스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동력 소방펌프설비를 한때에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설비의 유요 범위안의 부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동력소방펌프설비에 있어서는 1층 및 2층의 부분에 한한다)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하지아니할 수 있다.

제 18조 (스프링크라설비에 관한 기준) ①다음 각호에 계기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스프링크라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1)항에 계기한 소방대상물로서 무대부(무대에 부설된 장치물설 및 소품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바닥면적이 당해 무대가 지층·무창층 또는 4층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300평방미터 이상, 기타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500평방미터 이상의 것.

2. 별표 1의 (4)항에 계기한 소방대상물로서 판매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층이하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9,000평방미터 이상, 5층이상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6,000평방미터 이상의 것.

3. 별표 1의 (14)항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중 천정의 높이가 10미터를 넘고 연면적이 700평방미터 이상의 락크식창고(선반 또는 이에 유사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창고를 말한다).

4. 별표 1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중 제 1호 내지 제 3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로서 별표 3에서 정한 수량의 1,000배 이상의 제 1류·제 2류·제 5류의 준위험물 또는 별표 4에서 정한 수량의 1,0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및 시설.

5. 별표 1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중 제 1호 내지 제 4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건축물의 지층·무창층 또는 4층이상 10층이하의 층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중 그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동표의 (2)항 및 (4)항에 계기한 것에 있어서는 1,000평방미터 이상, 동표의 (3)항 (나)호·(5)항 (가)호 및 (6)항에 계기한 것에 있어서는 1,500평방미터 이상의 것. 다만, 별표 1의 (1)항·(3)항 (가)호·(5)항 (나)호 및 (7)항 내지 (17)항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6. 별표 1의 (1)항 내지 (6)항·(12)항 (나)호 및 (15)항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중 제 1호·제 2호 및 제 4호에 해당한 것을 제외한 건축물의 11층 이상의 부분중 건축법시행령 제96조제 1항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이외의 부분으로서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 이상의 것.

②제 1항의 스프링크라설비의 설치·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스프링크라헷드는 제 1항제 1호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에는 무대부에, 제 1항제 2호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에는 판매장의 부분에, 제 1항제 4호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에는 준위험물 또는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부분에, 제 1항제 5호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에는 그 주된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에, 제 1항제 6호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에는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지 아니한 부분에, 제 1항제 3호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에 각각 설비하여야 한다.

2. 스프링크라헷드는 제 1호에 계기한 부분의 천정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그 부분으로부터 어느 1개의 스프링크라헷드의 수평거리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 1항제 3호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가. 제 1항제 1호 및 제 6호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의 부분(별표 1의 (1)항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의 부분에 한한다)의 무대부에 있어서는 1.7미터 이하.

나. 제 1항제 2호·제 4호 내지 제 6호에 계기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1미터 이하(내화건축물에 있어서는 2.3미터 이하).

3. 제 2호에 의하는 것 외에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건축법 제 2조제 8호의 규정에 의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말한다)의 개구부에는 그 윗 인방에 거리 2.5미터마다 스프링크라헷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대상물의 10층 이하의 부분에 있는 개구부에 감종방화문 또는 울종방화문(건축법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문을 말한다)을 설치하였거나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도련자설비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원의 수량은 스프링크라헷드의 종류별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된 스프링크라헷드의 소요개수에 1.6일방미터를 곱하여 얻은 량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스프링크라설비는 스프링크라헷드의 종류별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된 개수의 스프링크라헷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헷드의 선단의 방수압력이 매 평방센치미터에 대하여 1킬로그램 이상이고 방수량이 80리터이상의 성능이 있어야 한다.

6.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등으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7. 스프링크라헷드를 소방대상물의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할 때에는 비상전원을 부설하고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쌍구형의 송수구를 부설하여야 한다.

③제 1항 각호에 계기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제 19조 내지 제 22조의 규정에 의한 물분무소화설비·포말소화설비 또는 불연성가스소화설비를 한 때에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스프링크라설비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제 17조제 2항의 규정은 제 1항제 3호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19조 (물 분무소화설비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①다음에 계기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그에 적용한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대상물 또는 그부분	적용소화설비
별표 1 의 (13)항 (가)호에 제기한 소방대상물의 층 (주차할 제차가 동시에 나 올 수 있는 구조의 층을 제외한다)으로서 주차의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이 지층 또는 2층 이 상의 층에 있어서는 200평 방미터이상, 1층에 있어 서는 500평방미터이상의것	물 분무소화설비·포말소 화설비·불연성가스소화설 비·분말소화설비
별표 1 의 (13)항 (나)호에 제기한 소방대상물	포말소화설비
별표 1 에 제기한 소방대상 물에 설치된 통신기설로 서 그 바닥면적이 500평방 미터이상의 것	물 분무소화설비·불연성 가스 소화설비·분말소화 설비

별표 1 에 제기한 건축물이나 시설 로서 별표 3 에 정 한 수량의 1,000 배이상의 준위험 물(제 3 류 및 제 6 류를 제외한다) 또는 별표 4 에 정 한 수량의 1,000 배이상의 특수가 연물을 저장하거 나 취급하는 장소 및 시설	제 1 류 또는 제 2 류의 준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 하는 곳	물분무소화설비· 포말소화설비
	제 4 류의 준위험 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곳	물분무소화설비· 불연성가스소화설 비·증발성액체소 화설비·분말소화 설비·포말소화설 비
	제 5 류의 준위험 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곳	물분무소화설비
	석탄 또는 목탄을 저장하거나 취급 하는 곳	물분무소화설비· 포말소화설비
	석탄 및 목탄 이외 의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 하는 곳	물분무소화설비· 포말소화설비·불 연성가스소화설비 (전역방출 방식의 것에 한한다)

② 제 1 항에 제기한 별표 3 의 제 1 류·제 2 류 및
제 5 류의 준위험물 또는 별표 4 의 특수가연물
을 저장·취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에 스프링
크라설비를 제18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
때에는 당해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대
하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설비를 하
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 (물분무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제19조에

규정한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유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분무헤드는 방호대상물(당해 소화설비에 의
하여 소화할 수 있는 범위의 대상물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구조·성질·수량
또는 취급방법에 따라 표준방사량(제19조제
1 항의 소화설비의 각 헤드별로 내무부령으
로 정하는 물분무·포말·불연가스·증발액체
또는 분말의 방사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
로 당해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
화할 수 있도록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필요
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별표 1 의 (13)항(가)호에 제기한 소방대상물
의 층에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내
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효한 배
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3. 고압의 전기기기가 있는 장소에는 당해 전
기기와 분무헤드 및 배관과의 사이에 전
기절연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공간을 두어야
한다.
4. 수원의 수량은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
하게 소화할 수 있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화재시 연
소 또는 충격에 의한 손상의 우려가 적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장치를 유
효하게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포말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제19조에 규
정한 포말소화설비의 설치·유지는 다음 각호
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고정식 포말소화설비의 포말헤드는 방호대
상물의 형상·구조·성질·수량 또는 취급방
법에 따라 표준방사량으로 당해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내무부
령으로 정하는 필요 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이동식 포말소화설비의 호오스 접결구는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 개의 호
오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이동식 포말소화설비의 포말방사용 기구를
넣어 둘 합은 호오스 접결구로부터 3미터
이내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수원의 수량, 포말소화약제 또는 화학포말

소화액의 저장량은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이어야 한다.

5. 포말소화약제 또는 화학포말소화액의 저장 장소 및 가압송액장치는 화재시 연소 또는 충격에 의한 손상의 우려가 적고 약제가 변질할 우려가 적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장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불연성가스 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제19조에 규정한 불연성가스 소화설비의 설치·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전역방출방식의 불연성가스 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불연재료로 된 벽·기둥·바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지붕)로 구획되고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갑종 방화문·울종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로 된 문으로서 불연성가스가 방사될 직전에 개구부를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 부분에 대하여 당해 부분의 용적 및 그 방호대상물의 성질에 따라 표준방사량으로 당해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불연성가스가 외부로 새어나가더라도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양을 방출할 수 있는 불연성가스 소화설비를 한 때에는 당해 개구부의 자동폐쇄장치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소방출방식의 불연성가스 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형상·구조·성질·수량 또는 취급방법에 따라 방호대상물에 불연성가스를 직접 방사함으로써 표준방사량으로 당해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이동식 불연성가스 소화설비의 호오스 접결구는 모든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그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호오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불연성가스용기에 저장하는 불연성가스의 양은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이어야 한다.
5. 불연성 가스용기는 화재의 경우에 연소 또는

충격에 의한 손상의 우려가 적고 온도의 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장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증발성액체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제19조에 규정한 증발성액체소화설비의 설치 및 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전역방출방식 및 국소방출방식의 증발성액체소화설비의 분사헤드의 설치에 제2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역방출방식 및 국소방출방식의 불연성가스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설치의 예에 의하여야 한다.
2. 이동식 증발성액체소화설비의 호오스 접결구는 모든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그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호오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증발성 액체탱크에 저장하는 증발성 액체의 양은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이어야 한다.
4. 증발성액체 탱크 및 가압송액 장치는 화재의 경우 연소 또는 충격에 의한 손상의 우려가 적고 온도의 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장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분말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제19조에 규정한 분말소화설비의 설치·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전역방출방식 및 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의 설치에 제2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역방출방식 및 국소방출방식의 불연성가스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설치의 예에 의하여야 한다.
2. 이동식 분말소화설비의 호오스 접결구는 모든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그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호오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소화분말용기에 저장하는 소화분말의 양은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이어야 한다.
4. 소화분말용기 및 가압용가스용기는 화재시에 연소 또는 충격에 의한 손상의 우려가 적고 온도와 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장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옥외소화전 설비에 관한 기준) ①별표 1에 계기한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지층을 제외한 층수가 1인 경우에는 1층의 바닥면적, 지층을 제외한 층수가 2이상인 경우에는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내화건축물에 있어서는 9,000평방미터이상, 준내화건축물에 있어서는 6,000평방미터이상, 기타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3,000평방미터이상의 것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동일대지안에 별표 1에 기재한 건축물(내화건축물·준내화건축물을 제외한다)이 2이상이 있을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외벽 상호간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에 있어서는 3미터이하, 2층에 있어서는 5미터이하인 것은 이를 1개의 건축물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옥외소화전은 건축물의 각부분으로부터 1개의 호오스 점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수원의 수량은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설치개수가 2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로 한다)에 7입방미터를 곱하여 얻은 양 이상의 양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옥외소화전설비는 2개의 옥외소화전(설치개수가 1개인 경우에는 1개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 노즐의 선단의 방수압력이 매평방센치미터에 대하여 2.5킬로그램 이상이고 방수량이 매분 350미터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옥외소화전 및 동설비의 방수용기구를 넣어들 함은 피난 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조작에 방해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건축물에 제18조 내지 제24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스프링클라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말소화설비·불연성가스소화설비·증발성액체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 또는 동력소화펌프설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한하여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 (동력소방펌프설비에 관한 기준) ①다음 각호에 기재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동력소방펌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 각호에 기재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2. 제25조제1항의 건축물.
- ②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제2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동력소방펌프설비는 규격방수량이 매분 0.4입방미터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규정한 동력소방펌프설비의 설치·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동력소방펌프설비의 수원은 소방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원까지의 수평거리가 당해 동력소방펌프의 규격방수량이 매분 0.5입방미터이상의 것에 있어서는 100미터 이내, 매분 0.4입방미터이상 0.5입방미터미만의 것에 있어서는 40미터이내, 매분 0.4입방미터미만의 것에 있어서는 25미터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수원의 수량은 당해 동력소방펌프의 규격방수량으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이어야 하되, 20입방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20입방미터로 할 수 있다.
3. 동력소방펌프는 소방펌프자동차 또는 자동차에 의하여 전인되는 것에 있어서는 수원에서부터 보행거리 1,000미터이내의 장소에,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수원의 직근에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⑤제1항 각호에 기재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다음 각호의 소화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대하여 동력소방펌프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 각호에 기재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한 때.
2. 제1항제1호에 기재한 소방대상물의 1층 또는 2층에 제17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라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말소화설비 또는 불연성가스소화설비를 설치한 때.
3. 제1항제2호에 기재한 건축물의 1층 또는 2층에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스프링클라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말소화설비·불연성가스소화설비·증발성액체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한 때.

제3관 경보설비에 관한 기준

제27조 (자동화재탐지설비에 관한 기준) ①다음 각호에 기재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13)항(나)호 및 (17)항에 계기한 소방대상물.
 2. 별표 1의 (1)항·(2)항·(5)항(가)호 및 (6)항에 계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300평방미터이상의 것.
 3. 별표 1의 (3)항·(4)항·(5)항(나)호·(7)항 내지 (10)항·(12)항·(13)항(가)호 및 (14)항에 계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500평방미터이상의 것.
 4. 별표 1의 (11)항 및 (15)항에 계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의 것.
 5. 제 1호 내지 제 4호에 계기한 것 외에 별표 1에 계기한 건축물이나 시설로서 별표 3에 정한 수량의 500배이상의 준위험물 또는 별표 4에 정한 수량의 50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것.
 6. 제 1호 내지 제 5호에 계기한 것외에 별표 1에 계기한 건축물의 지층·무창층 또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300평방미터이상의 것.
 7. 별표 1의 (13)항(가)호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제 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지층 또는 2층이상의 층(주차한 차량이 동시에 옥외로 나갈 수 있는 구조의 층은 제외한다)으로서 주차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의 것.
 8. 별표 1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의 통신기기실로서 바닥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의 것
- ②제 1항제 2호 내지 제 4호 및 제 6호에 계기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고, 실내에 면한 벽과 반자의 표면이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연면적 또는 바닥면적은 동항에 규정된 해당면적의 2배를 기준으로 한다.
- ③제 1항에 규정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1회선이 유효하게 화재의 발생을 감지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있어서 같다)은 소방대상물의 2이상의 층에 미쳐서는 아니된다. 다만,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개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평방미터 이하로 하고, 그 1번의 길이는 50미터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문에서 그 내부를 투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1,000평방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 및 반자간의 부분 (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천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유효하게 화재의 발생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반자간의 부분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비상전원을 부설하여야 한다.
- ④제 1항 각호에 계기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제 18조 내지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 또는 포말소화설비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한 것에 한한다)를 한 때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한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 28조 (전기화재경보기에 관한 기준) ①다음 각호에 계기한 건축물 (내화구조의 것을 제외한다)로서 그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건축물에는 전기화재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17)항에 계기한 건축물.
 2. 별표 1의 (5)항 및 (9)항에 계기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50평방미터 이상의 것.
 3. 별표 1의 (1)항 내지 (4)항·(6)항 및 (12)항에 계기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00평방미터 이상의 것.
 4. 별표 1의 (7)항·(8)항·(10)항 및 (11)항에 계기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의 것.
 5. 별표 1의 (14)항 및 (15)항에 계기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의 것.
 6. 제 1호 내지 제 5호에 계기한 것외에 별표 1의 (1)항 내지 (6)항·(15)항에 계기한 건축물로서 계약전류용량 (동일건축물로서 계

악 중별이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의 최대계약 전력의 용량) 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②제 1항의 전기화재경보기는 건축물의 옥내 전기배선에 관한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29조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화재속보설비에 관한 기준) ①다음 각호에 기재한 소방대상물에는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있는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 1의 (1)항·(2)항·(4)항·(5)항(가)호·(6)항·(12)항 및 (17)항에 기재한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의 것.
2. 별표 1의 (3)항·(5)항(나)호 (7)항 내지 (11)항 및 (13)항 내지 (15)항에 기재한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의 것.

②다음 각호에 기재한 소방대상물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4)항·(12)항 또는 (14)항에 해당하는 시장·폐화점·마켓·공장·창고로서, 바닥면적이 1,500평방미터 이상의 것.
2. 제18조제 1항제 4호에 기재한 소방대상물.

③제 1항의 화재속보설비는 여러사람의 눈에 잘 보이고 화재의 경우 신속히 조작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수위실이나 관리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소방관서에 언제든지 통보할 수 있는 전화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 1항의 화재속보설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 (비상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 설비에 관한 기준) ①별표 1의 (4)항·(6)항(나)호 및 다호·(9)항 및 (12)항에 기재한 소방대상물로서 수용인원이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제 2항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에는 비상경보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 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가 제27조 또는 이조 제 4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한하여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다음에 기재한 소방대상물(제 3항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에는 비상벨·자동식사이렌 또는 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 설비가 제27조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유효범위 안의 부분에 한하여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별표 1의 (5)항 (가)호·(6)항(가)호 및 (9)항에 기재한 소방대상물로서 수용인원이 20인 이상의 것.
2. 별표 1의 (1)항내지 (17)항에 기재한 소방대상물(제 1호에 기재한 것은 제외한다)로서 수용인원이 50인 이상의 것 또는 지층이나 두층층의 수용인원이 20인 이상의 것.

③다음에 기재한 소방대상물에는 방송설비 및 비상벨이나, 방송설비 및 자동식 사이렌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지층의 층수가 3층이상의 것.
2. 제 1호에 규정된 소방대상물 이외에 별표 1의 (5)항(가)호 및 (6)항에 기재한 소방대상물로서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의 것 또는 별표 1의 (1)항 내지 (4)항·(5)항(나)호·(7)항 및 (8)항에 기재한 소방대상물로서 수용인원이 800인 이상의 것.

④제 1항 내지 제 3항에 규정한 비상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 설비의 설치·유지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비상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설비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전 구역에 화재발생을 유효·신속하게 통보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비상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설비의 기동장치는 여러사람의 눈에 잘 보이고 화재의 경우 신속히 조작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비상경보설비에는 비상전원을 부설하여야 한다.

⑤제 3항 각호에 기재한 소방대상물중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방송설비가 제27조 또는 이조 제 4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한하여 비상벨 또는 자동식 사이렌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관 피난설비에 관한 기준

제31조 (피난기구에 관한 기준) ①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소방대상물의 층(건축법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층 및 11층 이상의 층을 제외한다)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6)항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의 2층 이상의 층 또는 지층으로서 수용인원이 20인 이상의 것. 다만, 그 하층에 동표의 (1)항 내지 (4)항·(9)항·(12)항(가)호·(13)항(가)호·(14)항 또는 (15)항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수용인원이 10인 이상의 것으로 한다.
2. 별표 1의 (5)항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의 2층 이상의 층 또는 지층으로서 수용인원이 30인이상의 것. 다만, 그 하층에 동표의 (1)항 내지 (4)항·(9)항·(12)항(가)호·(13)항(가)호·(14)항 또는 (15)항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수용인원이 10인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별표 1의 (1)항 내지 (4)항 및 (7)항 내지 (11)항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의 2층 이상의 층(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2층을 제외한다) 또는 지층으로서 수용인원이 50인 이상의 것.
4. 별표 1의 (12)항 및 (15)항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의 3층이상의 층 또는 지층으로

서 수용인원이 무창층 또는 지층에 있어서는 100인 이상 기타의 층에 있어서는 150인 이상의 것.

②제 1항에 규정한 피난기구의 설치·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제 1항 각호에 계기한 층에는 다음 표에 의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구분에 따라 각 층에 적용한 피난기구를 설치하되, 그 개수는 제 1항제 1호 및 제 2호에 계기한 층에 있어서는 수용인원이 100인 이하의 경우에는 1개, 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을 초과할 때마다 1개씩 가산하여 설치하고, 제 1항제 3호에 계기한 층에 있어서는 수용인원이 200인 이하의 경우에는 1개, 그 이상인 경우에는 200인을 초과할 때마다 1개씩 가산하여 설치하며, 제 1항제 4호에 계기한 층에 있어서는 수용인원이 300인 이하의 경우에는 1개, 그 이상인 경우에는 300인을 초과할 때마다 1개씩 가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상황에 따라 피난장치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설치개수를 감소하거나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방대상물 층	제 1항제 1호의 소방대상물	제 1항제 2호 및 제 3호의 소방대상물	제 1항제 4호의 소방대상물
지 층	피난사다리, 피난용타랩	피난사다리, 피난용타랩	피난사다리, 피난용타랩
2 층	미끄럼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용타랩	미끄럼대, 미끄럼통, 피난로 프, 피난사다리, 완강기, 피 난교, 피난용타랩	
3 층	미끄럼대,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 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용 타랩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 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용 타랩
4층 및 5층	구조대, 피난교, 완강기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6층이상의층	구조대, 피난교, 완강기	구조대, 피난교, 완강기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2. 피난기구는 피난하기 쉽게 계단, 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설치하되, 안전한 구조로 된 개구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피난기구는 제 2호의 개구부에 고정 상실하거나 필요할 때마다 신속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야 한다.

제32조 (유도등 및 유도표지에 관한 기준) ① 다음 각호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이 용이하다고 인정되는 곳으로서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 1의 (1)항 내지 (4)항·(5)항(가)호·

(6)항 및 (9)항에 계기한 소방대상물 또는 동표의 (5)항(나)호·(7)항·(8)항 및 (10)항 내지 (15)항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의 지층·무창층 또는 11층 이상의 부분에는 피난구 유도등 및 통로유도등.

2. 별표 1의 (1)항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에는 객석유도등.

3. 별표 1의 (1)항 내지 (15)항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에는 유도표지.

②제 1항에 규정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라는 뜻을 표시한 녹색의 등으로 피난구 상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통로유도등의 복도·계단·통로 기타 피난 설비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되, 당해장소의 조명도가 피난상 유효하도록 되어야 한다.

3. 객석유도등은 내부부탕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석의 조명도가 0.2룩스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유도등에는 비상전원을 부설하여야 한다.

5. 유도표지는 피난의 방향을 지시하는 표시를 하고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 1항제 3호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에 피난의 방향을 명시한 통로유도등을 제 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설치한 때에는 당해 통로유도등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유도 표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5 관 소화용수설비에 관한 기준

제33조 (소화용수설비에 관한 기준) ①다음 각호에 계기한 건축물에는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별표 1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중 그 바닥면적이 20,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그 바닥면적(지층을 제외한 층수가 1인 경우에는 1층의 바닥면적을, 지층을 제외한 층수가 2 이상인 경우에는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내화건축물에 있어서는 15,000평방미터 이상 준내화건축물에 있어서는 10,000평방미터 이상, 기타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5,000평방미터 이상의 것.

2. 별표 1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중 그 높이가 31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지층

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있어서 같다) 이 25,000평방미터 이상의 것.

②동일 대지안에 별표 1에 계기한 건축물인 소방대상물(높이 31미터이상의 것으로서 그 연면적이 25,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제외한다) 이 2 이상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외벽상호간의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하, 2층에 있어서는 5미터 이하의 것으로서, 그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내화건축물에 있어서는 15,000평방미터로, 준내화건축물에 있어서는 10,000평방미터로, 기타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5,000평방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때에는 이를 1개이 건축물로 보고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 1항에 규정한 소화용수설비의 설치·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소화용수설비는 그 유효수량(지하에 설치된 소화용수설비에 있어서는 그 지면으로부터 깊이 4.5미터 이내의 부분의 수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있어서 같다)의 합계가 제 1항제 1호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그 바닥면적을 제 1항제 2호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그 연면적을 다음의 구분에 따르는 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1미만의 끝수는 받아 올림한다)에 20입방미터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유수를 당해 소화용수로 이용할 때에는 매분 0.8입방미터의 유량을 20입방미터의 수량으로 환산한다.

소 방 대 상 물 의 구 분		면 적
제 1 항 제 1 호에 계기한 소방대상물	내화 건축물	7,500 평방미터
	준내화 건축물	5,000 평방미터
	기타의 건축물	2,500 평방미터
제 1 항 2 호에 계기한 소방대상물		12,500 평방미터

2. 소화용수설비는 건축물의 각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용수설비까지의 수평거리가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1개의 소화용수설비의 유효수량은 20입방미터 이상(유수의 경우에는 매분 0.8입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소화용수설비의 흡판투입부분의 수심은 당

해 소화용수의 전부를 유효하게 흡수할 수 있는 깊이로 하여야 한다.

4. 소화용수설비는 2미터 이내의 지점까지 소방펌프자동차가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소화수조에는 적당한 크기의 흡관투입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관 기타소화활동상필요한설비에관한기준

제34조 (배연설비에 관한 기준) ①다음 각호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의 부분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1)항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의 두대부로서 바닥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의 것.

2. 별표 1의 (2)항·(4)항·(10)항 및 (13)항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의 지층 또는 무장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평방미터이상의 것.

②제1항에 규정한 배연설비의 설치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배연설비는 제1항 각호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의 부분의 용도·구조 또는 규모에 따라 화재가 발생한 때에 생기는 연기를 유효하게 배제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설비에는 수동기동장치 또는 화재로 인하여 온도가 급격히 상승한 경우에 동작되는 자동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연설비의 등도는 불연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4. 배연설비에는 비상전원을 부설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의 부분에 배연상 유효한 창 기타의 개구부가 있을 때에는 내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 (연결송수관에 관한 기준) ①다음 각호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에는 연결송수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별표 1에 계기한 건축물인 소방대상물로서 지층을 제외한 7층 이상의 것.

2. 별표 1에 계기한 건축물인 소방대상물로서 지층을 제외한 5층 이상의 것으로서 연면적이 6,000평방미터 이상의 것.

3. 별표 1의 (18)항에 계기한 소방대상물.

②제1항에 규정한 연결송수관의 설치·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방수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계기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3층 이상의 각층의 계단실·비상용 에베레타의 승강로비 또는 그 부분에 설치하되 그 층의 각부분으로부터 1개의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에 계기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주관의 내경은 100미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송수구는 쌍구형으로 하고,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지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연결송수관에 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당해건축물의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하여야 한다.

나.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가압송수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방수용기구를 넣어 둘 함을 방수구에 부설하여야 한다.

제36조 (연결살수설비에 관한 기준) ①별표 1에 계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지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700평방미터 이상의 것에는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연결살수설비의 설치·유지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살수헤드는 제1항의 소방대상물의 지층의 부분층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반자 또는 반자속에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송수구는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소방대상물에 송수구를 부설한 스프링크러설비를 제18조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한하여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 (비상콘센트설비에 관한 기준) ①별표 1

에 계기한 소방대상물로서 지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의 것에는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비상콘센트는 건축물의 11층 이상의 각층의 계단실, 비상용엘레베이터의 승강로비 또는 그 부근에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비상콘센트까지의 수평 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비상콘센트설비는 3상교류 200볼트로서 30암페어 이상의 전기 또는 단상교류 100볼트로서 15암페어 이상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비상콘센트설비에는 비상전원을 부설하여야 한다.

제3장 소방용기계기구등의제조 및 검정등

제38조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제조업종 지정)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제조업종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용기계기구등을 제조하는 업종으로 한다.

1. 소화기구.
2. 소화약제·방화액·방화도료.
3. 동력소방펌프.
4. 소방용흡수관·소방용호오스 및 결합금속구.
5. 피난기구.
6. 스프링크라헷드.
7. 자동화재탐지기.
8. 전기화재경보기.
9. 자동화재속보기.
10. 가스화재탐지기.

②내무부장관이 제1항에 규정된 제조업종의 허가를 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9조 (소방용기계기구등의 검정범위)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아야할 소방용기계기구등은 다음과 같다.

1. 각종소화기.
2. 소화약제·방화액·방화도료.
3. 동력소방펌프.
4. 소방용호오스 및 결합금속구.
5. 소방용흡수관.
6. 자동화재탐지기(발신기·중계기·수신기·감

지기).

7. 전기화재경보기.
8. 자동화재속보기.
9. 가스화재탐지기.
10. 스프링크라헷드.
11. 금속제피난사다리.
12. 완강기.
13. 구조대.

제4장 소방설비사

제1절 소방설비사가아니면할수없는소방시설의공사및정비

제40조 (소방설비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공사 또는 정비)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소방시설의 공사종류와 정비의 대상은 다음에 계기하는 소방용 설비의 설치공사와 정비로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제8호 및 제14호에 계기한 소방용 설비에 있어서는 전원·수원 및 배관의 부분을 제4호 내지 제7호·제9호 및 제10호에 계기한 소방용설비에 있어서는 전원의 부분을 제외한다.

1. 육내소화전설비.
2. 스프링크라설비.
3. 물분무소화설비.
4. 포말소화설비.
5. 불연가스소화설비.
6. 증발성액체소화설비.
7. 분말소화설비.
8. 옥외소화전설비.
9. 자동화재탐지설비.
10. 소방기관에 통보하는 화재속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11. 금속제피난사다리(교정삭에 한 한다).
12. 구조대.
13. 완강기.
14. 연결살수설비.
15. 소화기(정비의 경우에 한 한다).
16. 전기화재경보기(정비의 경우에 한 한다).

제2절 면 허

제41조 (면허시험위원회)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설비사면허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감중소방설비사면허시험위원회(이하 "감중면허시험위원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도에 을중소방설비사면허시험

위원회(이하 “울중면허시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 1항의 갑중면허시험위원회와 울중면허시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갑중면허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은 내무부차관이, 부위원장은 내무부 치안국장이 되고, 울중면허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부위원장은 소방본부장(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한 함다) 또는 경찰국장이 된다.

④갑중면허시험위원회의 위원은 내무부차관이, 울중면허시험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장에서 “도지사”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계공학·전기공학·공업화학 또는 토목·건축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소방용 기계기구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제42조 (위원에 대한 수당) 갑중면허시험위원회 또는 울중면허시험위원회의 위원중 내무부 또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에 소속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제43조 (면허시험) ①소방설비사면허시험은 소방시설의 설치·유지와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대하여 행한다.

②소방설비사면허시험의 과목·절차·기타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③법 제35조제 5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설비사면허의 절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누구든지 그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갑중 소방설비사면허시험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만이 응시할 수 있다.

1. 초급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기계·전기·공업화학·토목 또는 건축에 관한 과정을 이수한 자.
2. 울중설비사면허를 받은 후 3년이상 소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내무부령으로 제 1호 또는 제 2호에

제기한 자와 동등이상의 지식과 기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44조 (면허증의 교부) ①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소방설비사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설비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소방설비사면허증의 교부를 받은 자에게 그 면허증의 종류 또는 면허업무의 종류와 상이한 면허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신면허증에 구면허사항을 기재하고 교환 교부하여야 한다.

제45조 (면허증의 기재사항) 소방설비사면허증에는 다음에 기재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면허증의 번호 및 교부년월일.
2. 성명 및 생년월일.
3. 본적 및 주소.
4. 면허증의 종류 및 공사 또는 정비를 행할 수 있는 소방시설의 종류.
5.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6조 (면허증의 갱신) 소방설비사면허증을 교부받은 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제43조제 1호 및 제 4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갑중면허증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에게, 울중면허증의 경우에는 거주지나 근무지를 관할 하는 도지사에게 그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7조 (면허증의 재교부) ①소방설비사면허증을 교부받은 자가 면허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허증을 교부한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소방설비사면허증을 분실하여 그 재교부를 받은 자가 분실한 면허증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10일 이내에 면허증을 재교부한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 (수수료) ①법 제35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설비사면허시험 및 면허증의 교부·재교부 또는 갱신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수수료의 구분	종 류	수수료의 액
소방설비사면허시험수수료	감중설비사시험	2,000
	울중설비사시험	1,500
면허증교부수수료		1,000
면허증의 재교부 또는 갱신수수료		1,000

②제 1항의 감중소방설비사에 관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울중소방설비사에 관한 수수료는 당해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화재경제지구등

제49조 (화재경제지구의 지정) ①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49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경제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장지대.
2. 공장·창고 등이 밀집한 지대.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대.
4. 소방수리·소방시설 또는 소방통로가 미흡한 지대.
5. 위험물의 저장지대.

②시장 또는 군수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경제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시장과 부산시장의 경우에는 내부부장관, 기타의 시장과 군수의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0조 (화재경제지구안의 소방검사 및 소방훈련) ①법 제49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는 내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2회이상 행하여야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9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경제지구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화재통보훈련.
2. 소화훈련.
3. 피난훈련.
4. 구조훈련.

③제 2항의 소방훈련은 화재경제지구별로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1조 (소화용원요청)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화용원을 요청할 때에는 그 인부·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사

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 6 장 위험물의취급

제 1 절 통 칙

제52조 (위험물의 지정수량) 법 제14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별표 2에 기재한 수량으로 한다.

제53조 (위험물의 구분) ①제11조제 1항에 규정한 위험물은 감중위험물 및 울중위험물로 구분한다.

②감중위험물은 다음에 기재한 것으로 한다.

1. 별표 2의 제 1류의 위험물중 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 및 과산화물.
2. 별표 2의 제 2류의 위험물중 황린.
3. 별표 2의 제 3류의 위험물중 금속칼륨 및 금속나트륨.
4. 별표 2의 제 4류의 위험물중 특수인화물·제 1 석유류·석산에스테르류·의산에틸류·에틸에테르류·알코올류·피리딘·클로로벤젠 및 제 2 석유류.
5. 별표 2의 제 5류의 위험물.
6. 별표 2의 제 6류의 위험물중 발연질산·발연황산·크로로수론산·무수황산.

③울중위험물은 감중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험물로 한다.

제54조 (저장소의 구분) 법 제14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창고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이하 "육내저장소"라 한다)
2. 옥외에 있는 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이하 "육외탱크저장소"라 한다). 다만, 제 4호 내지 제 6호에 기재하는 것을 제외한다.
3. 옥내에 있는 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이하 "육내탱크저장소"라 한다). 다만, 제 4호 내지 제 6호에 기재하는 것을 제외한다.
4.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이하 "지하탱크저장소"라 한다). 다만, 제 5호에 기재하는 것을 제외한다.
5. 간이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이하 "간이탱크저장소"라 한다)
6. 차량(피견인차를 포함한다)에 고정시킨 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

소(이하 “이동탱크저장소”라 한다)

7. 육외의 장소에서 별표 2의 제4류의 위험물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등식물유류 또는 동표의 제6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이하 “육외 저장소”라 한다)

8.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하여 선박안에 시설한 탱크저장소(이하 “선박탱크 저장소”라 한다)

제55조 (취급소의 구분)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취급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자동차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취급소(이하 “주유취급소”라 한다).
2. 점포에서 용기에 넣은채 그대로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5배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취급소(이하 “판매취급소”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계기한 것외의 위험물 취급소(이하 “일반취급소”라 한다).

제56조 (탱크용적의 산정방법) ①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내용적 및 공간용적의 계산방법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탱크의 용량은 당해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 용적량으로 한다.

제57조 (2품목이상의 위험물의 환산) 지정수량에 미달하는 위험물을 2품목이상 동일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각 품목별로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수량을 그 품목별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이 될 때에는 이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저장 또는 취급으로 본다.

제2절 제조소등의설치허가등

제58조 (설치허가의 신청)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허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및 지방서와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9조 (변경허가의 신청)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변경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용도폐지신고서를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 (완공검사의 신청)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받고자하는 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완공검사신청서를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조소등의 설치자는 제1항의 완공검사신청에 앞서 제조소등의 탱크부분의 배관 기타 부속설비를 장치하기 전에 허가청의 중수시험 또는 수압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허가청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허가청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결과 당해 제조소등이 그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합격증을 교부하고,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제61조 (제조소등의 양수신고)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양수인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양수신고서에 허가증 및 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허가청은 그 양수시설을 확인하고 허가증을 정정 교부하여야 한다.

제3절 제조소등의시설기준

제1관 제조소의위치·구조 및 설비기준

제62조 (제조소의 시설기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소화 및 경보설비를 제외한다. 이하 제1관 내지 제3관에서 같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조소(생석회 및 별표 2의 제6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의 위치는 그 인근의 다음에 계기한 건축물등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이에 상응하는 공작물의 외측을 포함한다) 까지의 사이에

각각 다음에 정한 구분별 거리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가)목 내지 (다)목에 계기한 건축물등에 있어서는 불연재료로 만든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함으로써 안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청이 인정하는 거리를 당해 기준거리로 할 수 있다.

가. (나)목 내지 (라)목에 계기한 것외의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로서 주거의 용에 공하는 것 (제조소가 있는 부지와 동일부지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미터 이상.

나. 학교·병원·극장 기타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내부부령으로 정한 것의 경우에는 70미터 이상.

다.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문화재·중요민속자료·사적 또는 중요기념물로 지정된 건조물의 경우에는 70미터 이상.

라. 고압가스 기타 재해의 발생우려가 있는 물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내부부령으로 정한 거리.

마. 상용전압기 7,000볼트이상 35,000볼트이하의 특별고압 가공전선의 경우에는 수평거리 3미터이상.

바. 상용전압 35,000볼트를 초과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의 경우에는 수평거리 5미터 이상.

2.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또는 기타의 시설(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계기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험물의 취급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10배미만의 수량	3미터 이상
지정수량의 10배이상의 수량	5미터 이상

3. 제조소에는 내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기쉬운 곳에 제조소라는 뜻을 표시한 표지 및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지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석가래 및 계단은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의 제 6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위험물이 침윤될 위험이 있는 부분을 아스팔트 기타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할 수 있다.

6.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지붕은 석면판·금속판 기타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다만, 별표 2의 제 2류의 위험물(유황분·금속분 A·금속분 B를 제외한다)·생석회 또는 별표 2의 제 6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는 지붕을 가벼운 불연재료가 아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7.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망이든 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액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적당하게 경사를 지게하고 그 최저부에 저류설비를 하여야 한다.

10.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조명·환기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11.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체류할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12. 옥외에서 액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그 바로 아래의 지면의 주변에 높이 0.15미터이상의 턱을 설치하고, 그 바닥을 콘크리트 기타 불침윤재료로 경사지게 덮고, 그 최저부에 저류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별표 2의 제 4류의 위험물(물에 용해하는 성질의 것을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에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당해 저류설비와 유분리시설을 하여야 한다.

13.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기구 기타 설비는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또는 비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설비에 위험물의 누출등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부대설비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설비 또는 위험물의 취급에 따라 온도변화가 생기는 설비에는 온도측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5. 위험물을 가열 또는 전조하는 설비는 직접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설비가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또는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부대설비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그 취급에 따라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압력계 및 내부부형이 정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7. 전기설비는 전기공작물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8.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그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19. 저장수량의 10배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생석회 또는 별표 2의 제 6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제외한다)에는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의 위치·구조 및 설비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가. 옥외에 설치하는 탱크의 구조 및 설비는 제64조제 4호 내지 제12호·제16호·제17호 및 제20호에 기재한 옥외탱크 저장소의 구조 및 설비의 예에 의한다.

나. 옥내에 설치하는 탱크의 구조 및 설비는 제65조제 1항제 5호 내지 제12호 및 제14호에 기재한 옥내탱크저장소의 구조 및 설비의 예에 의한다.

다. 지하에 설치하는 탱크의 위치·구조 및 설비는 제66조(제 5호를 제외한다)에 기재한 지하탱크 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예에 의한다.

21.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은 금속관·도판등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2. 전동기 및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펌프 발브나 손잡이 등은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3.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을 취급하는 설비는 온·수온·등·마그네슘 또는 온·수온을 성분으로하는 합금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24.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방지를 위하여 불연성가스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 2 관 저장소의 위치·구조및설비기준

제63조 (옥내저장소의 기준) ①별 제1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저장소중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옥내저장소의 위치는 제62조제 1호에 기재한 제조소의 위치의 예에 의한다. 다만, 지정수량의 20배미만의 별표 2의 제 4 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를 저장하거나 취급할 경우와 생석회 또는 별표 2의 제 6류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 있어서 "저장창고"라 한다)의 주위에는 그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기재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수량의 20배 미만의 별표 2의 제 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를 저장하거나 취급할 경우와 생석회 또는 별표 2의 제 6류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할 경우의 공지의 너비와 2이상의 옥내저장소를 인접하여 설치할 경우의 그 저장소 상호간의 거리는 내부부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축할 수 있다.

위험물의 저장 최대수량	공지의 내비	
	당해 건물 및 바닥의 구조	화면에 기재된 바의 경우
지정수량의 5배 미만		0.5미터 이상
지정수량의 5배 이상 10배 미만	1미터 이상	1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20배 미만	2 "	" "
지정수량의 20배 이상 50배 미만	" "	" "
지정수량의 50배 이상 200배 미만	5 "	1.5 "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	10 "	15 "

3. 옥내저장소에는 내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기쉬운 곳에 옥내 저장소가 있는 뜻을 표시한 표지 및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기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저장창고는 단층 건물을 전용하고, 그 바닥을 지면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을중 위험물 또는 별표 2의 제 6류의 각종 위험물의 저장창고는 단층건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1개의 저장창고의 건축면적은 150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50평방미터 이상마다 불연재료를 사용한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하여 동류의 위험물만을 저장하거나 취급할 경우 또는 을중 위험물만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저장창고의 건축면적을 1,000평방미터까지 확장할 수 있다.
6. 저장창고의 벽·기둥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보와 석가래는 불연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다만, 을중 위험물 또는 지정수량의 10배미만의 갑종 위험물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연조의 우려가 없는 외벽 기둥 및 바닥은 불연재료로 만들 수 있고, 별표 2의 제 6류의 위험물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위험물로 인하여 침윤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아스팔트 기타 부식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할 수 있다.
7. 저장창고의 지붕은 석면판·금속판 기타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하며, 반자를 설

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별표 2의 제 2류 위험물(유황분·금속분 A 및 금속분 B를 제외한다)·생석회 또는 등표의 제 6류의 위험물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으며, 셀룰로이드류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당해 저장창고 안의 온도를 적당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난연성의 재료 또는 불연재료로 만든 반자를 설치할 수 있다.

8. 저장창고의 창 및 출입구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중방화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9. 저장창고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망이든 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별표 2중 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금속분 A·금속분 B·제 3류 위험물·제 4류의 갑종 위험물 또는 제 6류의 위험물의 저장창고의 바닥은 바닥면에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1. 액체의 위험물 저장창고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적당하게 경사를 지게하고 그 최저부에 저류설비를 하여야 한다.
12. 저장창고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채광 및 환기설비를 하고, 별표 2의 제 4류의 갑종 위험물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내부에 체류한 증기를 지붕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13. 전기설비는 제 62조 제 17호에 규정된 제조소의 전기설비의 예에 의한다.
14.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의 저장창고(생석회 및 별표 2의 제 6류의 위험물의 저장창고를 제외한다)에는 유효한 피뢰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위의 상황에 의하여 안정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셀룰로이드류의 저장창고는 통풍장치·냉방 장치등의 설비를 하여 당해 저장창고안의 온도가 셀룰로이드류의 발화점에 달하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지정수량의 20배미만의 위험물의 옥내 저장소 또는 알카리금속이외의 과산화물중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옥내 저장소에 관하여는 제 1항에 제기한 기준의 특례를 내부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64조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준) 법제1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소중 옥외탱크 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는 제62조제 1호에 규정된 제조소의 위치의 밖에 의한다.
2.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그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계기하는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생석회 또는 별표 2의 제 6류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할 경우의 공지의 너비와 2개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를 인접하여 설치할 경우에 그 저장소 상호간의 거리는 내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축할 수 있다.

위험물의 저장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저장수량의 500배 미만	3미터 이상
저장수량의 500배 이상 1,000배 미만	5미터 이상
저장수량의 1,000배 이상 2,000배 미만	9미터 이상
저장수량의 2,000배 이상 3,000배 미만	12미터 이상
저장수량의 3,000배 이상 4,000배 미만	15미터 이상
저장수량의 4,000배 이상	당해 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직경(원형의 것은 가로로 길이) 또는 높이의 수직중 가장 큰 것과 대등한 거리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5미터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3. 옥외탱크저장소에는 내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기 쉬운 곳에 “옥외탱크저장소”라는 뜻을 표시한 표지 및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

(이하 “옥외저장탱크”라 한다)는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되어야 하되,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사용압력과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압력탱크 이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충수시험(물 이외의 적당한 액체를 충전하는 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고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옥외저장탱크는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등 및 풍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지주(별표 2의 제 6류의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지주를 제외한다)는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콘크리트조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6. 옥외저장탱크는 위험물의 폭발등으로 탱크 안의 압력이 이상상승할 경우에는 내부의 가스 또는 증기를 상부로 방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7. 옥외저장탱크의 내면에는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8. 옥외저장탱크중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안전장치를, 압력탱크이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통기관을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9. 액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에는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액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급유호오스 또는 급유관과 결합할 수 있고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에는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기 쉬운 곳에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라는 뜻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펌프 및 이에 부

속되는 전동기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기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펌프설비의 주위에는 너비 3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한 경우 기타 내부부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펌프설비와 옥외저장탱크와의 사이는 당해 옥외저장탱크주위의 공지너비의 3분의 1 이상의 거리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 펌프 및 이에 부속하는 전동기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기타 시설(이하 “펌프실”이라 한다)의 벽·기둥·바닥 및 보·식가래는 불연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다만, 별표 2의 제 6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위험물에 의하여 침윤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아스팔트 기타 부식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할 수 있다.

라. 펌프실의 지붕은 석면판·금속판 기타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다만, 별표 2의 제 6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마. 펌프실의 창 및 출입구에는 감동방화문 또는 울충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펌프설비에는 내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기 쉬운 곳에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라는 뜻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옥외저장탱크의 개폐발보는 늦최로 만들고 위험물이 세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옥외저장탱크의 배수관은 탱크의 측면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저면판에 설치할 수 있다.

14. 옥외저장탱크의 배관은 금속관·도관등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15. 액체의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옥외저장탱크의 배관은 진동등에 의하여 당해 배관과 탱크와의 결합부분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6.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의 옥외저장탱크의 설비는 은·수은·동·마그네슘 또는 은·수은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제작하

여서는 아니된다.

17.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의 옥외저장탱크에는 냉각장치 또는 저온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보냉장치”라 한다) 및 연소성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불연성 가스를 봉입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8. 전기설비는 제62조제17호에 규정된 제조소의 전기설비의 예에 의한다.

19. 지정수량의 10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생석회 또는 별표 2의 제 6류 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에는 유효한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위의 상황에 의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별표 2의 제 4류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는 위험물이 새는 경우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유제를 내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1. 카아바이트·인화석회 또는 생석회의 옥외저장탱크에는 방수성의 불연재료로 만든 피복설비를 하여야 한다.

22. 이황화탄소의 옥외저장탱크는 두께 0.2미터 이상의 벽과 바닥이 세지 아니하는 절근콘크리트의 수조에 넣어 물속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5조 (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저장소중 옥내탱크저장소(제2항에 정한 것을 제외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탱크(이하 “옥내저장탱크”라 한다)는 단층건축물의 탱크전용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벽과의 사이 또는 1개의 탱크 전용실내에 옥내저장탱크를 2이상 설치할 경우의 탱크 상호간의 사이에는 0.5미터 이상의 간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3. 옥내탱크저장소에는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기 쉬운 곳에 “옥내탱크저장소”라는 뜻을 표시한 표지 및 기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1개의 옥내탱크저장소에 저장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의 용량과 옥내저장탱크

- 의 용량은 지정수량의 40배이상으로 한다.
5. 옥내저장탱크의 구조는 제64조제4호에 규정된 옥외저장탱크의 구조의 예에 의한다.
 6. 옥내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7. 옥내저장탱크중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안전장치를 압력탱크 이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통기관을 내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8. 액체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에는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9. 액체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의 주입구는 제64조제10호에 규정된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의 예에 의한다.
 10. 옥내저장탱크의 개폐발고는 누리로 만들고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옥내저장탱크의 배수관은 제64조제13호에 규정된 옥외저장탱크의 배수관의 예에 의한다.
 12. 옥내저장탱크의 배관은 금속관·도관등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13. 액체의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옥내저장탱크의 배관은 제64조제15호에 규정된 옥외저장탱크의 배관의 예에 의한다.
 14.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의 옥내저장탱크의 설비 및 장치는 제64조제16호 및 제17호에 규정된 옥외저장탱크의 설비 및 장치의 예에 의한다.
 15. 탱크전용실은 벽·기둥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보와 석가래를 불연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다만, 을중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연소의 우려가 없는 외벽·기둥 및 바닥을 불연재료로 만들 수 있고, 별표2의 제6류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위험물에 의하여 침윤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아스팔트 기타 부식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할 수 있다.
 16. 탱크전용실은 지붕을 불연재료로 만들고 반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7. 탱크전용실의 창 및 출입구에는 감증방화문 또는 을중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18. 탱크전용실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망이든 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19. 액체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적당하게 경사를 지게하고 그 최저부에 저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0. 탱크전용실의 출입구의 턱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1. 탱크전용실의 채광설비·환기설비 및 증기를 방출하는 설비는 제63조제1항제12호에 규정된 옥내저장소의 채광·환기 및 증기방출설비의 예에 의한다.
 22. 탱크전용실의 전기설비는 제62조제17호에 규정된 제조소의 전기설비의 예에 의한다.
- ②별표2의 제2류의 위험물(유황분·금속분A 및 금속분B를 제외한다)과 생석회 및 인과점이 선계40도 이상의 별표2의 제4류의 위험물 또는 동표의 제6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탱크저장소(탱크전용실을 단층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 내지 제13호·제18호·제19호·제21호 및 제22호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액체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의 주입구의 부분에는 그 탱크에 들어 있는 위험물의 양을 알아볼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탱크전용실은 벽·기둥·바닥과 보 및 석가래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2의 제6류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위험물에 의하여 침윤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아스팔트 기타 부식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할 수 있다.
 4. 탱크전용실은 그 건축물에 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붕을 불연재료로 만들고 반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5. 탱크 전용실에는 창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생석회 또는 별표2의 제6류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 전용실에 있어서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이 있는 창을 설치할 수 있다.

6. 탱크전용실의 출입구에는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석회 또는 별표 2의 제 6류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할 수 있다.

7. 탱크전용실의 환기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석회 또는 별표 2의 제 6류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액체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은 그 옥내저장탱크에서 새어나온 위험물이 탱크전용실 이외의 부분에 유출되지 못하게 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66조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1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소중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하탱크(이하 “지하저장탱크”라 한다)는 지하에 설치된 탱크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의 제 4류의 위험물의 지하저장탱크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당해 탱크를 탱크실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탱크가 지하철 또는 지하 터널로부터 수평거리 10미터 이내의 장소 또는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금지된 장소에 설치되지 아니할 것.

나. 탱크의 외면이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되어 있을 것.

다. 탱크가 그 수평부령의 세로 및 가로로부터 각각 0.6미터 이상 크게 반돌아지고 무게 0.3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의 무게로 덮여져 있을 것.

라. 무게에 가해지는 중량이 직접 그 탱크에 가해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될 것.

마. 탱크가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되어 있을 것.

2. 지하저장탱크와 탱크실의 내측과의 사이는 0.2미터 이상의 간격을 보유하고, 그 탱크의 주변에는 진동된 모래로 채워야 한다.

3. 지하저장탱크는 그 윗부분이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깊이가 되도록 매설하여야

한다.

4. 지하저장탱크를 2개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간에 1미터 이상의 간격을 보유하고야 한다. 다만, 그 2개 이상의 지하저장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지정수량의 100배 미만일 때에는 그 상호간의 간격을 0.5미터까지 감할 수 있다.

5. 지하탱크저장소에는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기 쉬운 곳에 “지하탱크저장소”라는 뜻을 표시한 표지 및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지하저장탱크는 두께 3.2미터미터 이상의 강철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하고,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압력탱크를 제외한 탱크에 있어서는 매평방센티미터에 대하여 0.7킬로그램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행하는 수압시험에서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지하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8. 지하저장탱크중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안전장치를, 압력탱크를 제외한 탱크에 있어서는 통기관을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9. 액체위험물의 지하저장탱크에는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장치 또는 계량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액체위험물의 지하저장탱크의 주입구는 옥외에 설치하되, 제64조제10호에 규정된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의 예에 의한다.

11. 지하저장탱크의 배관은 당해 탱크의 윗부분에 장치하여야 한다.

12. 지하저장탱크에 장치된 배관중 지하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 상부의 지면에 가하여지는 중량이 그 배관부분에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고, 연결부(통기관의 연결부를 제외한다)에서 위험물이 새는 것을 절단할 수 있도록 그 연결부분을 무게가 있는 콘크리트조의 실에 넣어야 한다.

13. 지하저장탱크의 배관은 금속관·도관등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14. 지하저장탱크의 주위에는 탱크로부터 액체의 위험물이 새는 것을 검사하기 위한 관

을 4개소 이상 적당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5. 탱크실의 벽 및 바닥은 두께 0.3미터 이상의 콘크리트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가 있는 구조와 적당한 방수조치를 하여야 하며, 평평은 두께 0.3미터 이상의 방수조치를 한 철근콘크리트조로 하여야 한다.

제67조 (간이탱크 저장소의 기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소중 간이탱크 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간이탱크(이하 "간이저장탱크"라 한다)는 옥외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전용실안에 설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전용실의 구조가 제65조제1항제15호 및 제16호에 규정된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의 구조의 예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을 것.

나. 전용실의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을 것.

다. 전용실의 바닥이 위험물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적당히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최저부에 저류설비가 되어 있을 것.

라. 전용실의 채광·환기 및 증기방출의 설비가 제63조제1항제12호에 규정된 옥내저장소의 설비의 예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을 것.

2. 1개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저장탱크는 3개 이내로 하며, 동일품질의 위험물의 간이저장탱크를 2개이상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간이탱크저장소에는 내부부령이 전하는 바에 의하여 보기 쉬운 곳에 간이탱크저장소가 있는 뜻을 표시한 표지 및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간이저장탱크는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면 또는 가설대에 고정시키고,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그 탱크의 주위에 너비 1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하

며, 전용실안에 설치할 경우에는 그 탱크와 전용실의 벽과의 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간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5. 간이저장탱크의 용량은 600리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6. 간이저장탱크는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하고, 매평방센티미터에 대하여 0.7킬로그램의 압력으로 10분간 행하는 수압시험에서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간이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8. 간이저장탱크에는 내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9. 간이저장탱크에 주유설비를 할 경우에는 제71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의 예에 의한다.

제68조 (이동탱크 저장소의 기준)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소중 이동탱크 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이동탱크저장소는 방화상 안전한 옥외의 장소 또는 벽·바닥·보·석가래 및 지붕물 내화구조나 불연재료 한 건축물의 단층차고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이하 "이동저장탱크"라 한다)는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하고,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압력탱크를 제외한 탱크에 있어서는 매평방센티미터에 대하여 0.7킬로그램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행하는 수압시험에서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의 이동저장탱크는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하며, 불연성가스를 봉입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산화프로필렌의 이동저장탱크 및 보병장치가 있는 아세트알데히드의 이동저장탱크에 있어서는 매평방센티미터에 대하여 0.7킬로그램의 압력, 보병장치가 없는 아세트알데히드의 이동저장탱크에 있어서는 매평방센티미터에 대하여 1.3킬로그램의 압

력으로 10분간 행하는 수압시험에서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이동저장탱크의 용량은 20,000리터이하로 하고, 그 내부에 4,000리터마다 안전한 칸막이를 두께 3.2밀리미터이상의 강철판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를 운행하는 이동저장탱크의 용량은 34,000리터까지로 할 수 있다.
5. 제4호의 칸막이로 된 각 부분에는 망울 및 내부부형이 정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내부부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두께 1.6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으로 만든 방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이동저장탱크의 망울 및 주입구의 두께는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으로 만들어야 한다.
7. 망울·주입구·안전장치등(이하 이 조에서 "부속장치"라 한다) 이 탱크의 상부에 돌출되어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있어서는 내부부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부속장치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이동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9. 이동저장탱크의 하부에 배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배출구에 밀발브를 설치하고 비상시에 즉시 그 밀발브를 폐쇄할 수 있는 수동폐쇄장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화점이 섭씨 70도이상의 위험물의 이동저장탱크의 배출구 또는 직경이 40밀리미터 이하의 배출구에 설치하는 밀발브에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제9호의 수동폐쇄장치에는 내부부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테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밀발브를 설치하는 이동저장탱크에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12. 이동저장탱크의 배관의 선단부에는 개폐발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의 이동저장탱크의 설비는 제64조제16호에 규정된 옥외저장탱크의 설비의 예에 의한다.
14. 액체위험물의 이동저장탱크의 주유호오스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주입

구와 결합할 수 있는 금속구를 사용하되, 그 결합금속구(파산화수소 또는 별표2의 제6류 위험물의 이동저장탱크의 것을 제외한다)는 녹의 기타 파찰등에 의하여 불꽃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15. 휘발유·벤졸 기타 정전기에 의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액체위험물의 이동저장탱크중 계량봉으로 그 위험물의 양을 계량하는 것에 대하여는 계량시에 정전기에 의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16. 이동저장탱크에는 보기 쉬운 곳에 그 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품명 및 최대수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제10호의 테바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직근에 내부부형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알루미늄알킬 기타 내부부형으로 정하는 위험물의 이동탱크저장소에 관하여는 제1항에 계기한 기준을 초과하는 특례를 내부부형으로 정할 수 있다.

제69조 (옥외저장소의 기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저장소중 옥외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저장소의 위치는 제62조제1호에 규정된 제조소의 위치의 예에 의한다.
2. 옥외저장소는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철조망등을 설치하여 명확하게 그 장소를 구획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규정된 철조망등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계기하는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2의 제6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내부부형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지의 너비를 감할 수 있다.

위험물의 저장 최대수량	공지의너비
지정수량의 10배미만	3미터이상
지정수량의 10배이상 20배미만	6 "
지정수량의 20배이상 50배미만	10 "
지정수량의 50배이상 배미만	20 "
지정수량의 200배이	30 "

5. 옥외저장소에는 내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기 쉬운 곳에 “옥외저장소”라는 뜻을 표시한 표지 및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0조 (선박탱크저장소의 기준) 별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소중 선박탱크저장소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탱크의 두께는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하고 매평방센티미터에 대하여 0.7킬로그램의 압력으로 10분간 행하는 수압시험에서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탱크는 20,000리터마다 완전한 칸을 막고 각실마다 1개 이상의 방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의 제 4류의 위험물중 인화점이 섭씨 130도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60,000리터마다 완전한 칸을 막을 수 있다.
3. 탱크의 망홀설치 및 방청도장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예에 의한다.
4. 선창에 탱크를 장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위 및 상하에 0.5미터 이상의 공간을 두어야 한다.
5. 탱크에는 적당한 통기관을 설치하고 가는 눈의 동선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6. 선창내의 탱크를 장치하는 장소는 불연재로 만들거나 피복하는 등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7. 탱크를 장치한 선창은 기계실 기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구별하여 방화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8. 탱크를 장치한 선창내의 펌프실 기타 가스가 발생하는 장소에는 유효한 환기설비를 하고 가는 눈의 동선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9. 탱크를 장치한 선창내의 전기공작물은 제62조제17호에 규정된 제조소의 전기설비의 예에 의한다.
10. 탱크를 장치한 선창내에는 새어나온 유류를 배제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3관 취급소의 위치·구조및설비의 기준

제71조 (주유취급소의 기준) ①별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취급소중 옥외에 설치하는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유취급소에는 자동차등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이하 “고정주유설비”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그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기 위한 너비 15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공지의 지면은 주위의 지면보다 높게 하고 그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공지에는 새어나온 기름 기타의 액체가 그 공지외의 부분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 및 저유·유분리장치를 하여야 한다.
4. 주유취급소에는 내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기 쉬운 곳에 “주유취급소”라는 뜻을 표시한 표지 및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주유취급소에는 용량 12,000리터 이하의 전용탱크를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한 방화구역외의 구역에 있어서는 지상의 고정주유설비에 접결하는 용량 600리터 이하의 간이탱크를 그 취급하는 석유류의 각 품목별로 1개씩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6. 제5호의 전용탱크 또는 간이탱크를 설치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전용탱크의 위치·구조 및 설비는 제66조(제5호 및 제10호의 규정중 게시판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규정된 지하탱크저장소의 지하저장탱크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예에 의하고, 간이탱크의 구조 및 설비는 제67조(제1호 내지 제3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간이탱크저장소의 간이저장탱크의 구조 및 설비의 예에 의한다.
7. 고정주유설비는 유류의 셀 우려가 없고 또한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하고, 주유관의 길이는(선단의 개폐발브를 포함한다) 3미터 이하로 하고, 그 선단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8. 고정주유설비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4미터 이상, 부지경계선 및 건축물의 벽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간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주유취급소의 건축물의 개구부가 없는 벽으로부터의 간격은 1미터로 할수 있다.
9. 주유취급소에는 사무실 기타 취급소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석가래 및 지붕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로 하고,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사무실등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망이 든 유리로 하여야 한다.
12. 제10호의 건축물중 사무실 기타 화기를 사용하는 것에는 새어 나온 유류의 증기가 그 내부에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3. 주유취급소의 주위에는 자동차등이 출입하는 측면을 제외하고 높이 2미터 이상의 담이나 벽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로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유취급소의 근처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담 또는 벽을 방화상 안전한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14. 전기설비는 제62조제17호에 규정된 제조소의 전기설비의 예에 의한다.

②주유취급소를 건축물안에 설치할 경우의 그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제1항(제10호를 제외한다)에 규정한 것외에 다음에 의하여 한다.

1. 주유취급소는 단층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되, 당해 건축물중 주유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의 벽·기둥·바닥·보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건축물에 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로로 하여야 한다.

2. 당해 건축물중 주유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에는 그 2개 방면은 통풍을 위하여 벽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당해 건축물중 주유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에는 그 상층 및 하층으로 통하는 계단 및 통로 기타 유류의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구멍 또는 구멍이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주유취급소의 상호간의 거리는 1,000미터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내부부장관이 그 거리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거리는 자동차가 주행하는 직선로선 거리로 측정한다.

⑤비행장에서 항공기에 주유하기 위한 주유취급소 기타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주유취급소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기준에 대한 특례를 내부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72조 (판매취급소의 기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취급소중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판매취급소는 단층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판매취급소에는 내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기쉬운 곳에 "판매취급소"라는 뜻을 표시한 표지 및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분의 벽·보·반자는 내화구조로 하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곳과 다른 부분과의 사이에는 내화구조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분위에 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로로 하여야 한다.
5. 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분의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6. 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분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망이 든 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7. 판매취급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전기설비는 제62조제17호에 규정된 제조소의 전기설비의 예에 의한다.
8.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바닥면적은 8평방미터 이상 10평방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다. 바닥에는 적당한 경사를 두어 저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라. 출입구에는 자동폐쇄식 감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출입구에는 바닥으로부터 0.1미터 이상의 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내부에 채류한 증기를 지붕위로 방출하는 유효한 환기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73조 (일반취급소의 기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취급소중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제62조의 예에 의한다.

제4편 소화설비및경보설비의기준

제74조 (소화설비의 기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소등의 소화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조소·육내저장소·육외탱크저장소·육내탱크저장소·육외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중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천저하게 소화가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표 6에 계기한 제1종 내지 제5종의 소화설비중 당해 소방대상물의 구분에 의한 적응소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2. 제조소·육내저장소·육외탱크저장소·육내탱크저장소·육외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중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소화가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내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표 6에 계기한 제4종 및 제5종의 소화설비중 당해 소방대상물의 구분에 의한 적응소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계기한 것 외의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내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표 6에 계기한 제5종의 소화설비중 당해 소방대상물의 구분에 의한 적응소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75조 (경보설비의 기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제조소등이 갖추어야 할 경보설비는 지정수량의 10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로서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이를 설

치하되, 내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기타의 경보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4절 저장및취급의기준

제76조 (공통기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공통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수량이상 또는 품명 이외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합부로 화기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조소등에는 직원이외의 자가 합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항상 정비 및 청소에 노력하고 합부로 불필요한 가연물을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5. 위험물의 꺼꺼기등은 1일1회 이상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한 장소에서 폐기하거나 기타의 안전한 방법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6.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나 설비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를 하여야 한다.
7. 위험물은 온도계·습도계 기타의 계기로 감시하고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온도 또는 습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또는 비산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변질, 이들의 혼입등으로 당해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 위험물이 남아 있거나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설비·기계기구·용기등을 수리할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11.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할 경우에는 그 용기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적응한 것으로 하고, 파손·부식·틈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위험물이 수납된 용기를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합부로 전도·추락키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가연성의 액체·증기 또는 가스가 새거나

채취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절절시켜야 하고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용구·이물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4. 위험물을 보호액속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보호액에서 노출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7조 (유별공통기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중 위험물의 유별로 적용할 공통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별표2의 제1류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질과의 접근 또는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과열·충격·마찰등을 피하여야 하며,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2. 별표2의 제2류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하며, 금속분 A 및 금속분 B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3. 별표2의 제3류의 위험물은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4. 별표2의 제4류의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을 피하여야 하며, 증기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5. 별표2의 제5류의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의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 마찰등을 피하여야 한다.
6. 별표2의 제6류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질과의 접근을 피하여야 한다.

제78조 (저장의 기준)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에관한기준은 제76조 및 제77조에 규정한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한다.

1. 별표2에 제기한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이 2이상 있는 저장소에 있어서는 동일실)에 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험물을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경우에는 내

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기에 수납하고 품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되, 전축물의 내벽으로부터 0.5미터이상, 위험물의 품명별마다 0.5미터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동일 품명의 위험물이라도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위험물 또는 재해가 현저하게 증대할 위험이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할 때에는 지정 수량의 10배이하마다 구분하고, 상호간 0.3미터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지하저장탱크 또는 간이 저장탱크의 계량구는 계량할 때 이외에는 폐쇄하여야 한다.

5.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의 주된 밸브(액체의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하여 배관에 설치되어 있는 밸브중 탱크의 직근에 있는 것을 말한다)은 위험물을 이송할 때 이외에는 폐쇄하여야 한다.

6.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방유제가 있는 경우에는 평상시 그 배수구를 폐쇄하여 두고, 그 방유제의 내부에 채유하거나 채수한 것은 지체없이 배출하여야 한다.

7. 이동저장탱크 및 그 안전장치와 기타의 부속배관은 결합불량·변형 또는 주유호오스의 파손 등으로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탱크의 밑 밸브는 사용시 이외에는 완전히 폐쇄하여야 한다.

8. 피견인자동차에 고정된 이동 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할 때에는 그 피견인자동차에 견인자동차를 결합하여 두어야 한다.

9.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완공점사필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10. 알루미늄알킬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의 이동탱크저장소에는 긴급시의 연락처 기타 응급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11. 위험물을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경우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기에 수납하고 품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되, 품명별마다 0.5미터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②에틸에테르,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의 저장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이동저장탱크에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탱크 안에 불연성가스를 봉입하여야 한다.

2. 옥외저장탱크 또는 옥내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이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에틸에테르,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의 온도는 에틸에테르 또는 산화프로필렌에 있어서는 섭씨 30도 이하로, 아세트알데히드에 있어서는 섭씨 15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옥외저장탱크 또는 옥내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의 온도는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4.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의 온도는 당해 위험물의 비점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5.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의 온도는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79조 (취급의 기준)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기준은 제76조 및 제77조에 규정한 것 외에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②위험물의 제조과정에서의 취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증류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내부 압력의 변동 등에 의하여 액체 또는 증기가 새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추출공정에 있어서는 추출관의 내부 압력이 이상하게 상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조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가열 또는 건조시켜야 한다.

4. 분쇄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부유하고 있거나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기계기구등에 부착되어 있는 상태로 그 기계 기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위험물을 옮겨담는 작업에 있어서의 취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을 용기에 담는 경우에는 내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2. 위험물을 옮겨담을 경우에는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④위험물을 소비하는 작업에 있어서의 취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분사도장작업은 방화상 유효한 적벽등으로 구획한 안전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2. 열처리작업은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염색 또는 세정작업은 가연성증기의 환기를 완전히 하고, 폐액을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바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나의 역화를 방지하고 석유류가 넘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위험물을 폐기하는 작업에 있어서의 취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각할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감시원의 감시하에 하되, 연소 또는 폭발에 의하여 타인에게 위해나 손해를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매몰할 경우에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3. 위험물은 해중 또는 수중에 유출시키거나 투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타인에게 위해나 손해를 줄 우려가 없을 때 또는 재해 방지를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 또는 이동탱크 저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취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유취급소의 위험물의 취급기준.

가. 자동차등에 주유할 때에는 고정주유설비를 사용하여 직접 주유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등에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등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한다.

다. 자동차등의 일부 또는 전부가 주유취급소의 공지밖에 나온채로 주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주유취급소의 전용탱크 또는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그 탱크에 접결하는 고정주유설비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자동차등을 그 탱크의 주입구에 접근

시켜서는 아니된다.

다. 유분리장치에 고인 기름은 넘지 아니하도록 수시 퍼내어야 한다.

바. 고정주유설비에는 그 주유설비에 접결하는 전용탱크 또는 간이탱크의 배관 이외의 것으로 위험물을 주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자동차등에 주유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자동차등을 그 주유취급소안에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아. 자동차등의 세차를 하는 경우에는 인화성 액체의 세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판매취급소의 위험물의 취급기준.

가. 위험물은 제80조에 규정하는 용기에 수납하고 용기에 넣은채로 판매하여야 한다.

나. 판매취급소에서는 염소산염류·유황·도로류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배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72조제8호에 규정된 실에서 배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의 취급기준.

가.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액체의 위험물을 주입할 경우에는 그 탱크의 주입구에 이동저장탱크의 급유호오스를 견고하게 결합하여야 한다.

나.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인화점이 섭씨40도미만의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한다.

다. 휘발유·벤젠 기타 정전기에 의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액체의 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의 주입관으로 주입할 경우에는 주입관의 선단을 이동저장탱크의 저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라. 휘발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동유나 경유를 주입할 때 또는 동유나 경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휘발유를 주입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전기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운반및이송의기준

제80조 (운반용기)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반용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운반용기의 재질은 강철판·알루미늄판·합성·유리·도기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것

으로 하여야 한다.

2. 운반용기의 구조 및 최대용적에 관하여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81조 (적재방법)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적재방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은 제80조의 운반용기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생석회 또는 덩어리로 된 유황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 또는 위험물을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제조소등의 상호간에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을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제조소등의 상호간에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와 이를 포장한 외부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험물의 품명·수량등을 표시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4. 위험물은 운반도중 그 위험물이 전락하거나,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가 추락 또는 전도하거나, 그 용기의 포장이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5. 운반용기는 수납구를 위로 향하게 적재하여야 한다.

6.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에 대하여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광의 직사, 우수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유효한 덮개를 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7. 위험물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 또는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과 함께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2조 (운반방법)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반방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위험물 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현저하게 마찰 또는 충격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2.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차량에 일정한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3.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 환적·휴식·고장등으로 차량을 일

시 정차시킬 때에는 안전한 장소를 택하고 또한 운반하는 위험물의 보안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규정하는 소화설비중 그 위험물에 적응한 것을 비치하여야 한다.
5. 위험물의 운반도중 위험물이 원저하게 새는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하고, 가까운 소방관서 기타의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3조 (이송의 기준)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에 넣을 때 또는 이동저장탱크에서 뺄 때에는 반드시 위험물취급주임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위험물을 이송하는 자는 이동탱크저장소를 휴식·고장등으로 일시 정지시킬 때에는 안전한 장소를 택하여야 한다.

③위험물을 이송하는 자는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이 원저하게 새는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하고 가까운 소방관서 기타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험물을 이송하는 자는 알루미늄 알킬류 기타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험물취급주임을 호송책임자로 지정하고, 내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송의 경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관할 소방관서에 송부하고 그 서면의 사본을 휴대하게 한 후,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이송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서면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절 위험물취급주임의면허

제84조 (위험물취급주임의 보안감독) ①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주임면허를 받은 자가 위험물취급에 관하여 보안감독을 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갑종위험물 취급주임은 별표 2에 계기한 위험물의 전부.
2. 을종위험물 취급주임은 별표 2에 계기한 위험물중 면허시험에 합격된 유의위험물.

②위험물취급주임은 위험물의 취급에 있어서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위험물의 취급기준에 따

라 보안감독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5조 (면허시험위원회)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취급주임의 면허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내부부에 갑종위험물취급주임면허시험위원회(이하 “갑종면허시험위원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각도에 을종위험물취급주임면허시험위원회(이하 “을종면허시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갑종면허시험위원회와 을종면허시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갑종면허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은 내부부차관이, 부위원장은 내부부치안국장이 되고, 을종면허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도지사(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에 있어서는 소방본부장이, 도에 있어서는 경찰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갑종면허시험위원회에 있어서는 내부부장관이, 을종면허시험위원회에 있어서는 관할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험물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2.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서 1년이상 물리 또는 화학에 관한 강의를 한 경험이 있는 자.

제86조 (위원에 대한 수당) 갑종면허시험위원회 또는 을종면허시험위원회의 위원중 내부부 또는 서울특별시·부산시·도에 소속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내부부장관 또는 관할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제87조 (면허시험의 응시자격) 누구든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위험물취급주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갑종위험물취급주임면허시험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만이 응시할 수 있다.

1. 초급대학이상의 학교에서 물리 또는 화학에 관한 과정을 수료한 자.
2. 공업고등학교의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1년이상 위험물취급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3. 을종위험물취급주임면허를 받은 후 2년이

상 위험물취급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4. 유통위험물취급주임면허를 받은 자로서 위험물의 제조소등을 감독하는 기관에서 2년 이상 위험물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제88조 (시험과목) ①갑종위험물취급주임면허시험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물리·화학.

가. 위험물의 취급에 관하여 보안상 필요한 물리·화학.

나. 연소 및 소화에 관한 이론.

2. 위험물의 성질과 그 화재예방 및 소화방법.

가. 위험물의 유별성질.

나. 위험물의 유별에 따르는 화재예방 및 소화방법.

3. 소방관계법령.

②을종위험물취급주임면허시험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기초 물리·화학.

가. 위험물의 취급에 관하여 보안상 필요한 기초 물리·화학.

나. 연소 및 소화에 관한 기초 이론.

2. 면허를 받고자 하는 유위험물의 성질과 그 화재예방 및 소화방법.

3. 소방관계법령.

③종포화약류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작업책임자 또는 화약류취급책임자의 면허를 받은 자가 별표 2의 제 1류 또는 제 5류의 위험물에 관한 유통위험물취급주임면허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제 2항제 1호의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제89조 (시험방법) ①위험물취급주임면허시험은 필기시험에 의한다.

②위험물취급주임면허시험의 합격절정에 있어서는 자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90조 (면허시험의 실시절차) ①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위험물취급주임면허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일 30일전까지 면허시험의 종별·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위험물취급주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 (면허증의 교부 및 재교부) ①위험물취

급주임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한다.

②제 1항의 면허증을 교부받은 자가 당해 면허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제92조 (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신고) ①위험물취급주임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관할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 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사항을 변경하고 그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3조 (면허의 취소·정지에 대한 통지)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주임의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한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4조 (면허증의 반납) ①위험물취급주임면허증을 받은 자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내무부장관 또는 관할도지사에게 그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면허가 취소된 때.

2.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분실한 면허증을 발견한 때.

②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호주·가족 또는 고용주가 그 뜻을 신고하고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95조 (적성검사)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취급주임면허자의 적성검사는 그 면허증을 받은 날(제91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를 제외한다)로부터 기산하여 매 3년이 되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받아야 하며, 그 적성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적성검사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적성검사의 결과 소정의 적성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위험물취급주임면허증을 서환 교부한다.

③적성검사의 기준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6조 (수수료) ①갑종위험물취급수입면허시험의 응시수수료와 그 면허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면허시험 800원
2. 면허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 500원

②제 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7 절 위험물시설안전원및자위소방조직등

제97조 (위험물 시설안전원을 두어야 할 제조소등)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시설안전원을 두어야 할 제조소등은 지정수량의 100배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중 다음 각호에 기재한 것을 제외한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로 한다.

1. 보일러·바나 기타 이에 준하는 장치로써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2. 차량에 고정된 탱크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위험물을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3. 철제도람 기타의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은 일반취급소.
4. 압유장치·윤활유순환장치 기타 이에 준하는 장치로써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5.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6. 종포·화약류단속법의 적용을 받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제98조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제조소등) 법 제24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에 관한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제조소등은 지정수량의 10배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지정수량의 150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200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지정수량의 100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옥외저장소중 다음에 기재한 것을 제외한 제조소등으로 한다.

1. 광산보안법에 의한 보안규정을 정하고 있는 제조소등.
2. 저장수량의 30배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그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은 곳.

제99조 (자위소방조직의 편성) ①법 제25조제 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위소방조직은 다음 표의 사업소구분에 따라 동표의 화학소방자동차 및 그 조작인원을 가지고 각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 또는 기타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소에 있어서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편성을 달리할 수 있다.

사 업 소 의 구 분	화 학 소 방 자동차의 수	조 작 인원수
지정시설에 있어서 취급하는 별 표 2의 제 4류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1 대	5 인
지정시설에 있어서 취급하는 별 표 2의 제 4류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12만배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	2 대	10인
지정시설에 있어서 취급하는 별 표 2의 제 4류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24만배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	3 대	15인
지정시설에 있어서 취급하는 별 표 2의 제 4류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4 대	20인

②제 1항의 화학소방자동차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제 1항의 화학소방자동차에는 소화활동에 필요한 소화약제와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 7 장 국고보조

제100조 (국고보조의 대상 및 기준액) ①법 제 73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기계기구
소방펌프자동차·수인동력펌프차·소형펌프차·소방정.

2. 설비
소방전용 전화장치·저수조.

②제 1항의 소방시설의 규격과 종류별 기준액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③국고보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 2항의 기준액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101조 (보조의 신청) 시장·군수는 시·군에서 구입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국고보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도지사에게 경유하여 내부부장관에게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도시사는 필요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제102조 (보조금 교부의 취소·정지등) ①내무부장관은 시·군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를 취소·정지하거나 그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소방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구입 또는 설치하지 아니한 때.
2. 보조금을 보조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거나 보조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부장관이 보조금의 교부를 취소·정지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령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시장·군수에게 의견진술이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3조 (감독) 내부부장관은 보조금을 받은 시·군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직원으로 하여금 그 보조한 소방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 8 장 잡 칙

제104조 (기준의 특례) ①별표 1의 (12)항(가)호에 제기한 소방대상물로서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 2장 제 2절 제 2관에 규정한 소화설비의 기준에 대한 특례를 내부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제 2장 제 2절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여라도 화재의 발생 및 연소의 우려가 현저하게 적거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도로 저지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 2장 제 2절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 2항의 규정

을 적용하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도시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5조 (제 1류 위험물등의 특례) 별표 2의 제 1류의 위험물, 제 2류의 위험물, 삭산에스텔류 및 니트로화합물중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62조(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 2호·제 4호 내지 제 7호·제 9호·제 20호·제 21호, 제63조제 1항제 2호·제 4호 내지 제 7호·제 12호, 제 74조제 3호 및 제 79조제 5항제 3호에 규정한 기준에 대한 특례를 내부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6조 (위임)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방염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11조 및 이 영 제 9조에 제기한 방염대상물품은 별표 1의 (1)항 (2)항 (4)항·(5)항 (가)호·(6)항 및 (12)항 (가)호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1975년 12월 31일까지, 동표준 기타의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1978년 6월 30일까지 이 영에 의한 방염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소방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로서 제 2장 제 2절에 규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 1항제 6호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스프링크라설비는 1978년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④(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제조소등의 공지의 너비 및 주유소간의 거리의 기준에 대하여는 제62조 내지 제64조·제69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⑤(위험물시설안전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시설안전원을 두어야 할 제조소등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동안전원을 두어야 한다.

⑥(자위소방조직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자위소방조직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편성하여야 한다.

특 수 장 소(특수소방대상물)

[별표 1]

항	호	소 방 대 상 물	비 고
(1)	가	공연장=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예술을 공중이 관람 또는 청문에 공하는 장소 및 시설을 갖춘 건축물	극장·영화관·연예장등
	나	관람장=스포츠·진귀볼을 공중이 관람할 수 있는 객석을 갖춘 시설 및 건축물 집회장=회의·사교등을 목적으로 공중이 집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건축물	다중경기장·체육관·경마장·서커스·가전물등 공민관·시민홀·노동회관·예식장·공회당
(2)	가	카바레=공중에게 댄스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건축물	나이트클럽·파·비어홀·싸롱 등
	나	유키장=공중이 오락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건축물 댄스홀=공중이 댄스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건축물	바둑집·장기집·마작집·당구장·탁구장·보우링장·댄스 교습소·실내골프장
(3)	가	유용음식점=유용에 종사하는 자 또는 점대부를 두고 음식영업을 행하는 건축물	요리점·요정등
	나	음식점=유용음식점에 해당하지 아니한 음식 영업을 하는 건축물	식당·다방·다과점·음악감상실·스텐드파·주점등
(4)	가	매화점=동일건물 내에서 물품의 매매교환을 행하는 점포로서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평 이상의 건축물 시 장=일정한 구획된 지역에서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여서 물품의 매매 교환을 행하는 장소	농업협동조합, 각종공제조합의 판매장, 마켓전시장등
	가	여 관=한국식 또는 서양식의 구조 및 설비로서 보통의 시설을 하여 숙박료를 받아 사람을 숙박케 하는 건축물 호 텔=한국식 또는 서양식의 구조 및 설비로서 고급의 시설을 하여 숙박료를 받아 사람을 숙박하게 하는 건축물 여인숙=숙박하는 장소를 주고 다수인이 공용하게 하는 구조 및 설비로서 숙박료를 받아 사람을 숙박하게 하는 건축물	

(5)	나	기숙사=관공서·학교·회사 등에서 종업원·학생 등을 집단적으로 거주시키기 위한 시설 하숙=숙박에 필요한 시설을하여 1월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숙박료를 받고 5인이상의 사람을 숙박시키는 건축물(가정 하숙 제외) 공동주택=다수인의 세대가 거주하는 시설로서 복도·계단등을 공용하는 건축물	아파트등
(6)	가	병원=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공중을 위한 의업 또는 치과의업을 행하는 장소중 환자 20명이상의 수용시설이 있는 건축물 의원=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공중을 위한 의업 또는 치과의업을 행하는 장소중 환자의 수용시설을 갖지 아니하거나 환자 19명이하의 수용시설을 갖춘 건축물 조산소=조산원이 공중을 위한 조산업무 병원 또는 의원에서 행하는 것은 제외)를 행하는 장소로서 임부·산부의 수용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거나 9명이하의 수용시설을 갖춘 건축물	진료소·요양소등 조산 시설등
	나	양호시설=노쇠자로서 신체상·정신상 기타 경제적 이유로 양호·보호를 요하는 자를 수용·보호하는 건축물	양로원·경로당·구호시설·갱생시설등
	다	아동복지시설=양육하기 곤란한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시설 및 건축물 유치원=육아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 및 건축물 병·농학교=병자·농자에 대하여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기 위한 시설 및 건축물	육아보육시설·양호시설·정신박약아 보호시설·맹농아보호시설·신체허약아보호시설·지체부자유아 보호시설등 모자보호시설·탁아시설·아동휴양시설·교호시설 소년직업보호시설등
(7)		학교=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등에 차별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는 시설과 건축물	학관·학원등

(8)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보존하여 공중의 이용에 공하는 것과 역사·예술·산업·자연·과학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관·전시하여 공중의 관람에 공하는 시설 및 건축물	
(9)		공중목욕장=온수·냉수·해수·온천수 기타를 사용하여 공중으로 하석급 목욕 또는 수영을 하게 하는 시설 및 건축물	광천욕탕·한증탕·터키탕·사우나탕·실내물장등
(10)		정차장·선지=철도·차량·자동차·선박·항공기 등이 정차하는 시설 및 건축물 박합실=기차·자동차·항공기·선박의 여객의 대합에 공하여지는 시설 및 건축물	터미널·선박·항공기의 발착장등
(11)		사찰·교회=종교상의 예배를 하기 위하여 다수인이 집합하는 시설 및 건축물	교단사무소·예배소·교무소·종무소 등
(12)	가	공장=기계 또는 도구를 사용하여 물건을 제조·제조·가공·수리·포장등을 하기 위하여 다수인이 근무하는 시설 또는 건축물	
	나	영화 및 텔레비촬영소=영화 또는 텔레비를 촬영하는 시설 및 건축물	방송시설등
(13)	가	차고·주차장=주차하기 위한 시설 및 건축물	
	나	비행기격납고=비행기를 격납하는 창고	헬기격납고등
(14)		창고=물품의 멸실·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을 격납하는 시설 및 건축물	
(15)		사업장=국가 또는 단체나 개인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활동을 하는 일정한 시설 및 건축물 (위의 각항에 열거된 것은 제외한다)	관공서·회사·은행·이발소·점포·화장장·오물처리장등
(16)		복합건물등=1개의 건축물에 위의 각항에 계기한 2 이상의 용도에 공하여지는 건축물	
(17)		중요문화재=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문화재 및 미술품	

(18)	아케이트=물품의 판매·교환을 행하는 점으로서 연장 50미터 이상 연속하여 설치된 시설 및 건축물	
(19)	산립=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산립	
(20)	주차=내부부령으로 정하는 주차	

[별표 2]

위험물

유 별	품 명	지정수량
제 1 류	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과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과산화물	50킬로그램
	질산염류	1,000킬로그램
	과망간산염류	1,000킬로그램
제 2 류	황 인	20킬로그램
	황화인	50킬로그램
	적 인	50킬로그램
	유 황	100킬로그램
	금속분 A	500킬로그램
	금속분 B	1,000킬로그램
제 3 류	금속칼륨	5킬로그램
	금속나트륨	5킬로그램
	탄화칼륨(카바이드)	300킬로그램
	인화석회	300킬로그램
	생석회	500킬로그램
제 4 류	폭수인화물	50리터
	제 1 석유류	100리터
	조산에스테르류	200리터
	의산에스테르류	200리터
	메틸에틸케톤	200리터
	알코올류	200리터
	피리딘	200리터
	클로로벤젠	300리터
	제 2 석유류	500리터

	제 3 석유류	2,000리터
	제 4 석유류	3,000리터
	등식물유류	3,000리터
제 5 류	질산에스테르류	10킬로그램
	셀룰로이드류	150킬로그램
	니트로화합물	200킬로그램
제 6 류	발연질산	80킬로그램
	발연황산	80킬로그램
	크로로설폰산	80킬로그램
	무수황산	80킬로그램
	농황산	200킬로그램
	농질산	200킬로그램
	무수크로움산	200킬로그램

비 고

1. “금속분 A”라 함은 마그네슘 및 알루미늄의 분·박 및 리봉(사진촬영용 기타에 사용되는 섬광분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금속분 B”라 함은 마그네슘 및 알루미늄 이외의 금속분을 말한다.
2. “폭수인화물”이라 함은 에테르·2 황화탄소 및 글로디온 기타 760밀리미터의 기압에 있어서 액체(섭씨 20도에서 액상으로 되는 것 또는 섭씨 20도이상 40도이하의 사이에서 액상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되는 것으로서 착화온도가 섭씨 100도이하의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이하 20도이하로서 비점이 섭씨 40도이하의 것을 말한다.
3. “제 1 석유류”·“제 2 석유류”·“제 3 석유류”·“제 4 석유류”라 함은 각각 다음에 계기하는 물품 및 정상(760밀리미터의 기압에 있어서의 정상)을 말한다)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가. “제 1 석유류”라 함은 아세톤 및 휘발유 기타 액체로서 인화점이 섭씨 21도미만의 것을 말한다.

나. “제 2 석유류”라 함은 등유 및 경유 기타의 액체로서 인화점이 섭씨 21도이상 70도미만의 것을 말한다.

다. “제 3 석유류”라 함은 중유 및 클레오소오드유 기타 섭씨 20도에서 액상이 되는 것으로서 인화점이 섭씨 70도이상 200도미만의 것을 말한다.

라. “제 4 석유류”라 함은 기계유 및 시린더유 기타 섭씨 20도에서 액상이 되는 것으로서 인화점이 섭씨 200도이상의 것을 말한다.

4. “알코올류”에는 퓨젤유 및 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

5. “동식물유류”라 함은 760밀리미터의 기압에서 액체로 되는 동식물유로서 불연성용기에 수납 밀전되고 또한 저장·보관되어 있는 것이외의 것을 말한다.

6. “셀룰로이드류”라 함은 니트로셀룰로우스를 주재로 한 제품·반제품 및 부스러기를 말한다.

7. “니트로화합물”이라 함은 2초기 이상인 것을 말한다.

8. “농화산”이라 함은 비중 1.82이상인 것을 말하며, “농질산”이라 함은 비중 1.49이상인 것을 말한다.

9. 도료류 기타 품명이 다른 물질을 혼합한 것에 속하는 위험물의 품명과 그 지정수량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3]

준 위 험 물

유 별	품 명	수 량
제 1 류	아염소산염류	10킬로그램
	위소산염류	15 "
	옥소산염류	20 "
	중크로뮴산염류	600 "
제 2 류	유지류 및 유조류	100 "
	부잠사	100 "
	기름찌꺼기	1,000 "

제 3 류	금속파티움	5킬로그램
	금속칼슘	50 "
	탄화알루미늄	60 "
	수소화물	60 "
	칼슘시리콘	200 "
제 4 류	락카바메	200 "
	고무줄	200 "
	제 1 종인화물	200 "
	나루탈린	600 "
	송 지	600 "
	파라핀	600 "
	제 2 종인화물	600 "
제 5 류	장 의	600 "
	니트로소화합물	40 "
	디니트로소펜타메틸렌테트라민	40 "
제 6 류	나트륨아미드	40 "
	과염소산	30 "
	염화디오닐	80 "
	염화스르추릴	80 "

비 고

1. “유지류” 및 “유조류”라 함은 동식물유류가 스며 배인 종이 또는 포장 이들의 제품을 말한다.
2. “부잠사”라 함은 번데기기름이 스며 배인 것을 말한다.
3. “수소화물”이라 함은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류금속(베리륨 및 마그네슘을 제외한다)의 수소화물을 말한다.
4. “고무줄”이라 함은 생고무에 휘발유 기타 인화성용제를 가공하여 풀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5. “제 1 종인화물”이라 함은 상온에서 고체이고 또한 섭씨30도 미만에서 가연성의 증기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6. “제 2 종인화물”이라 함은 상온에서 고체이고 또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섭씨40도이상 100도미만에서 가연성의 증기를 발생하는 것.

나. 섭씨100도이상 200도미만에서 가연성의 증기를 발생하고 또한 연소열량이 매 그램당 8,000칼로리이상인 것.

다. 섭씨200도이상에서 가연성의 증기를 발생하고 또한 연소열량이 매 그램당 8,000칼로리이상인 것으로서 용점이 섭씨 100도 미만인 것.

7. “니트로소화합물”이라 함은 1의 벤젠핵에 2이상의 니트로소기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별표 4.]

북수가연물

종 명	수 량
면화류	200킬로그램
목모 및 대패밥	400킬로그램
병마 및 종이조각	1,000킬로그램
사 류	1,000킬로그램

벗질류	1,000킬로그램
고무류	3,000킬로그램
석탄 및 목탄	10,000킬로그램
목재가공품 및 롬밥	10킬방미터

비 고

1. “면화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면상섬유 및 마사원료를 말한다.
2. “사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실과 누에고치를 말한다.
3. “벗질류”라 함은 마른 벗질, 마른 목재기 또는 이들의 제품과 마른 풀을 말한다.
4. “고무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무제품·고무반제품·원료고무 및 고무조각을 말한다.

알 림

이번 12月号 会誌는 12月29日부로
公布된 消防法施行令 全文 106條를
총 46페이지로 全載하므로 부득이
紙面관계로 이미 수집된 原稿를
전부 게재 못 하고 다음 1月号에
게재하게 되었고 아울러 發刊이 지
연되었음을 會員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립니다(編輯者)

[별표 5.]

소 화 기 구 별 적 응 대 상 물

소 화 기 구 대 상 물	소 화 기 물을용상으로 방사하는	소 화 기 물을무상으로 방사하는	소 화 기 강화액을용상으로 방사	하는 소 화 기 강화액을무상으로 방사	포말을 방사하는 소 화 기	불연성가스를 방사하는 소 화 기	증발성액체를 방사하는 소 화 기	소 화 기 방사하는 소 화 분말을		자 동 확 산 액	불연성이 또는 수소	전 조 사	평창질석또는평창진주암
								인산염류등을 사용하는것	기타의 것				
건축물 기타 공작물	○	○	○	○	○			○		○			○
전 기 설 비		○		○		○	○	○	○				
대 상 물 의 구 분	제 1 류	아루카리금속의 산화물										○	
		위의 난이의 것	○	○	○	○		○		○	○	○	
		제 2 류	○	○	○	○		○		○	○	○	
	제 3 류	금속나트륨 금속칼리										○	○
		위의 난이 의 것										○	
	제 4 류	알루미늄 알칼리							○			○	○
		위의 난이 의 것			○	○	○	○	○	○		○	
	제 5 류		○	○	○	○				○	○	○	
	제 6 류		○		○	○	○	○	○	○		○	
	준 위 형 물	제 1 류	○	○	○	○		○		○	○	○	
		제 2 류	○	○	○	○		○		○	○	○	
		제 3 류										○	
		제 4 류			○	○	○	○	○	○		○	
		제 5 류	○	○	○	○				○	○	○	
		제 6 류		○		○	○	○	○	○		○	
특 수 가 연 물	○	○	○	○	○			○		○	○	○	

- 비고 1. ○표한 소화기구와 대상물은 서로 적용함을 말함.
 2. "인산염류등"이라 함은 인산염류·유산염류 기타 방염성 있는 약제를 말함.
 3. "알루미늄알칼리"라 함은 알루미늄알칼리 기타 공기에 접촉하여 발화하는 유기금속화합물을 말함.

[별표 6]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적응소화설비

소화설비의 구분		대 상 물 의 구 분	전축물 기타 공작물	전기설비	제1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아루카리금속·파산화물	물 이외의 것 아루카리금속·파산화	금속나트륨 및 금속칼	물 이외의 것 금속나트륨 및 금속칼	알루미늄알칼류	알루미늄알칼류 이외의 것			
제 1 종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	○			○	○				○
제 2 종	스프링크러설비	○			○	○				○
제 3 종	수증기소화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	○	○		○	○			○	○
	포말소화설비	○			○	○			○	○
	불연성가스소화설비		○					○		○
	증발성액체소화설비		○					○		○
	분말소화설비	인산염류등을 사용하는 것	○	○	○	○		○		○
		기타의 것		○				○	○	○
제 4 종	물을 봉상으로 방사하는 대형소화기	○			○	○			○	
	물을 무상으로 방사하는 대형소화기	○	○		○	○			○	○
	강화액을 봉상으로 방사하는 대형소화기	○			○	○			○	
	강화액을 무상으로 방사하는 대형소화기	○	○		○	○			○	○
	포말을 방사하는 대형소화기	○			○	○			○	○
	불연성가스를 방사하는 대형소화기		○					○		○
	증발성액체를 방사하는 대형소화기		○					○		○
	소화분말방사하는 대형소화기	인산염류등을 사용하는 것	○	○	○	○		○		○
		기타의 것		○				○	○	○

제 5 종	물을 분상으로 방사하는 소형 소화기	○			○	○					○	
	물을 무상으로 방사하는 소형 소화기	○	○	○	○	○					○	○
	강화액을 분상으로 방사하는 소형 소화기	○			○	○					○	
	강화액을 무상으로 방사하는 소형 소화기	○	○		○	○					○	○
	포말을 방사하는 소형 소화기	○			○	○					○	○
	발산가스를 방사하는 소형 소화기		○								○	○
	불연성가스를 방사하는 소형 소화기		○								○	○
	발화분말을 방사하는 소형 소화기	○	○		○	○					○	○
	인산염류등을 사용하는 것										○	○
	기타의 것		○							○	○	○
	물양동이 드는 구조	○			○	○					○	
	전조사			○	○	○	○	○	○	○	○	○
	평창지석 또는 평창잔주암						○		○			
	화산액	○			○	○					○	○

(비 고)

1. ○표한 소화기와 대상물은 서로 적응함을 말함.
2. “인산염류등”이라 함은 인산염류·유산염류 기타 방염성이 있는 약제를 말함.
3. “알루미늄알킬류”라 함은 알루미늄알킬 기타 공기에 접촉하여 발화하는 유기금속화합물을 말함.

建築士

發行人兼 編輯人 : 韓 昌 鎮

登錄番號 : 第 24-1251 号

登錄日字 : 1967 年 3 月 23 日

通卷 第 61 号 1973 年 12 月 31 日 発行

發行所 : 大 韓 建 築 士 協 會

서울 特別市 中區 太平路 1 街 60-17

☎ 73 9491, 9492

印刷所 : 高 星 文 化 印 刷 株 式 會 社

〈非 賣 品〉

祝 創業 誠実 施工의 内外装材

달을 征服하는 人間의 意志

韓國關東産業은 建築의 歷史가 資材의 開發과 더불어 發展한다는 信念으로 創造와 開拓을 信條로 하고 있습니다.

韓國關東産業은 材料分析室과 試驗研究室 作業能率開發室을 두고있습니다.

MOON TILE (月面타일)은 달 表面의 紋樣과 自然色相으로서 實用面에서도 輕量, 強度, 接着, 防水을 이룩했습니다.

15年間 保證施工해드리는 MOON TILE은 公害를 克服한 衛生製品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여러분의 居室, 廚房, 浴室等의 内装과 모든 建築物의 外装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꾸준히 JIS (日本工業規格)의 檢證을 받고있으며 MOON STONE 人造大理石의 開發에도 注力하고 있습니다.

忍耐와 信義로서 奉仕하는 저희 韓國關東産業을 찾아주십시오. 感謝합니다.

代表理事 金 炳 讚
代表取締役 山下 專 吉

韓國關東産業株式會社

서울特別市鍾路區 貴鉄洞 252 大信豐빌딩 601号

TEL: 74-2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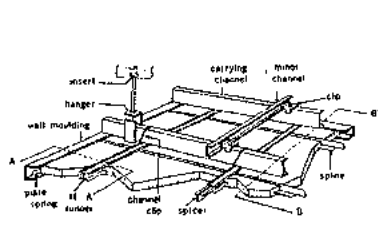
釜山直轄市釜山鎮區釜田2洞 255의36号 동해빌딩 3층 TEL: 3-4989

待望裡에 드디어 建築界에 登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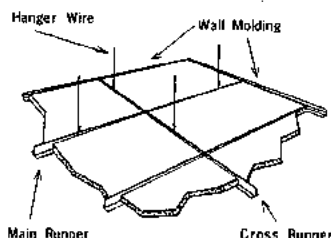
H-BAR式
T-BAR式
M-BAR式

輕量鉄骨天井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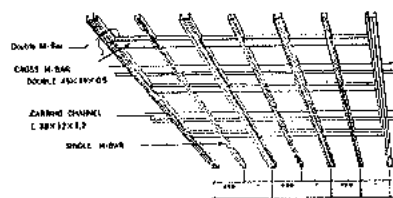
資材를 選択할 권한은 여러분들께 주어졌습니다.
建築物을 火災로부터 解放시켜 주십시오!



H-BAR式



T-BAR式



M-BAR式

用 途 빌딩 · 學校 · 病院 · 劇場
體育館 · 호텔 · 住宅 · 庁舎
講堂 · 其他

特 徴

- ① 不燃材料이므로 火災의 위험이 없다.
- ② 溫度 · 濕度의 변화에도 變形이 없다.
- ③ 重量은 木材틀에 비하여 약 2/3 에 불과하다.
- ④ 組立式이므로 工期가 短縮된다.
- ⑤ 完全亞鉛鍍金이므로 腐蝕의 우려가 없다.
- ⑥ 堅固精密하며 壽命이 永久의이다.
- ⑦ 天井内外에 부수되는 모든 關聯工事의 施工에 便利하다.

主要施工処

- 3 1 로 빌딩
- 정 부 종 합 청
- 대 한 전 자 공
- 국 립 중 합 관
- 중 앙 제 목
- 도 양 큐 호
- 남 산 입 맨
- 조 선 동 보
- 구 대 산 명
- 아 카 데 미 회
- O B 맥 공
- 루 역 주 장
- 국 회 의 사 당

- 남 경 산 회
- 신 복 문 조
- 외 대 문 조
- 인 화 회 공
- 아 체 방 회
- 파 육 송 공
- 트관국관사
- 서울대학신속공사



(본사가 시공한 무역협회 회관)

日本昭和造機KK와 韓寶建設株式會社
技術提携

本社施工場: 서울特別市 麻浦区 望遠洞五七番地

中央私書函5182号

☎ · 32-8288 · 34-1442

三和 蛭石의

輕量 断熱材!

蛭石의 特性

1. 断熱 (Insulation)
2. 輕量 (Light-Weight)
3. 耐火 (Fire-Proof)
4. 吸音 (Sound-Proof)
5. 結露防止
6. 防射線遮断 (Radio Active-Proof)

生産品目

1. 질석골재
2. 질석경량부록 (Block)
3. 질석단열보드 (Board)
4. 질석보온파이프카바
5. 질석 전착 도장 시공

※ 蛭石 原鉱石의 国内唯一의 輸出業体

日本, 台灣 등지 대량 수출

■ 최근 납품 및 시공처 ■

- 忠南방직 天井 충전
- 태평방직 "
- 일신방직 벽체 충전
- 한국포리에스텔 옥상 단열 콘크리트
- 동양섬유 벽체 충전
- 대도화섬 "
- AID 반포아파트 질석보드
- IDA 차관 각 학교 옥상 단열 콘크리트
- 세미코아 전자 (K-1, K-2) 옥상 단열 콘크리트
- 마산전자 옥상 단열 콘크리트
- 한국낙농 옥상 단열 콘크리트
- 부산조병창 (철마현장) 옥상 단열 콘크리트

- 아주대학 옥상 단열 콘크리트 (및 에레코트)
- 수원비행장 경량재
- 과학기술학교 옥상 단열 부록
- 직업훈련원 옥상 단열 공사
- 신즈보링장 (경북) 방음경량재
- 라이프보링장 (충남) 방음경량재
- 라이온스호텔 경량부록
- 프라자호텔 경량부록
- 백남호텔 경량부록
- 학생아카데미 경량부록 및 단열공사
- 포항종합제철 경량단열공사

三和蛭石株式会社

本社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37번지 서광빌딩 1303호

Tel. 23-4612, 22-6559

工場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남동 172번지

代表理事 尹錫濟

—新 刊 案 內—

建築法解説

都市計画法
建築士法

解説 吳 関聯法令

—著 者—

建設部建築担当官

建設部事務官

建設部建築技佐

〃

金 報 根

洪 思 弼

張 泰 洙

金 永 哲

洋裝製本

建築法解説

建築士法 解説吳関聯法令
都市計画法

金 報 根 張 泰 洙
洪 思 弼 金 永 哲

亞細亞文化社

發行處 亞細亞文化社

登録番號 外 第 2-60號

서울特別市 中區獎忠洞一街 48-24

對營口座 서울 1460

電話 52-5266

印刷處 二友印刷社

서울特別市 中區忠武路五街 19-8

電話 27-5081

問議處：大韓建築士協會
吳 各 市道支部

電話・73-9491~2

價格：2,900원